

**FTA** Vol.10  
December 2014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Vol.10  
December 2014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 Contents

## FTA FOCUS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 .....	04
----------------------------------	----

## FTA 최근 동향

FTA 최근 동향 .....	06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동향	
• 해외동향	

## FTA ANALYSIS

① FTA 협정분석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 주요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	18
• 한-페루 FTA 개관	
• 한-페루 FTA 산업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한-페루 FTA 향후 활용방안	

② FTA 산업분석	
레저용품의 FTA 활용 동향 .....	69
• 분석배경	
• 레저용품의 FTA 수입활용 동향	

## FTA EXPERTS

① 전문가 기고	
한-EU FTA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	102

② 전문가 기고	
FTA 체결로 넓어진 경제 영토, 활용을 잘해야 '내 땅' .....	119

③ 전문가 기고	
2014년 11월 한-중 FTA 타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122



# FTA Trade Report

## FTA와 품목분류

## FTA 활용 성공사례

##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 FTA 100% 활용하기

##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 132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 143

-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
-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출제경향 분석 ..... 155

- 개요
- 출제경향 분석

한-미 FTA 수출 활용시, 통관 유의 사항은? ..... 171

원산지 판정·관리 종합 솔루션 FTA PASS의 주요 기능으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합시다 .....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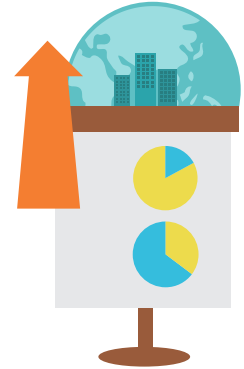
- 원산지일괄판정 기준 다양화
- 수입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원산지 지위변동을 '모니터링' 하려면?

지도로 보는 2014 특혜 수출입실적(1월~10월) ..... 181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

김낙희 관세청장

지난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성사시킨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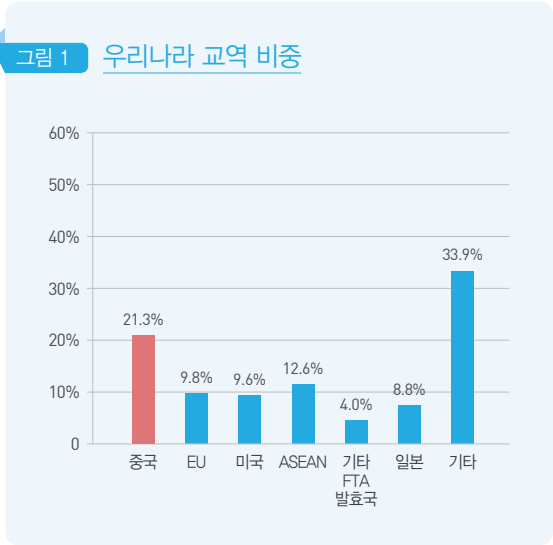
자유화율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은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량 증가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 직접구매 급증,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일자리 창출 등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경제 활력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와 對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노력,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우위 제품의 시장선점 노력 등 기업과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수출기업에 특화된 FTA 활용 서비스제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 FTA 특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우수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절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對중국 교역량은 對중국 수입비중 16.1%, 수출비중 26.1%, 전체 교역비중은 21.3%로서, 미국과 EU를 합친 교역비중 19.4% 보다 많아, 한-중 FTA의 낮은 상품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8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sup>1)</sup>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극대화하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명세서<sup>2)</sup> 작성 실례를 담은 「산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농림축산물/화학/섬유·의류/자동차·기계 산업별)」를 발간·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원산지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1월부터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sup>3)</sup> 내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를 개발해, 농어민들도 손쉽게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FTA 활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중 FTA 전용상담 창구 운영, 임가공무역·농수산물 가공 무역 등 중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유턴기업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 등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FTA 활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는 냉엄한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청은 내년도 기업 지원정책의 화두를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으로 삼아 중소기업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약 3만여 개(약 32만 농가) 인증서

2) FTA원산지 판정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내역, 투입수량, HS코드, 원산지정보, 각 원재료별 가격 등을 기재한 원재료 상세내역

3) FTA-PASS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무료로 개발·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①각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동판정 ②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발급 ③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전자통관홈페이지에 자동 전송 ④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보관 등에 활용

# FTA 최근 동향



## 01 관세청 주요 이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FTA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28일 서울본부 세관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농어민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빙을 간소화 하기 위해 농산물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발행 인증 증빙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과 품목 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 자료로서의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희 관세청장은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중 FTA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농산물의 경우 FTA 활용에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내 농산물 FTA 활용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물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농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와 「FTA 원산지협력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은 삼성전자와 11월 20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FTA집행기관인 관세청과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수출 과정까지 원산지정보 유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업으로 부터 공급받는 부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FTA 전문지식 부족으로 원산지정보 유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도입,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관리자 및 현장방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FTA 아카데미(Academy)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보급 및 사용 교육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관세청은 FTA 혜택을 수출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워크숍 개최

관세청은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청장·차장을 포함한 47개 세관장 등 관세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한 ‘중기 미래전략 및 1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행정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한-중 FTA’ 등 환경변화 요인들과 ‘해외직구’,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국민관심이 높은 사안들을 종합검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대비 및 대응(對中) 교역을 확대를 위해 통관체제

개편과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교역량 확대에 따라 인천권역(인천, 인천공항, 김포, 평택) 세관 통관 물품 급증에 대한 대비책과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다루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과 유해물품 및 분산반입을 통한 탈세 등 불법물품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낙희 관세청장은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2~3년에 걸쳐 추진될 과제들은 중기 미래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증대 추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1월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

### 주요개정사항

-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 의무 폐지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 \*  
선적 후 3일 →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 공고로 운영

먼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 하였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선적 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선적일)에 3일까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호주 FTA 발효 대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12월 12일 부터 발효하는 한-호주 FTA를 대비하여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FTA 활용 기업에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개최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한-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 신고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집중 설명 되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YES FTA 포털을 통해 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지원하며, 품목별 양허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큰폭으로 증가

관세청이 FTA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관세청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하나로써, 구직자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연결까지 지원하는 사업

관세청은 2014년 10월말 2,399명의 FTA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수출입기업들 일자리연결(Job Matching)을 통해 28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195명보다 147% 성장한 수치로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 227명보다 60명 초과 달성하였다.

취업자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교생이 169명인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대학생 83명(29%), 경력단절 여성 35명(12%) 순이다.

취업 직종별로는 제조업이 11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인 등 통관·서비스업이 86명(30%), 무역·도소매업이 58명(20%) 등이다.

##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발간

관세청은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 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 선택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미 김**(HS 2106.90, 원재료 : 마른 김, 정제염, 동식물성 유지 등)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마른김(HS 1212.21)은 반드시 완전 생산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나 그 외 원재료는 역외산 사용 가능(단,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이상)

관세청은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제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 발간



관세청은 지난 10월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배포하였다. 지난 4월에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1을 발간한데 이어 수출기업이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활용 수출 시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책자는 '13년~'14년 4월까지 수집된 FTA 민원 데이터(22,332건) 중 원산지증명 관련 민원이 8,469건 (3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빈도가 높은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를 이행 지침 20개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 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기업들의 FTA활용 실무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사례1]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A)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 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업무만 대리가 가능(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7조)

[사례2]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한-EU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A) 한-EU FTA에서는 EU 역내국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관세청은 이번 책자도 시리즈 1과 같이,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법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여 수출입기업들이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 원산지증명서 편'은 관세청 YES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e-book Zone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 「베트남 관세법 2014」 발간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청이 2014년 6월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11월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베트남 관세법 2014'를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세계은행 평가, 대한민국 관세행정 6년 연속 1위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 세계 189개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기업 환경평가에서 대(大) 인구 국가 가운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말레이시아, 4위 네덜란드, 5위 영국 순이다.



### ■ 통관행정부문 평가결과 상위 10개국(大 인구국 기준)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위	대한민국	6위	미국
2위	프랑스	7위	독일
3위	말레이시아	8위	일본
4위	네덜란드	9위	캐나다
5위	영국	10위	스페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경 전 세계 국가(올해 189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Doing Business'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나 소국(小國)을 제외한 인구 1,300만 명 이상 71개 대(大) 인구 국가 중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구규모와 무관한 전체 189개국 순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물류업체, 관세사, 수출입기업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팀의 문서확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02 우리나라 동향

###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11월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에 앞서 '14년 11월 4일~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12월 중 잔여 문안 정리 등 기술적 협의와 법률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 한-호주 FTA 발효, 한-캐나다 FTA 2015년 1월 1일 발효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실질 타결되고 지난 12월 12일 우리나라의 10번째 FTA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호주 FTA 발효일에 호주 시장의 관세가 큰 폭으로 철폐(및 인하)되고 20일 뒤인 2015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3월 타결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발효된다.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는 10년 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400억불 수준의

교역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한-호주 / 한-캐나다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 호주/캐나다 투자 동향

- (호주)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 수입
- (캐나다) 석유매장량 3위 /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지난 11월 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2월 제5차 공식협상을 재개하여, 지난 10월 제9차 공식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 달성 후,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해 FTA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모두 완료 하게 되었다.

###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한-베트남 FTA가 2년 4개월의 협상 끝에 12월 10일 실질 타결됐다.

12월 11일~12일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응웬 쩌 응 베트남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양국의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분야에 걸쳐 향후 15년간 각각 94.7%와 92.2%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이번 FTA에 따라 향후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개방률 86.2%) 대비 6%포인트, 200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게 된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분야를 개방한다. 베트남은 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개방률 91.7%) 대비 3%포인트, 품목수로는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한다. 새우 수입량에 대해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가 부여되며, 신선 마늘·생강과 쌀 등은 개방하지 않기로 하였다.

###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 개최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이 11월 24일 ~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단은 한국 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은 쑤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 측은 타쵸 사토 외무성 경제부 국장을 대표로 하였다.

한·중·일 FTA는 '12. 11월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경쟁, 지적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실질 타결된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협상 개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6차 협상이 '14년 12월 1일~5일 5일간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 (Greater Noida)에서 열렸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참여

우리 측 협상 참석자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적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등)의 주요 요소가 논의됐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더불어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 내기위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타결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4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한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 제2회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사례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47개사를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학계, 관세법인, 업종별 단체 등 관련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FTA 활용협력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신영, 경신, 석영, 자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기업 및 협회가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공급망의 전략적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해 FTA 분야의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직접 찾아가는 자유 무역협정(FTA) 컨설팅을 통해 '미합금 관세 찾아주기', '자유무역협정(FTA) 인력양성을 위한 상생아카데미

교육' 등 실질적으로 협력기업에 애로를 지원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주)신영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으로 협력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원산지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석영, 자흥 등 중소기업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최고 경영자(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 제6회 'FTA전문가 포럼' 개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12월 19일(금)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후원으로 제6회 FTA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FTA 정착시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낙희 관세청장을 비롯해 한희선 한국관세사회장 등 관련 분야 기관장들과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FTA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국가 및 기업의 대응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통의 과제”라며 “그간의 FTA 활용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낙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의 추진방향이냐 활용방안, 원산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FTA가 우리나라 교역증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의 사회로 강원대학교 김태인 교수, 관세청 김윤식 과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 등 3명이 FTA 활용과 성과 및 원산지검증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태인 교수는 ‘FTA 활용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그간의 FTA 활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관세청 김윤식 과장은 ‘원산지검증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FTA시대 관세행정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은 ‘원산지증명 위험 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확인서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03 해외동향

## 일본-호주 EPA 승인, 호주시장에서 일본 경쟁력 강화 전망

2014년 7월 타결된 일본-호주 EPA 합의안이 11월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승인되었다.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은 일본의 4대 교역국으로 그간 일본이 체결한 EPA 파트너 중 최대 교역국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EPA의 주요 성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일본 투자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에너지, 광물자원,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일본-호주 EP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EPA로 농산물시장이 대폭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 개방으로 인해 일본 소비자는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호주 EPA 관세 철폐 및 인하율(즉시 철폐 및 10년 내 단계적 철폐)은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93.7%(품목 기준 88.4%), 호주 수입액 기준 99.8%(품목 기준 99.8%)이다.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일본기업의 호주시장 접근 개선, 호주기업의 일본시장 접근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일-호 FTA에 따른 호주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	일본 완성차 수출액의 약 75%가 즉시 관세 철폐 - 주력 수출품인 1,500~3,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 즉시 관세 철폐 - 1,000~1,5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 2,500cc 초과 디젤차량(오프로드 차), 3.5톤 이상 트럭 및 상용차도 즉시 철폐 - 그 외 차량은 3년 후 철폐

구분	내용
자동차 부품	즉시 또는 3년 이내 관세 철폐 - 엔진부품 및 구동축의 일부, 타이어 등은 즉시 철폐, 머플러 등은 3년후 철폐
철강	즉시 또는 3년 후 관세철폐 - 열연강판은 대부분 즉시 철폐,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은 5년후 철폐
일반 및 전기기계	즉시 철폐. 단 자동차용 전기 부품은 제외
농림수산물	전 품목 즉시 철폐

자료원 : 일본 외무성

### ■ 일-호 FTA에 따른 일본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거의 모든 품목을 즉시 혹은 10년간 관세 철폐
농림수산물	쌀, 식용 보리, 설탕, 탈지분아 및 버터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혹은 향후 검토 - 냉동 쇠고기 : 단계적으로 18년간 19.5%까지 삭감 - 냉장 쇠고기 : 단계적으로 15년간 23.5%까지 삭감 *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 - 치즈 : 관세할당 등 - 보리 : 사료용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 와인 : 7년간 관세철폐

자료원 : 일본 외무성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외무성, WTA,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 홍콩-아세안 서비스무역 및 투자분야 FTA 협정 추진 현황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의 4위 서비스 무역 교역 파트너로서, 양자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141억 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아세안 서비스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주요 서비스 교역은 교통, 여행 등이다.

FTA 협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무역에서 2012년 기준 수출입, 소·도매 무역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무역분야는 GDP 25.4%를 차지했으며 공공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16.8%), 금융·보험 서비스 분야(15.9%), 부동산 및 전문·사업 서비스분야(11.5%), 교통·저장·우편 및 택배 서비스분야(6.0%), 정보통신 서비스분야(3.5%)로 나타났다.

투자부문에서는 양 지역 간 FTA 투자협정의 목적은 홍콩과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를 촉진·완화·보호·실현하는 것이다. 양 지역은 홍콩-아세안은 상호 중요한 투자파트너이며 빠른 경제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아세안-홍콩 양 측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WTO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감소, 개선 무역구제조치,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상호 관심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증진 강화 등 작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 하고 FTA를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 호주-중국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

11월 17일 10년을 넘게 끌어온 호주-중국 FTA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올해 타결된 한국-호주 FTA와 호주-일본 FTA와 함께 호주에서 아시아 3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 언론과 산업계는 중국과의 FTA 타결을 환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에 유독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호주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하나 수출에서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주는 서비스 수출 확대가 중요한 가운데 최근중국의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FTA는 호주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인력 이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거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구의 명확화를 요구했고 각종 산업별 노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구성은 농업·자원·제조업 수출·서비스·투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무역 관련분야의 시장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낙농제품과 육류, 와인, 원예 등에 대하여 완전 또는 단계적 철폐를 수용하였으며, 모(毛)에 대해서는 호주에만 쿼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제조업 부문에서 완전 또는 단계적 철폐 형식으로 개방하였으나, 호주는 기존 관세가 낮은 국가 이므로 호주-중국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규모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 ■ 호주-중국 FTA 상품무역관련 양허 내용

중국 개방	<p><b>농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낙농업은 2016~2025년간 6억3000만 달러의 관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제품 : 발효 후 4년부터 11년 내 현재 최대 11%인 수입관세 폐지</li> <li>- 육류 : 9년간 12~25%인 수입관세 폐지</li> <li>- 와인 : 4년간 14~20%인 수입 관세 폐지</li> <li>- 원예(horticulture) : 4년간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수입관세 폐지</li> <li>- 모 : 호주에만 쿼터 폐지</li> <li>- 쌀·밀·면·설탕: 3년 내 시장개방 여부 검토</li> </ul> </li> </ul> <p><b>자원 및 제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호주로부터의 자원, 에너지, 제조업제품 수입의 92.9%가 수입관세 폐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king coal : 발표와 동시에 3%의 관세 폐지</li> <li>- Thermal coal : 2년간 6%의 관세 폐지</li> <li>- 동·알루미늄 : 발효 후 1~10%의 수입관세 폐지</li> <li>- 자동차 엔진·다이아몬드·플라스틱 : 4년 내 수입관세 폐지</li> <li>-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 4년 내 3~10%인 수입관세 폐지</li> </ul> </li> </ul>
호주 개방	<p><b>제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관세장벽이 낮은 호주는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 규모나 관세 변화를 보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 등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li> <li>- 의류, 주방용품, 신발 등 생활 소모품의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li> <li>- 중국산 자동차 및 상용차와 그 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li> </ul> </li> </ul>

#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

## 주요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임병호 주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01

#### 한-페루 FTA 개관

2011년 8월에 발효되어 이행 4년차에 접어든 한-페루 FTA 최근 페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한 방송사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페루 마추픽추를 여행하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 페루를 여행하려고 하는 국내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있다. 한-콜롬비아 FTA 역시 국내에서 먼저 국회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어 상대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면 발효되는 상황이며, 멕시코와 MERCOS와는 협상재개 또는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남미 FTA의 교두보 격인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수출입 품목의 FTA활용 계획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페루 FTA 주요내용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발효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장한 상징적인 FTA 협정이다. 한-페루 FTA를 통하여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과 페루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의 자원 부국으로서 은 매장량 세계1위, 아연 매장량 세계 3위, 주석 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페루 F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페루는 FTA 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품목 수 기준으로도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은 90%이상이 아연광, 동광, 철광, 등 광물성 제품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개방 부담이 크지 않으며, 또한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양허		양허유형		페루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벨트(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사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승용차, TV,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연고, 스웨터,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승용차,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아연과, 일부 연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 고등어, 닭고기, 오리고기,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 팥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연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속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보리, 사과, 배, 분류,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 명태,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페루 FTA 활용상의 특징

### 원산지증명 방식(협정 제4.1조)

한-페루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간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증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자율증명을 할 수 있는 자는 인증수출자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수출자로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운영된다. 협정 발효 5년 이후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자율증명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 한-미, 한-EU,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구 분	한-미	한-EU	한-페루
제 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자율 → 자율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인증수출자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원산지검증 방식(협정 제4.8조)

한-페루 FTA에서는 원산지검증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며, 간접검증이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조사하고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 ■ 한-미, 한-EU, 한-페루 FTA 원산지검증 방식 비교

한-미	한-EU	한-페루
직접검증 (섬유상품 간접검증 가능)	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 참관가능)	직접·간접검증 (선택)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직접운송원칙(제3.14조)

한-페루 FTA에서는 한-미 및 한-칠레 FTA와 달리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양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제3국의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고, 선적 하역 재포장 외의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02

### 한-페루 FTA 산업동향

이하에서는 한-페루 FTA 발효 전후의 산업별 수출입동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산업의 분류 기준은 MTI 1단위로 하였으며 산업별 수출동향 및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로 구분하였다. 발효전 후 1년, 2년, 3년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기간
발효전 3년	2008.7~2009.6
발효전 2년	2009.7~2010.6
발효전 1년	2010.7~2011.6
발효후 1년	2011.7~2012.6
발효후 2년	2012.7~2013.6
발효후 3년	2013.7~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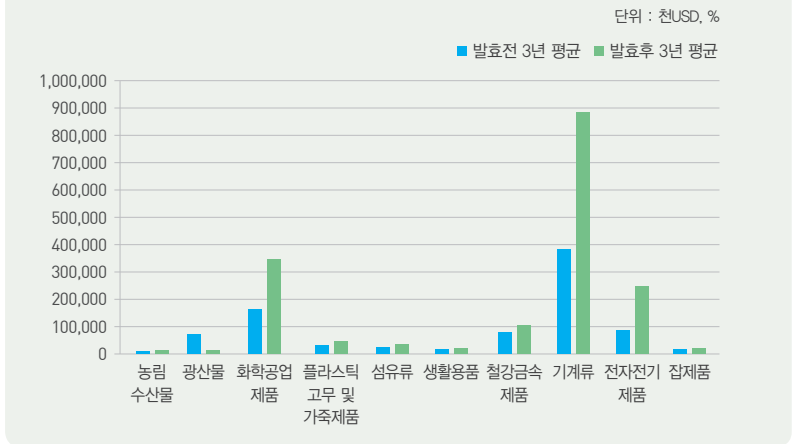
### 산업별 수출동향

#### 가. 對페루 산업별 수출 동향 (MTI 1기준)

다음은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 동향을 산업별 (MTI 1기준)로 나타낸 것이다. MTI 1단위 기준으로,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 그리고 전자전기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기계류의 경우 발효전 3년 평균이 3억8천3백만 달러에 머무르던 수출금액이 발효후 3년간 평균 8억8천3백만 달러로 약 130%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화학공업제품이 122.5%, 전자전기제품이 174.7% 증가하는 등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동향



■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동향

단위 : 천USD, %

MTI 1	발효전 3년 평균	발효후 3년 평균	증감률
농림수산물	459	867	89.0
광산물	71,374	1,842	-97.4
화학공업제품	158,352	352,336	122.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8,557	54,662	91.4
섬유류	26,845	30,814	14.8
생활용품	2,925	7,178	145.4
철강금속제품	85,814	106,405	24.0
기계류	383,825	883,381	130.2
전자전기제품	87,284	239,799	174.7
잡제품	2,034	6,308	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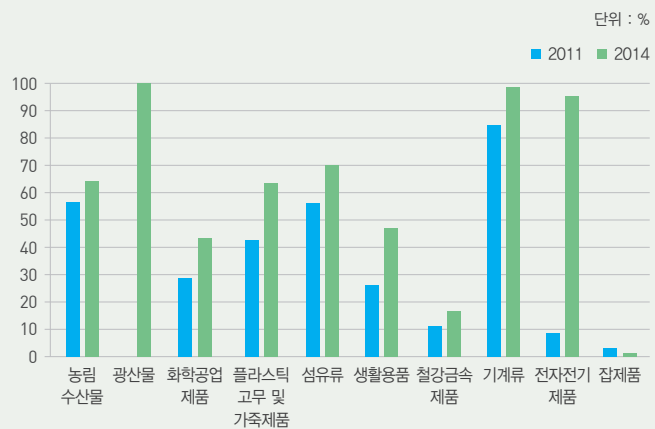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나. 對페루 산업별 수출 FTA활용률

다음은 한-페루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의 산업별 FTA 활용률을 MTI 1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출활용률은 60.7%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91.8%의 수출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산업별로 살펴볼 경우,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FTA 활용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산물 산업의 경우 2011년 발효 시점에서 FTA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출되는 광산물 모든 물품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 FTA 활용률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섬유류가 2011년 55.6%에서 2014년 70.3%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8.2%에서 93.2%로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TA발효 후 3년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FTA를 활용한 산업은 광산물 (99.5%), 기계류(96.6%)로서 90% 이상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며, 섬유류(59.7%), 철강금속제품(58.8%), 전자전기제품(52.0%)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3년간 33.9%의 FTA활용률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잡제품의 경우 2.9%의 활용률로서 대부분의 수출이 FTA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對페루 산업별(MTI 1 기준) 수출 FTA활용률

단위 : %

MTI 1	2011	2012	2013	2014	평균
농림수산물	56.5	30.8	22.5	63.4	33.9
광산물	0.0	0.0	100	100	99.5
화학공업제품	29.6	54.9	42.1	42.5	45.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1.5	39.2	54.0	61.9	48.4
섬유류	55.6	56.6	59.7	70.3	59.7
생활용품	25.8	35.1	57.6	47.5	43.9
철강금속제품	11.5	77.0	47.3	17.5	58.8
기계류	85.9	97.3	98.1	99.1	96.6
전자전기제품	8.2	28.6	97.1	93.2	52.0
잡제품	2.3	20.8	3.4	0.9	2.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산업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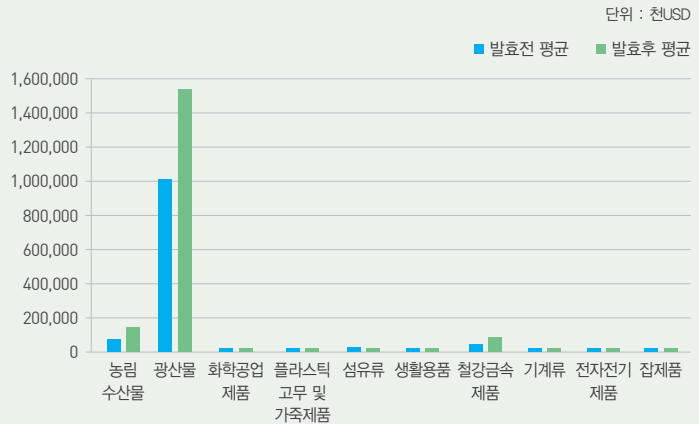
### 가. 對페루 산업별 수입 동향 (MTI 1기준)

다음은 우리나라의 對페루수입 동향을 산업별 (MTI 1기준)로 나타낸 것이다.

MTI 1단위 기준으로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의 페루 수입은 대부분 광산물 관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산물 산업의 경우 FTA 발효시기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보였으며, 발효 전후 증가율도 49.5%로 높은 편이다.

기타 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의 산업이 발효 전후 평균 1천만 달러 이상 수입된 산업군들인데, 농림수산물이 79.1%, 철강금속제품이 242.5%로 높은 수입증가를 나타낸 반면, 섬유류의 경우 -5.6%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입동향



자료 : 무역협회

■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입동향

단위 : 천USD, %

MTI 1	발효전 3년 평균	발효후 3년 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79,089	141,651	79.1
광산물	1,016,522	1,519,766	49.5
화학공업제품	2,690	2,365	-12.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2	271	121.5
섬유류	12,536	11,837	-5.6
생활용품	165	320	94.1
철강금속제품	17,653	60,469	242.5
기계류	328	272	-17.1
전자전기제품	435	765	75.8
잡제품	4	9	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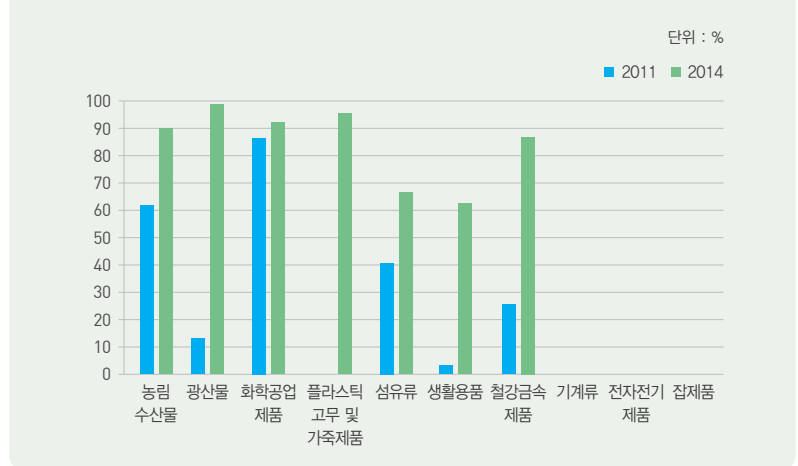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나. 對페루 산업별 수입 FTA활용률

다음은 한-페루 FTA 발효 후, 우리나라對 페루수입의 산업별 FTA 활용률을 MT1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입활용률은 54.0%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수입활용률이 92.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88.1%의 수입활용률을 나타냈다.

수입활용률의 경우 2011년부터 모든 산업에서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경우 2014년도에는 90%를 상회하는 FTA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철강금속제품과 섬유류,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6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의 경우에는 FTA 활용률이 0%로 FTA 수입으로 인한 실적은 없으며, 모두 일반수입으로 나타났다.

그림 4 對페루 산업별(MT1 기준) 수입 FTA 활용률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수입의 경우 발효 초기인 2011년도에는 30% 이하의 낮은 FTA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나 점차 증가한 산업군이며,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발효 초기부터 60%를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 對페루 산업별(MTI 1 기준) 수입 FTA 활용률

단위 : %

MTI 1	2011	2012	2013	2014	평균
농림수산물	61.4	94.8	94.5	90.4	92.8
광산물	12.9	22.6	100.0	99.2	99.9
화학공업제품	87.4	91.9	88.5	93.0	90.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0.0	0.4	98.6	95.1	96.6
섬유류	41.0	46.9	56.0	65.7	52.5
생활용품	3.3	77.8	78.3	62.5	72.7
철강금속제품	25.8	96.3	96.5	86.7	93.7
기계류	0.0	0.0	0.0	0.0	0.0
전자전기제품	0.0	0.0	0.0	0.0	0.0
잡제품	0.0	0.0	0.0	0.0	0.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03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수출동향(HS 4단위 기준)

#### 가.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상위 30대)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품목 중, HS 4단위 기준으로 수출금액기준 상위 30개 주요 수출품목을 나타낸 표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출한 품목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2013년 기준 총 5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어서 제8528호의 모니터와 TV가 9천4백만 달러,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가 7천6백만 달러, 제3902호의 프로필렌 중합체가 7천5백만 달러, 제8702호의 수송용 자동차가 4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對페루 일반수출 상위30대 품목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1	8703	승용자동차	354,838	511,730	503,929	253,042	1,623,539	96.9
2	8528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기	110,299	139,160	94,561	26,215	370,235	46.0
3	8704	화물자동차	62,133	62,758	76,818	24,759	226,468	-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4	3902	프로필렌 중합체	54,451	49,868	75,394	37,118	216,831	-
5	8702	수송용 자동차	81,798	52,852	40,166	13,703	188,519	-
6	3901	에틸렌 중합체	39,504	28,555	52,692	29,926	150,677	-
7	8429	볼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등	32,290	53,238	29,626	10,948	126,102	-
8	7210	철,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33,081	30,564	30,354	11,691	105,690	-
9	8708	자동차 부분품	26,344	29,582	32,668	14,219	102,813	-
10	2523	포틀랜드 시멘트	12,632	25,999	50,267	13,065	101,963	-
11	3907	폴리에스테르	18,972	36,820	38,599	5,114	99,505	-
12	7216	철, 비합금강의 형강	12,961	31,680	23,727	10,521	78,889	-
13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유도체	20,786	24,144	25,857	7,838	78,625	97.4
14	4011	고무 타이어 (신품)	19,253	22,624	22,129	8,628	72,634	-
15	2837	시안화물	18,292	23,834	22,170	6,928	71,224	-
16	8517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20,272	16,477	18,654	14,705	70,108	-
17	8450	세탁기	12,889	22,826	22,153	11,518	69,386	100.0
18	3817	혼합알킬벤젠	11,445	7,877	13,940	5,490	38,752	-
19	4810	도포한 종지와 판지	12,147	13,836	5,782	5,243	37,008	48.0
20	8504	변압기	4,796	20,207	9,131	1,548	35,682	-
21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4,733	10,245	3,356	6,345	34,679	-
22	3903	스티렌의 중합체	7,766	11,948	8,327	5,035	33,076	-
23	7208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8,605	8,294	2,672	1,678	31,249	-
24	3002	치료용 피, 백신	3,513	5,054	11,145	10,583	30,295	13.4
25	8418	냉장고	5,317	8,619	10,146	3,363	27,445	94.2
26	5603	부직포	9,769	6,058	7,380	4,215	27,422	98.9
27	8431	기계의 부분품	6,218	8,696	8,662	3,596	27,172	-
28	4002	합성고무, 팩티스	8,572	9,835	5,503	2,209	26,119	-
29	3204	합성유기착색제	5,249	8,081	7,697	4,514	25,541	-
30	9018	내과, 외과, 치과용 기기	4,976	4,967	7,951	3,217	21,111	9.0

자료 : 관세청,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은 2011~2014(6월) 평균

※ FTA 활용률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FTA 수출되지 않은 품목

## 나. FTA 활용 수출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FTA활용률이 90% 이상인 물품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96.9%), 제2917호의 폴리카르복시산과 유도체(97.4%), 세탁기(100%), 냉장고(94.2%), 부직포(98.9%)이다. 이하에서는 승용자동차와 냉장고, 부직포의 수출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승용자동차 (제8703호)

#### • 산업동향 : 일본산 자동차와의 경쟁 치열

첫 번째 주요 수출품목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이다. 승용자동차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한 물품 중 가장 높은 수출금액을 나타내는 품목이다. 페루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과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산 자동차가 9개 상위 브랜드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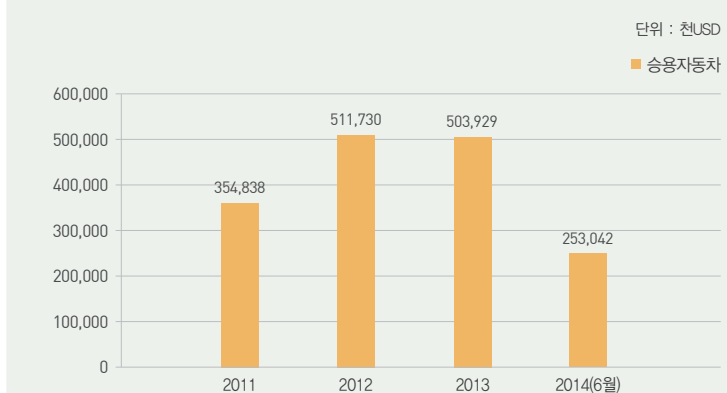
####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8703	승용자동차	354,838	511,730	503,929	253,042	1,623,539	19.2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5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으로서 화물이 아닌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주요 용도인 차량이다. HSK에서는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를

실린더의 용량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신차 및 중고차로 구분한다.

• FTA 활용금액 : 실린더 용량 1,500~3,000시시의 승용자동차 최대수출품목  
 제8703호의 세부품목 중에서 가장 FTA 수출이 높은 물품은 제8703.2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실린더 용량이 1,500~3,000시시의 것이다. 이러한 물품은 국내 배기량 기준 중형차량 및 중형차량 이상의 차량으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모델차량이다. 또한 제8703.22호의 실린더 용량 1,000~1,500시시의 자동차가 두 번째로 FTA 활용금액이 큰 물품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8703.10	설상주행, 골프용 등	-	-	-	-	-
8703.21	1,000 이하 불꽃점화식	2,607	34,563	39,013	16,464	92,647
8703.22	1,000~1,500 불꽃점화식	32,322	102,122	116,626	79,744	330,815
8703.23	1,500~3,000 불꽃점화식	102,413	356,593	332,109	149,453	940,568
8703.24	3,000초과 불꽃점화식	1,727	3,849	2,998	2,302	10,876
8703.31	1,500이하 압축점화식	-	-	-	-	-
8703.32	1,500~2,500 압축점화식	34	1,060	2,478	1,895	5,466
8703.33	2,500초과	487	1,625	2,100	1,313	5,524
8703.90	기타	-	-	-	-	-
총합계		139,590	499,812	495,323	251,171	1,385,89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FTA 활용률 : 대부분의 승용자동차 사실상 FTA 활용

2013년도 기준 제8703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FTA 활용률 90%를 상회한다. 제8703호의 물품을 6단위 물품별로 구분하는 경우, 실린더 용량별로 6단위 품목번호가 구분된다. FTA 수출금액상 가장 높은 금액을 수출한 제8703.23호의 경우 97.8%의 활용률을 나타냈으며, 제8703.22호는 96.1%의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제8703.24호(실린더 용량 3,000cc시 초과)는 99.8%의 활용률을 나타내어 사실상 대부분의 물품이 FTA를 활용한 수출임을 알 수 있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8703.10	설상주행,골프용등	-	-	0	-	0
8703.21	1,000이하불꽃점화식	36.0	91.5	99.4	93.8	91.0
8703.22	1,000~1,500불꽃점화식	80.1	96.9	98.8	99.3	96.1
8703.23	1,500~3,000불꽃점화식	91.8	98.7	98.0	99.9	97.8
8703.24	3,000초과불꽃점화식	100.0	99.4	100.0	100.0	99.8
8703.31	1,500이하압축점화식	-	-	-	-	-
8703.32	1,500~2,500압축점화식	49.6	70.5	96.8	98.3	90.2
8703.33	2,500초과	97.5	94.7	99.2	100.0	97.8
8703.90	기타	-	-	-	-	-
평균		86.5	97.7	98.3	99.3	96.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소결 : FTA 활용수출 가속화 전망

페루의 자동차 시장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페루 자동차협회(ARAPER)에 따르면 2012년 페루의 자동차 판매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9.9%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페루의 자동차 판매 증가는 한-페루 FTA효과에 앞서, 페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구매력의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페인계 은행인 BBVA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국민들이 자가용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페루 FTA로 인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상승도 수출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FTA발효 이후인 2012년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32%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발효 전까지 1위였던 일본은 28%로 2위로 하락하였다.

#### ■ 국가별 페루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독일	인도	기타
2010년	25	43	4	6	5	5	0	12
2012년	32	28	9	7	7	5	3	9

자료 : 페루중앙은행과 BBVA의 조사 보고서

다만, 페루는 대형차보다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역시 3,000cc 이하 차량의 비중이 전체의 91%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3,000cc 이하의 수출차종을 다양화 시키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이들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을 도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페루 FTA로 기준세율 9%의 한국산 중대형 자동차는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되며 기준세율 9%의 중소형 자동차는 10년 내 철폐 예정됨에 따라 향후 페루시장의 한국산 자동차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냉장고 (제8418호)

### · 산업동향 : 연평균 수출 38.1%의 높은 수출증가

제8418호의 냉장고 및 냉동기기는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품목 중 상위 30대 품목에서 25번째 물품이다. 2011년 약5백3십만 달러를 수출한 후 지속적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11년의 약 두 배 수준인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누계는 2천7백만 달러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8.1%이다.

제8418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나 휘발성 물체 또는 물을 기화시켜 연속적으로 저온을 발생시키는 기계이다. 냉장고는 압축기와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는 압축형 냉장고와 압축기 대신 가스발생기가 사용되는 흡수형 냉장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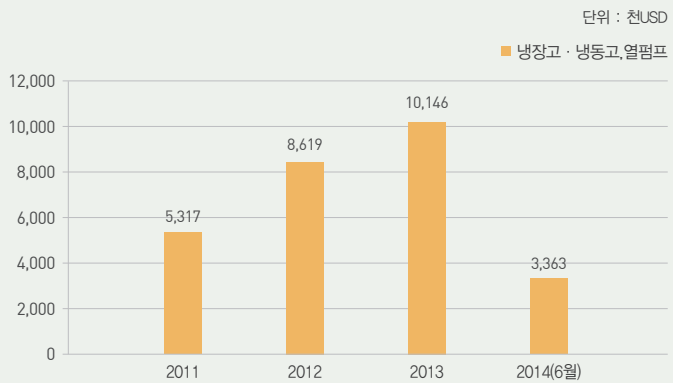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 증가율
8418	냉장고·냉동고,열펌프	5,317	8,619	10,146	3,363	27,445	38.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6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FTA 활용금액 : 대부분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의 수출

제8418호에는 외부 문의 형태나 그 구동방식(압축식 또는 흡수식), 냉장고의 형태(체스트형, 직립형, 가구형, 쇼케이스형, 냉장기구)에 따라서 HS6단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냉장고는 제8418.10호의 냉장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 냉장고의 부분품을 수출한 것을 제외하면 對페루 수출용 냉장고는 사실상 제8418.10호의 물품이 대부분이다.

냉장고는 대표적인 가전기기로서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페루 내 한국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호감을 보인다. 페루에서는

현재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며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산 가전제품은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현지시장 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FTA수출동향(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8418.10	냉장고, 냉동고 (분리된 외부문)	1,740	7,667	8,645	2,953	21,006
8418.21	압축식 가정형	-	-	-	-	-
8418.29	기타 가정형	-	-	-	-	-
8418.30	체스트형	-	-	-	-	-
8418.40	직립형	-	-	-	-	-
8418.50	가구형	-	-	-	-	-
8418.61	열펌프	-	-	-	-	-
8418.69	기타	-	-	-	-	-
8418.91	부분품 (가구형)	-	-	-	-	-
8418.99	부분품 (기타)	-	84	100	0	184
총합계		1,740	7,751	8,745	2,954	21,1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완제품은 높은 활용률, 부분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

냉장고의 HS 6단위별 활용률의 경우, 제8418.10호(분리된 외부문을 갖춘 냉장고, 냉동고)물품의 FTA활용률이 90%를 상회한다. 최근 3년간 냉장고의 FTA활용률은 94.6%이므로 대부분의 수출은 FTA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냉장고 부분품의 수출은 냉장고 FTA 수출에 미치지 못하는 77.4%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상반기의 경우 1%에 미치지 못하는 활용률로 부분품 수출은 거의 FTA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식 냉장고(제8418.21호), 체스트형 냉장고(제8418.30호), 직립형 냉장고(제8418.40호) 역시 FTA 대상 수출금액이 4만 달러 존재하였으나 특혜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FTA수출활용률(HS 6단위 기준)

단위: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8418.10	냉장고, 냉동고 (분리된 외부문)	98.4	95.9	93.5	92.4	94.6
8418.21	압축식 가정형	-	0	-	-	0
8418.29	기타 가정형	-	-	0	-	0
8418.30	체스트형	-	0	-	-	0
8418.40	직립형	0	0	0	0	0
8418.50	가구형	-	-	-	-	-
8418.61	열펌프	-	-	-	-	-
8418.69	기타	-	-	-	-	-
8418.91	부분품 (가구형)	-	-	-	-	-
8418.99	부분품 (기타)	-	79.9	85.3	0.8	77.4
	평균	97.4	95.5	93.2	92.1	94.2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Made in Korea' 효과로 수출 상승

우리나라 업체들은 페루내 가전시장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한 업체는 수질이 나쁜 페루시장을 겨냥하여 워터펌프를 내장한 디스펜서 양문형 냉장고 '망꼬라(MANCORA)'를 출시하였다. 기존 디스펜서 냉장고 제품과 달리 정수된 물을 공급받기 위해 별도의 외부 호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냉장실 내부에 생수 저장케이스를 두고 워터펌프를 활용하여 냉장실 쪽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 시원한 물과 얼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망꼬라는 페루 북쪽 가장 깨끗한 바다를 뜻한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콘셉트로 매장 디스플레이 디자인, POP 등을 선보일 정도로 '한류'의 효과가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장고 완제품과는 달리, 냉장고 부분품(8418.99호)의 FTA활용률은 아직 완제품의 FTA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냉장고 완제품의 페루시장 진출이 초반인 만큼, A/S에 사용되는 부분품보다는

완제품의 수출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냉장고(제8418.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반면, 부분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보다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낮은 FTA활용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된다.

**3 부직포(제5603호)**

• **산업동향 : 높은 수출금액이지만 점차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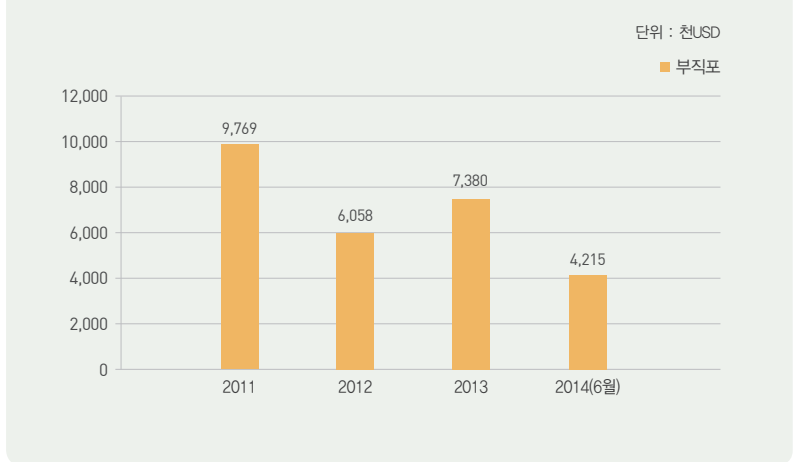
제5603호에 속하는 부직포는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물품 중 수출금액기준 26번째 품목이다. 2011년도에는 총 9백7십만 달러를 수출하여 최근 3년간 연간 최대수출금액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수출이 감소하여 6백만 달러를 나타내었으며 2013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3년간 총 수출금액은 2천7백만 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3% 수준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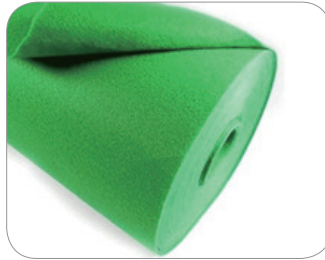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5603	부직포	9,769	6,058	7,380	4,215	27,422	-13.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7**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부직포란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배열하고 접착제를 첨가하여 접착시킨 섬유상의 시트(sheet) 또는 웹(web)을 말한다. 부직포의 재료로 사용되는 섬유는 천연섬유나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상 또는 필라멘트상일 수도 있다.

#### • FTA 활용금액 :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의 수출

부직포는 HS 6단위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다시 1제곱미터당 중량에 의하여 품목번호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FTA 협정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물품은 제5603.12호의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의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5그램 이하의 것이다. 부직포의 중량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중량 (1제곱미터당 그램)	주요 용도
농업용	30~80	못자리용, 고추건조용 등
가방용	40~100	판촉용 가방, 쇼핑백
포장용	60~100	옷커버, 선풍기커버 등
산업용	20~240	신발제조시 내장재 및 감피
자동차용	20~100	자동차 내장재용

자료 : 한국부직포테크(주)

이러한 부직포의 FTA 활용 수출은 2011년 협정발효 직후 3백8십만 불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두 배인 7백3십만 불을 수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만 4백만 불 이상 수출하였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5603.11	인조필라멘트(25g/m <sup>2</sup> 이하)의 것	-	-	-	-	-
5603.12	인조필라멘트(25g/m <sup>2</sup> ~70g/m <sup>2</sup> )의 것	3,892	5,984	7,313	4,143	21,331
5603.13	인조필라멘트(70g/m <sup>2</sup> ~150g/m <sup>2</sup> )의 것	-	-	-	-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5603.14	인조필라멘트(150g/m <sup>2</sup> 초과)의 것	-	-	-	-	-
5603.91	기타(25g/m <sup>2</sup> 이하)의 것	-	-	-	-	-
5603.92	기타(25g/m <sup>2</sup> ~70g/m <sup>2</sup> )의 것	-	-	16	-	16
5603.93	기타(70g/m <sup>2</sup> ~150g/m <sup>2</sup> )의 것	-	-	-	-	-
5603.94	기타(150g/m <sup>2</sup> 초과)의 것	-	-	-	-	-
총합계		3,892	5,984	7,329	4,143	21,347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부직포 대부분 FTA 적용 수출

부직포의 수출활용률은 사실상 모든 수출물품이 FTA 적용받아 수출하고 있어, 100% 활용에 가깝다. 제5603.12호의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는 2011년 협정발효 직후부터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FTA 협정을 적용받아왔다.

다만, 제5603.92호의 기타 부직포의 경우 수출대상금액은 17만 달러이나 실제 FTA 적용금액은 1만6천 달러에 불과해 9.3%의 낮은 활용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제5603.13호의 부직포와 제5603.14호의 부직포 역시 약1만 달러의 수출이 존재하였음에도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5603.11	인조필라멘트(25 g/m <sup>2</sup> 이하)의 것	-	-	-	-	-
5603.12	인조필라멘트(25 g/m <sup>2</sup> ~70 g/m <sup>2</sup> )의 것	99.3	100.0	99.9	100.0	99.9
5603.13	인조필라멘트(70 g/m <sup>2</sup> ~150 g/m <sup>2</sup> )의 것	-	-	0	-	0
5603.14	인조필라멘트(150 g/m <sup>2</sup> 초과)의 것	-	0	-	0	0
5603.91	기타(25 g/m <sup>2</sup> 이하)의 것	-	-	-	-	-
5603.92	기타(25 g/m <sup>2</sup> ~70 g/m <sup>2</sup> )의 것	0	0	25.5	0	9.3
5603.93	기타(70 g/m <sup>2</sup> ~150 g/m <sup>2</sup> )의 것	-	-	-	-	-
5603.94	기타(150 g/m <sup>2</sup> 초과)의 것	-	-	-	-	-
평균		99.2	98.8	99.3	98.3	9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소결 : 한국산 부직포의 가격경쟁력 상승

그동안 페루의 부직포 수입은 고급제품은 미국산, 중급제품은 일본, 한국 제품이며, 중국산은 중하급 제품으로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으나, 최근 한-페루 FTA로 인해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었다.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부직포는 중량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중량으로 보아 주요 용도는 산업이나 자동차용보다는 농업용에 가깝다. 이것은 페루의 주요 생산물품인 1차 농림수산물용이나 채광시 발생하는 먼지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직포의 이러한 용도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페루의 부직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FTA 수출 기대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다음은 수출상위 30대 물품 중, FTA 활용률이 30% 이하인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수출금액은 높고 동시에 FTA 협정대상물품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또는 기타 특혜조건이 미비하여 FTA가 아닌 일반수출된 품목이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FTA활용을 위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높은 수출금액을 이용한 FTA 활용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상위 30대 품목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은 제3002호의 치료용 피, 백신 (13.4%), 내과, 외과, 치과용 기기 (9.0%)가 있다.

#### 1 치료용 백신 (제3002호)

##### • 산업동향 : 성장하는 페루 의료시장

페루는 그동안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병원 대신 약사들의 처방을 통해 치료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 에이즈 치료용 의약품 (제3004.20호)의 경우 연평균

86.9%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인위생용품(제3307.90호)의 경우에도 성장세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對페루 30대 수출품목 중, 제3002호(치료용 피와 백신 등)는 수출액 기준 24번째 물품으로서 총 3년간 총 수출금액이 3천만 달러에 달하며, FTA 발효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1%에 달하는 물품이다. 그에 반하여 동 물품의 FTA 활용률은 30% 미만인 13.4%로서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에 속한다.

2011년도 수출액은 약 3백5십만 달러였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천1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1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이미 전년도 연간 수출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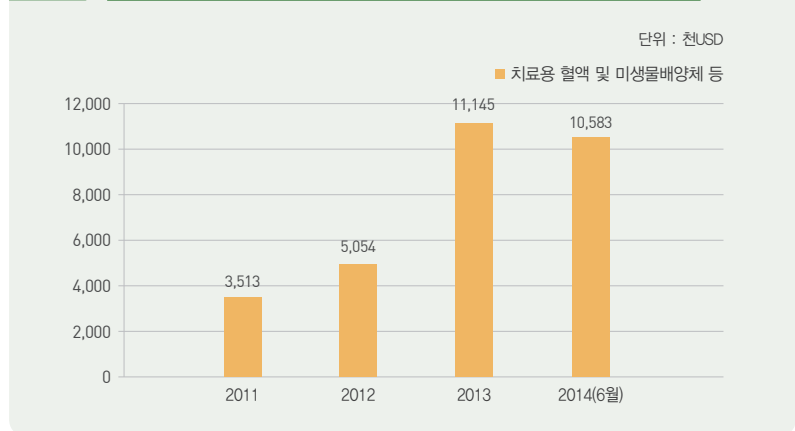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동물의 피와 면역물품, 미생물 배양체 등	3,513	5,054	11,145	10,583	30,295	78.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8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3002호의 물품에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사람과 동물의 피와 면역물품(백신), 미생물 배양체 등이 분류된다. 백신이란 미생물에서 유래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면역성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독성은 경감시키도록 처리된 물품이다.

#### • FTA 활용금액 : 인체 치료용 백신이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출품목인 제3002호 물품 중, 주요 수출물품은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이다. 제3002호 수출금액 360만 달러 중 340만 달러를 차지하여 제3002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 수출금액은 2012년 2백 8십만 달러였으나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는 각각 17만 달러, 46만 달러로 2012년의 수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외에 제3002.90호(독소 등)의 기타 물품이 18만 달러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 제3002.90호의 수출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2만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3002.10	면역혈청	0	0	0	0	0
3002.20	백신(인체용)	0	2,849	177	460	3,487
3002.30	백신(동물용)	0	0	0	0	0
3002.90	기타	0	1	19	21	188
총합계		0	2,997	197	482	3,67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FTA 활용률 : 변동이 심한 백신의 FTA 활용률

제3002호 물품의 FTA활용률은 연도별 편차가 큰 편으로서 2011년에는 FTA 수출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59.3%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8%, 4.6%로 감소하였다. 특히,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은 2012년에는 65.3%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나 2013년에는 1.7%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4년에는 FTA 수출대상금액 1천만 달러 중, 4.6%인 46만 달러만이 FTA 협정을 적용받아 수출되었다.

또한 제3002.10호의 면역혈청은 FTA 수출대상금액이 4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FTA협정적용을 전혀 하지 않아 0%의 수출활용률을 나타내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3002.10	면역혈청	-	0	0	0	0
3002.20	백신(인체용)	0	65.3	1.7	4.6	13.7
3002.30	백신(동물용)	-	-	-	-	-
3002.90	기타	0	22.9	3.2	7.1	11.7
평균		0	59.3	1.8	4.6	13.4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국가 브랜드와 비례하는 백신 판매량

백신의 對페루 연도별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 65.3%의 높은 활용률에 비하여 2013년 FTA적용 수출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백신구매에 있어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페루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업들의 국제입찰 성공여부, 해당 년도의 유행병 또는 의사들의 국가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백신은 특성상 최종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으므로 담당기관 또는 의사가 추천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페루의 사립병원 의사들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백신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입찰의 경우 녹십자는 2014년 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의 2014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2,300만 달러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주했다. 녹십자가 공급하는 백신은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백신수출업체들은 FTA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향후 백신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사용바늘 (제9018호)**

• 산업동향 : 주사용 바늘의 지속적인 수출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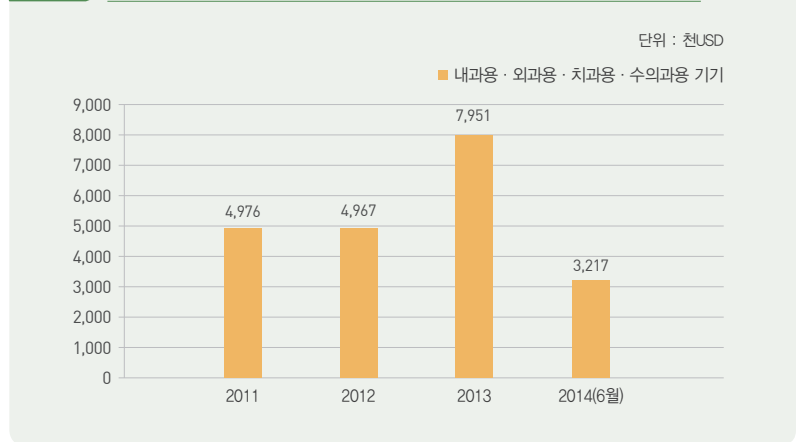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30위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은 주사용바늘이다. 최근 3년간 총 수출금액은 2천1백만 달러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6.4%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약 5백만 불 수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약 8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익과용 기기	4,976	4,967	7,951	3,217	21,111	26.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9**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익용의 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내과 의사·외과 의사·치과 의사·수익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그러나 제9018호의 물품 중에서 FTA 수출물품은 제9018.32호의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제9018.32-1000호의 주사침 (Needles for injections)의 수출이다.

#### • FTA 활용금액

#####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합계
9018.11	심전계	-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
9018.14	신티그래픽식	-	-	-	-	-
9018.19	기타	-	-	-	-	-
9018.20	자외선, 적외선 기기	-	-	-	-	-
9018.31	주사기	-	-	-	-	-
9018.32	바늘	-	14,410	-	25,200	39,610
9018.39	기타	-	-	-	-	-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	-	-	-	-
9018.49	기타	-	-	-	-	-
9018.50	안과용 기기	-	-	-	-	-
9018.90	기타	-	-	-	-	-
총 합계		-	14,410	-	25,200	39,61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FTA 활용률 : 9.5%에 머무르는 낮은 FTA 활용률

주요 수출물품인 주사침(제9018.32호)의 한-페루 FTA 활용률은 9.5%에 불과하다. 제9018호의 물품 중에서 FTA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제9018.32-1000호의 주사침인데, 2014년의 경우 동 물품의 총 수출은 104,800달러 중에서 FTA 적용 금액은 25,200달러에 그쳐, FTA 활용률 24.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사기(제9018.31호)의 경우 2011년에 2만4천 달러의 수출금액이 존재하였으나 FTA 미적용으로 인하여 활용률이 0%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9018.11	심전계	-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
9018.14	신티그래픽식	-	-	-	-	-
9018.19	기타	-	-	-	-	-
9018.20	자와선, 적외선 기기	-	-	-	-	-
9018.31	주사기	0	-	-	-	0
9018.32	바늘	0	10.3	0	24.0	9.5
9018.39	기타	-	-	-	-	-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	-	-	-	-
9018.49	기타	-	-	-	-	-
9018.50	안과용 기기	-	-	-	-	-
9018.90	기타	-	-	-	-	-
평균		-	10.3	-	24.0	9.5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주사침 및 기타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FTA 활용방법 모색 필요

페루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2년 약 2.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5위이며 향후 2018년까지 11.7%씩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페루 의료시장의 성장은 페루 정부가 최근 국내 경제성장에 힘입어 의욕적으로 보건산업 성장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페루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의료 보편화를 위한 단계적 보건복지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9018호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는 우리나라 對페루 30대 수출물품이다. 그러나 한-페루 FTA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이 주사기와 주사침 정도이며, 기타 고부가가치 물품인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은 FTA 협정대상물품이 아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확대에 따른 주사기 및 바늘과 같은 경우 페루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FTA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현재 9.5%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사용바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된 철강을 원료로 하여 비늘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이 쉬운 편에 속한다.

또한 제9021호의 정형외과/보철기와 같은 환자보조기 시장의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동 분야의 시장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품목별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 가. 對페루 주요 수입품목 (상위 30대)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HS 4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한 주요 30대 품목을 나타낸 표이다. 수입금액기준 가장 높은 품목으로서 제26류의 구리와 납, 아연광, 귀금속광이 각각 1위부터 3위, 5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제2711호의 석유가스가 총 5억5천만 달러를 수입되었으며, 제1605호의 조제식료품은 1억6천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우리나라의 對페루 일반수입 상위30대 품목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1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615,867	447,266	417,752	207,176	1,688,061	-
2	2607	납광과 그 정광	423,843	515,610	309,165	117,608	1,366,226	-
3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24,806	272,976	215,550	135,131	848,463	-
4	2711	석유가스와 가스상 탄화수소	-	-	498,442	56,665	555,107	100.0
5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98,248	192,422	162,321	61,233	514,224	-
6	1605	조제 감각류, 연체동물 등	48,662	45,419	40,800	27,514	162,395	91.1
7	0901	커피, 커피각, 커피대용물	54,167	39,090	37,065	9,689	140,011	99.4
8	7403	정제한 구리, 구리합금	1,589	33,975	16,362	9,804	61,730	95.2
9	0307	연체동물	12,339	14,687	12,473	10,012	49,511	79.7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10	7404	구리 웨이스트, 스크랩	7,689	6,941	9,897	4,972	29,499	-
11	0806	포도	734	5,084	12,396	10,132	28,346	100.0
12	7901	아연의 괴	-	-	14,977	13,073	28,050	100.0
13	7401	구리의 매트	1,237	3,753	10,583	12,471	28,044	-
14	0304	어류의 필레	6,052	4,911	8,244	2,430	21,637	100.0
15	2301	육, 어류의 비식용 가루	2,817	6,064	2,707	7,166	18,754	98.5
16	7801	납의 괴	-	-	9,519	1,443	10,962	99.1
17	1504	어류의 지방	576	1,795	4,365	3,122	9,858	90.8
18	6109	티셔츠, 싱글리트	3,621	1,686	2,597	1,604	9,508	29.2
19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2,388	1,633	2,206	2,692	8,919	90.2
20	0803	바나나	1,422	2,909	2,153	2,051	8,535	100.0
21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 스크랩	2,389	1,793	1,023	2,212	7,417	-
22	1604	조제 어류, 캐비아	677	4,765	1,015	84	6,541	74.4
23	1209	파종용 종자, 과실	528	1,335	2,517	1,795	6,175	-
24	3203	식물성, 동물성 착색제	3,221	1,388	832	654	6,095	94.7
25	5105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2,014	1,152	1,242	1,166	5,574	-
26	0811	냉동과실, 냉동견과류	303	578	1,419	2,728	5,028	61.3
27	5112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직물	1,946	1,590	619	46	4,201	93.2
28	6105	남성용 셔츠	942	848	1,499	647	3,936	49.1
29	0306	갑각류	-	109	1,613	1,918	3,640	97.0
30	6110	저지, 폴오버, 카디건	1,354	1,041	709	421	3,525	25.3
31	0709	그 밖의 채소	510	959	1,419	455	3,343	96.5
32	8112	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 등	-	-	1,465	1,741	3,206	22.3

자료 : 관세청,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은 2011~2014(6월) 평균

\* FTA 활용률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FTA 수입되지 않은 품목

## 나. FTA 활용 수입품목

30대 수입물품 FTA활용률이 90% 이상인 물품은 총 16개 물품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제2711호의 천연가스, 제0806호의 포도, 제7901호의 아연의 과,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가 FTA 활용률 10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1605호의 조제갑각류, 연체동물 등 (91.1%), 제0901호의 커피(91.1%), 제7403호의 정제한 구리, 구리합금 (95.2%), 제2301호의 육, 어류의 비식용 가루(98.5%) 등이 FTA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천연가스(제2711호)

#### • 산업동향 : 대표적인 FTA 활용수입품목,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제2711호의 석유가스는 대표적인 FTA활용 수입물품이다. 수입액은 총 5억5천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중 3번째로 높은 수입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이다. 한-페루 FTA가 발효된 2011년과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수입실적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약 5천6백만 달러의 석유가스를 수입하였으나 동 금액은 FTA 활용금액이 아닌 일반수입금액이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2711	석유가스, 가스 상 탄화수소	-	-	498,442	56,665	555,107	-

자료 : 무역협회

제2711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에서 얻어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스형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15°C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상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HS 6단위상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물품은 제2711.11호의 천연가스이다. 천연 가스는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석유 및 석유가스와는 달리 지하에 기체상태로 매장된 화석연료이다. 땅속에 퇴적한 유기물로부터 생성된 연료라는 점에서

석유와 같으나 천연가스는 직접 채취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에너지이다. 또한 액화과정에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 연료이다.

• **FTA 활용금액 : 2013년에 집중된 FTA 활용 수입**

우리나라의 제2711.11호 액화천연가스의 FTA 활용수입은 2012년까지 없었으나 2013년에 4억4천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수입 실적은 없다. 제2711.12호의 프로판과 제2711.13호의 부탄역시 페루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이는 FTA수입이 아니며, FTA 특혜대상품목도 아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2711.11	천연가스(액화한 것)	0	0	446,078	0	446,078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0	0	0	0	0
2711.13	부탄(액화한 것)	0	0	0	0	0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액화한 것)	0	0	0	0	0
2711.19	기타(액화한 것)	0	0	0	0	0
2711.21	천연가스(가스상의 것)	0	0	0	0	0
2711.29	기타(가스상의 것)	0	0	0	0	0
총합계		0	0	446,078	0	446,078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발효 초 미활용, 발효 2년 후 100% 활용**

제2711.11호의 천연가스의 FTA활용률은 100%로서 수입되는 모든 액화천연가스는 FTA를 활용하여 특혜수입되고 있다. 기타 제2711호의 물품인 프로판, 부탄과 가스상의 천연가스 등은 수입되었으나 FTA 특혜대상이 아니므로 활용률 제고의 가능성은 낮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2711.11	천연가스(액화한 것)	-	-	100	-	100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	-	-	-	-
2711.13	부탄(액화한 것)	-	-	-	-	-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부타디엔(액화한 것)	-	-	-	-	-
2711.19	기타(액화한 것)	-	-	-	-	-
2711.21	천연가스(가스상의 것)	-	-	-	-	-
2711.29	기타(가스상의 것)	-	-	-	-	-
평균		-	-	100	-	10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페루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은 아직 부족

페루는 남미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분기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페루 남부 가스파이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4억4천만 달러의 천연가스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 2012년, 2014년의 수입금액이 전무하다. 이것은 FTA를 활용한 페루산 천연가스의 톤당 금액이 0.87달러<sup>1)</sup>로서 전체 수입 천연가스 평균인 0.77달러보다도 높고 특히 인도네시아(0.71달러), 말레이시아(0.68달러), 러시아(0.31달러)와 비교해서도 아직 가격이 높은 수준인 사실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산 천연가스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으로서 향후 FTA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 요인은 없기 때문에, 향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미오징어(제1605호)

• 산업동향 : 발효 초부터 완만한 감소세

제1605호의 조미오징어는 2011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물품 중 6번째로 수입금액이 높은 물품이다. 2011년 수입금액은

1) 2013년 수입금액 /수입중량



4천8백만 달러이며 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4천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3년간 총 수입금액은 1억6천2백만 달러이며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8.4%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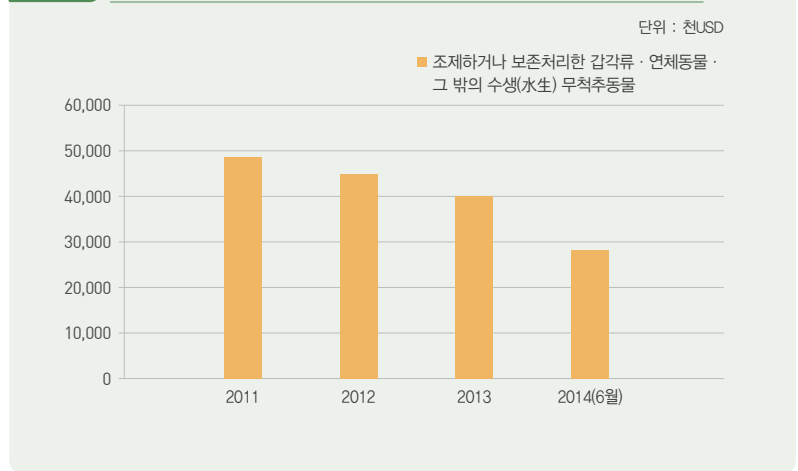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 증가율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48,662	45,419	40,800	27,514	162,395	-8.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0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된다. 가장 흔한 물품으로는 게, 새우와 가재, 홍합, 문어, 오징어, 달팽이, 성게, 해삼, 해파리 등이 있다. 특히, 페루에서 수입되는 제1605호의 물품은 제1605.54호(오징어), 제1605.

59호(기타 연체동물) 등으로서 이러한 물품은 일정 수준의 가공을 거친 것(주로 진미채<sup>2)</sup>이다.

• FTA 활용금액 : 주요 수입품목은 조미 오징어

제1605호의 세부품목상 우리나라의 對페루 FTA 활용 수입은 주로 갑오징어와 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해삼 등이 있다.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특혜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 3년간 총 9천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수입금액은 2014년 상반기 2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외에도 기타 연체동물의 경우 총 5백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2백2십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해삼의 경우 2만3천 달러 특혜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1605.10	계	-	-	-	-	-
1605.21	새우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	-	-	-
1605.29	기타 새우	-	-	-	-	-
1605.30	바닷가재	-	-	-	-	-
1605.40	그 밖의 갑각류	-	-	-	-	-
1605.51	굴	-	-	-	-	-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	-	-	-	-	-
1605.53	홍합	-	-	-	-	-
1605.54	갑오징어, 오징어	-	42,677	35,810	20,644	99,131
1605.55	문어	-	-	-	-	-
1605.56	클램, 새조개, 피조개	-	-	-	-	-
1605.57	전복	-	-	-	-	-
1605.58	달팽이	-	-	-	-	-
1605.59	기타 연체동물	-	462	2,330	2,285	5,077
1605.61	해삼	-	18	5	-	23

2) 오징어를 잘게 찢어 그늘에서 말리거나 기계 건조시킨 가공식품으로 건어물의 일종이다. (위키 백과)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1605.62	성게	-	-	-	-	-
1605.63	해파리	-	-	-	-	-
1605.69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총합계		-	43,157	38,145	22,929	104,231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FTA 활용률 : 점차 감소하는 FTA 활용률

제1605호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는 대부분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4.9%에 비하여 2014년 81.8%로서 약 1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수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20%의 FTA 활용률 역시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기타 연체동물은 100%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삼의 경우 2012년 수입시 FTA 활용률이 32.2%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해삼의 경우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FTA 활용으로 인한 혜택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FTA 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1605.10	계	-	-	-	-	-
1605.21	새우(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	-	-	-
1605.29	기타 새우	-	-	-	-	-
1605.30	바닷가재	-	-	-	-	-
1605.40	그 밖의 갑각류	-	-	-	-	-
1605.51	굴	-	-	-	-	-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	-	-	-	-	-
1605.53	홍합	-	-	-	-	-
1605.54	갑오징어, 오징어	-	94.9	91.6	81.8	90.7
1605.55	문어	-	-	-	-	-
1605.56	클램, 새조개, 피조개	-	-	-	-	-
1605.57	전복	-	-	-	-	-
1605.58	달팽이	-	-	-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1605.59	기타 연체동물	-	100.0	100.0	100.0	100.0
1605.61	해삼	-	32.2	100.0	-	37.4
1605.62	성게	-	-	-	-	-
1605.63	해파리	-	-	-	-	-
1605.69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평균	-	94.9	92.1	83.3	91.1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소결 : 페루산 오징어 원산지 증명서의 철저한 확인 필요

제1605호의 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제3류의 물품(어류, 갑각류 등)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605호의 조제식품이 페루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루산 오징어를 사용하여 조미오징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페루산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원산지 증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페루연안에서는 2010년경부터 페루 해역의 라니냐 현상(저수온현상)으로 인하여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페루산 오징어의 저가신고로 인하여 관세포탈업체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였다.<sup>3)</sup>

페루산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로 페루산 오징어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칠레산 오징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FTA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국내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페루산 오징어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커피 (제0901호)

### • 산업동향 : 한풀 꺾인 국내 커피전문점과 커피 수입

제0901호의 커피는 우리나라의 對페루 주요 수입물품으로서 지난 3년간 총 1억4천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2011년에 5천4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나

3) 부산세관, 페루산 오징어 관세포탈 업체 무더기 적발. 관세포탈한 14개 수입업체 검거.

수입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3천7백만 달러, 2014년 상반기까지 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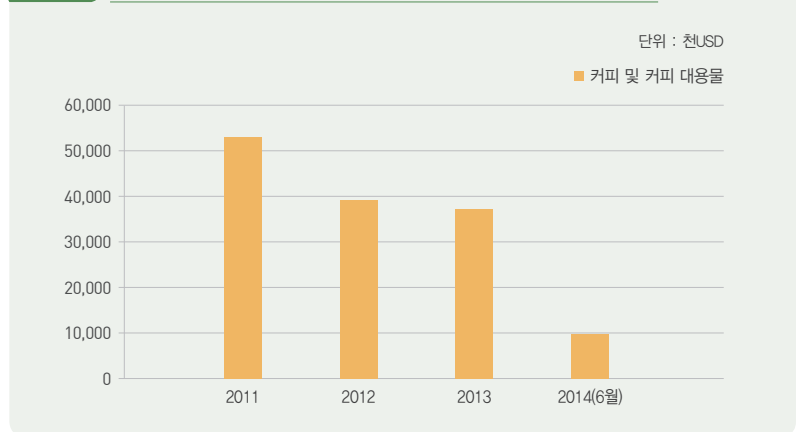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0901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54,167	39,090	37,065	9,689	140,011	-17.3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1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FTA 활용금액 : 주요 수입커피는 커피 생두

제0901호의 커피는 일반적으로 '원두'로 불리는 것으로서 생커피와 볶은 커피, 커피의 껍질 및 기타 커피로 사용되는 대용물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커피는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 즉 생커피로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커피는 수입 후 로스팅 공정을 거쳐 커피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0901호의 커피는 세부적으로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로 구분하며, 다시 카페인 제거 유무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커피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지 않은 커피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12만 톤의 커피원두를 수입하는 커피수입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한다. 최대 수입국은 2012년까지 브라질이었으나 한-아세안 FTA의 효과로 2013년부터 베트남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커피수입은 커피전문점 수와 비례관계에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은 2012년에 1만5,000개로 6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 커피전문점의 포화로 인하여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두커피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로부터의 커피수입도 이러한 커피동향과 일치하는데, 2011년 발효 1년차에 가장 높은 수입금액을 나타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페인 미제거의 복지 않은 커피는 3년간 총 8천5백만 달러 수입되었다. 2011년에 3천8백만 달러 수입되었으나 이후 특혜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총 9백만 달러 수입금액을 나타내었다.

제0901.2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도 수입되었으나 이는 FTA 특혜를 적용받지 않고 총 7만8천 달러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FTA수입동향(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K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0901.11	커피(카페인 미제거)	0	38,917	36,923	9,648	85,489
0901.12	커피(카페인 제거)	0	0	0	0	0
0901.21	볶은커피(카페인 미제거)	0	0	0	0	0
0901.22	볶은커피(카페인제거)	0	0	0	0	0
0901.90	기타	0	0	0	0	0
총 합계		0	38,917	36,923	9,648	85,4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사실상 대부분 FTA 활용한 수입 커피

제0901호의 커피 세부품목의 FTA활용률을 살펴보면 제0901.1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활용률이 99.5%로서 대부분의 물품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커피의 경우 FTA활용률이 0%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0901.21호의 카페인 미제거의 볶은 커피는 수입금액이 7만8천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FTA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카페인을 제거한 볶지 않은 커피(제0901.12호)의 경우에도 9천4백 달러 수입시 FTA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FTA수입활용률(HS 6단위 기준)

단위 : %

HSK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0901.11	커피(카페인 미제거)	0	99.6	99.6	99.6	99.5
0901.12	커피(카페인 제거)	-	0	0	-	0
0901.21	볶은커피(카페인 미제거)	0	0	0	-	0
0901.22	볶은커피(카페인제거)	-	0	-	-	0
0901.90	기타	0	-	-	0	0
평균			99.6	99.6	99.6	99.4

자료 : 관세청 자료로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가격 및 브랜드 인지도에서 아직 미흡한 페루산 커피

페루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커피로 유명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FTA의 체결과 국내 커피소비의 증가에 따라 페루커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페루는 원래 코카 잎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페루 정부의 마약재배 및 밀매를 퇴치하기 위하여 마약을 재배하던 지역을 커피와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페루의 커피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커피수확방식이 여전히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방식이고, 커피를 수출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도로시설도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페루의 커피가격은 다른 커피에 비하여 다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페루 FTA의 활용은 페루산 커피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4) 기본세율 2%, 한-페루 FTA 협정세율 0%

### ■ 우리나라 주요 커피수입국 커피단가 현황

국 가	금액(천 USD)	중량(톤)	단가(천 USD/톤)
전체	314,051	106,360	2.95
베트남	70,501	34,712	2.03
콜롬비아	47,972	13,549	3.54
페루	37,064	12,444	2.97

한-페루 FTA 제0901호의 커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다른 류에 속하는 커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한다. 그러나 제09류의 커피는 다른 류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제0901.1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생두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를 충족하므로, 페루의 수출자는 페루산 커피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제0901.12호 및 제0901.21호의 커피 역시 페루산 커피를 이용한다면 한-페루 FTA를 적용받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FTA 수입 기대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이하에서는 수입상위 30대 물품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금액은 높고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음으로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수입 상위 30대 품목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은 제6109호의 티셔츠와 제6110호의 저지, 카디건, 제8112호의 인뿔 등이 있다. 또한 활용률이 30%를 초과하는 품목이나,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서, 제0811호의 냉동과실 및 냉동견과류(61.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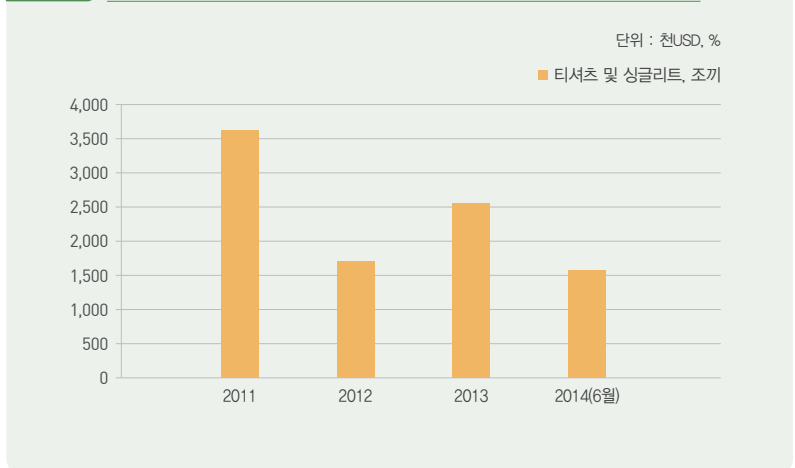
**1 티셔츠 (제6109호)****• 산업동향 : 일반 수입금액은 마이너스 추세**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30대 수입물품 중, FTA 활용률이 30%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6109호의 티셔츠가 있다. 티셔츠는 수입금액순 18번째 물품이며, 최근 3년간 총 수입금액 9백5십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5.3%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6109	티셔츠·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3,621	1,686	2,597	1,604	9,508	-15.3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2**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6109호에는 티셔츠가 분류되는데, 티셔츠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것으로서 가볍고, 오프닝이 없는 넥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소매에 단추 또는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을 말한다. 티셔츠는 날염하거나 광고 그림을 가진 것이 많으며 밑단은 감쳐져(hemmed)있다.



제6109호는 크게 면으로 만든 티셔츠 (제6109.10호)와 견이나 양모 및 기타 섬유로 만든 티셔츠(제6109.90호)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은 면제의 티셔츠가 해당된다.

• **FTA 활용금액 : 면제 티셔츠 FTA 활용금액의 증가**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티셔츠의 수입금액은 2011년 발효시 약 5만8천 달러에서 2013년에 9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상반기까지만 약70만 달러 수입하여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6109.10	면으로 만든 것	58	400	887	516	1,862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34	32	178	244
총합계		58	434	919	694	2,10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점차 증가하는 FTA 활용률**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티셔츠의 FTA활용률은 29.2%이며 이중에서 면으로 만든 것(제6109.10호)이 28.4%, 기타의 것으로 만든 것(제6109.90호)이 36.7%로 나타났다. FTA활용률은 2011년 발효 초기 4.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의 경우에는 43.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6109.10	면으로 만든 것	4.8	26.4	35.9	38.2	28.4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17.6	25.0	71.6	36.7
평균		4.4	25.4	35.4	43.4	29.2

자료 : 관세청 자료의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소결 : 증가하는 FTA 활용 티셔츠 수입에 대한 원산지 확인 필요

미국-페루의 무역촉진협정(TPA)이 2009년에 발효되어 보다 광범위한 의류상품이 페루와 미국 양국 간에 무관세로 통관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페루간의 협정에서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기 때문에 페루는 역외에서 섬유를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페루는 양질의 면 생산국으로서 원사, 원단 등 의류의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면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테리직물, 자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페루산의 고품종 면화는 고급의류에 사용되며 주로 수출용 의류에 사용되지만, 페루 내수용으로는 수입면 및 저가 원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페루산 섬유를 사용하는 수출용 고품질 의류는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섬유의 충분한 물량공급이 FTA 활용에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페루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으로서 TPA협정에 따른 쿼터 물량 충족에도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산 섬유물량 부족이 저조한 FTA활용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중국산이나 기타 남미산 원단을 사용한 비원산지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자는 페루산 원재료 확인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 2 인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112호)

### • 산업동향 : 페루에서 '13년 최초 수입된 인도 웨이스트와 스크랩

우리나라의 對페루 32번째 수입물품으로서 제8112호의 인도가 있다. 동 물품은 2011년 한-페루 FTA발효시 수입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1백4십만 달러, 2014년 상반기까지는 1백7십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다른 수입물품에 비하여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18.8%에 달하여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8112	인도의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1,465	1,741	3,206	-

자료 : 무역협회



제8112호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卑) 금속이 포함되는데, 페루로부터 수입 되는 물품은 제8112.92-5000호의 인듐 (Indium)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다.

인듐은 원자번호 49번으로서 희귀한 금속이다. 인듐은 현대 전자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금속으로서 전자기기의 평판소자에 사용되는 산화인듐주석의 원재료이다. 인듐 광석은 희귀하여 좀처럼 발굴되지 않으며, 주로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얻는데,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듐은 아연 잔유물로 추출되는 금속으로서 연하고 은색을 나타내며 내식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속을 도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비스머드, 납, 주석과 합금하여 외과용으로 사용되고, 구리 및 납과 합금하여 배어링용으로, 금과 합금하여 치과용으로도 사용된다.

• FTA 활용금액 : '14년도 상반기 수입금액이 '13년도 연간 수입금액 초과

제8112호의 수입은 모두 제8112.92호의 인듐으로서 총 71만 달러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수입은 전무하며, 2013년과 2014년에 약 34만 달러, 37만 달러 수입하였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FTA 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8112.12	베릴륨 과, 가루	-	-	-	-	-
8112.13	베릴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19	기타 베릴륨	-	-	-	-	-
8112.21	크로뮴 과, 가루	-	-	-	-	-
8112.22	크로뮴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29	기타 크로뮴	-	-	-	-	-
8112.51	탈륨 과, 가루	-	-	-	-	-
8112.52	탈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59	기타 탈륨	-	-	-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8112.92	기타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342	373	715
8112.99	기타	-	-	-	-	-
총합계		-	-	342	373	715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FTA 활용률 : FTA 활용률은 소폭 감소에 그침

제8112.92호의 인듐의 수입시 FTA를 적용한 비율은 총 22.3% 으로, 2013년 23.3%, 2014년 상반기 21.4%로 나타났다. 총 FTA 수입대상금액인 3백2십만 달러 중 71만 달러만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산지기준 불충족 또는 미활용 등의 이유로 특혜적용을 받지 않았다.

####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FTA 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8112.12	베릴륨 과, 가루	-	-	-	-	-
8112.13	베릴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19	기타 베릴륨	-	-	-	-	-
8112.21	크로뮴 과, 가루	-	-	-	-	-
8112.22	크로뮴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29	기타 크로뮴	-	-	-	-	-
8112.51	탈륨 과, 가루	-	-	-	-	-
8112.52	탈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59	기타 탈륨	-	-	-	-	-
8112.92	기타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23.3	21.4	22.3
8112.99	기타	-	-	-	-	-
평균		-	-	23.3	21.4	22.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원산지 확인 어려움에 따른 FTA 활용률의 저조

인듐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인 반도체와 TV, 가전제품 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금속이다. 그러나 생산이 쉽지 않고 공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스크랩이나 웨이스트에서 재활용을 통하여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듐 스크랩 수입국이면서 세계 3위의 인듐수출국이다. 즉, 우리나라는 인듐 스크랩을 수입하여 정제한 인듐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국가별 정제한 인듐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다.

■ 정제한 인듐 국가별 생산량

단위 : 톤, %

	2012	2013	비 중
중국	405	410	53.2
한국	165	150	19.5
일본	71	71	9.2
캐나다	62	65	8.4
벨기에	30	30	3.9
기타	25	25	3.2
러시아	13	13	1.7
페루	11	10	1.3
합계	782	770	100.0

자료 : USGS

인듐 웨이스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인듐제조 특성상 주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스크랩으로서 얻는 경우가 많다.

인듐의 저조한 FTA 활용률은 제품의 형상이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데에 있다. 다른 제품의 제조과정중에서 얻어지는 물품이므로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제조공정이나 가격, 품목번호 등의 확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자는 인듐의 수입시 수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도록 협조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정별로 규정된 완전생산기준(웨이스트·스크랩 등)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3 냉동망고(제0811호)**

• 산업동향 : FTA 발효 이후 수입 2배 이상 증가한 냉동망고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물품으로서 총 수입금액 5백만 달러의 냉동과실과 견과류는 26번째 수입물품이다. 2011년 30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142만 달러를 수입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약 2배가량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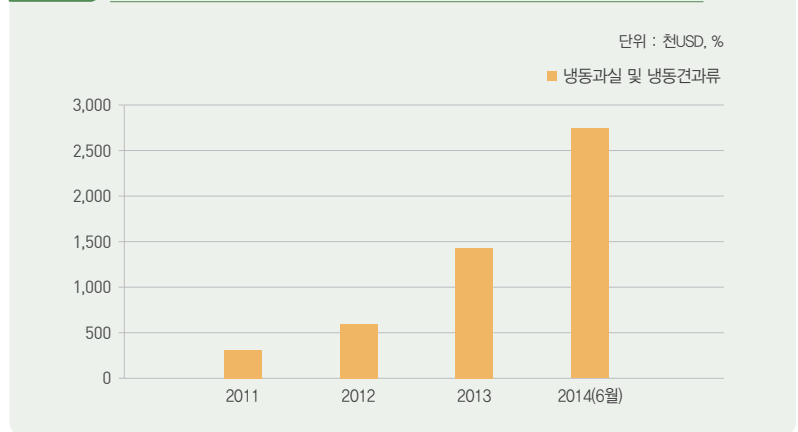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303	578	1,419	2,728	5,028	116.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3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0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가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신선한 과실로부터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과 일시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FTA 특혜를 받아 수입하는 제0811호의 과실은 냉동망고이다.

• **FTA 활용금액 : 2014년 상반기 FTA 활용금액은 2년 전의 10배**

우리나라의 제0811호 냉동과실의 FTA 수입금액은 지난 3년간 총 2백9십만 달러 수준이며 이 금액 중 2백2십만 달러는 2014년 상반기에만 수입된 금액이다. 반면, 2011년에는 수입이 없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도 합계 70만 달러 수준에 그친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FTA 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0811.10	초분류 딸기	-	-	-	-	-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등	-	-	-	-	-
0811.90	기타	0	221	507	2,236	2,963
총합계		0	221	507	2,236	2,96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큰 폭의 FTA 수입활용률 증가**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망고의 FTA활용률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1년에는 약 11만 달러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FTA활용은 전무하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81.9%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0811.10	초분류 딸기	-	-	-	-	-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등	-	-	-	-	-
0811.90	기타	0	38.2	35.7	81.9	61.3
평균		0	38.2	35.7	81.9	61.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관세인하로 인한 페루산 망고의 가격경쟁력 상승**

최근 국내 대형마트에서 망고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망고의 매출 순위는 11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으며 매출 신장률은 48%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색과일로 취급되던 것이 FTA로 인하여 대중화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과일이 되었고, 또한 주요 대체품목인 오렌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망고를 찾는 것이 국내 매출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오렌지의 경우 2013년 북미지역의 한파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물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루산 망고가 다른 FTA 협정에 비하여 협정세율이 낮은 것도 높은 수입증가율의 원인이 된다. 제0811.90-9000호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망고 수출국인 필리핀과 태국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30%인 반면, 페루는 6%로 세율차이가 크다. 기타 미국이 17.1%, EU가 15% (2014년 6월 이전기준), 칠레의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타 페루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망고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상 여러 가지 수입조건이 부과된다는 점도 페루산 망고와 기타 원산국 망고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 망고의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현황

국 가	주요수입조건
대만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한국 식물방역관의 현지검역 등
필리핀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6~47℃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태국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호주	등록된 한국 수출용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망고 생과실로서, 재배중 병해충 예찰 및 증열처리(47℃에서 15분간)되고,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확인된 화물이어야 함
파키스탄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는 온탕침지처리(48℃에서 60분 이상),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 검역 등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 04

한-페루 FTA  
향후 활용방안

지금까지 본 장에서 주요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한-페루의 FTA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MFN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10대 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의 경우, 수출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은 특정 산업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수출 FTA 활용률은 잡제품(2.9%)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산업군에서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 산업간 편차가 매우 커, 5개 산업군(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의 활용률이 90% 이상이나 3개의 산업군(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에서는 전혀 FTA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품목별 FTA 활용률의 경우, 오히려 수출물품의 FTA 활용도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페루 상위 30대 수출물품 중 9개 품목에 대해서만 FTA 수출이 있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상위 30대 수입물품 중 21개 품목에 대해서 FTA 수입이 있었다.

수출 상위 30대 품목 중 FTA를 활용한 9개 품목의 FTA 활용률은 대부분의 품목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률이 낮은 수출품목인 백신(13.4%)과 주사용 바늘(9.0%)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입 상위 30대 품목 중 FTA를 활용한 21개 품목에는 수입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서 석유가스 등(100%), 커피(99.4%) 조미오징어(91.1%) 등이 있으며, 수입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으로서 냉동망고(61.3%), 티셔츠(29.2%), 인뿔(22.3%) 등이 있다.

종합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FTA 활용금액은 크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다양한 품목에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품목은 기존 FTA 활용 업체의 활용률 증진보다는 신규 품목의 FTA 적용이 중요하며, 수입의 경우 새로운 물품의 FTA 적용보다는 기존 수입 FTA 활용물품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레저용품의 FTA 활용 동향

권민경 주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01

### 분석배경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캠핑 붐' 등 여가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레저용품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60만 명으로 집계된 캠핑인구는 지난해 130만 명으로 늘어 올해 200만~3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레저용품의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다. 레저용품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미국·유럽 등 고가 제품국과 중국·동남아시아 등 저가 제품국으로 구분된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레저용품의 시장규모가 확대 된 것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레저용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수입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물품의 협정별 수입금액·비중 및 FTA 활용 동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레저용품 중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수입통계는 HS 품목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하되 품명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으로 무역동향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별·품목별 수출입분류 체계인 MPI 코드를 활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은 골프공, 골프채, 낚시 릴, 등산화, 자전거, 자전거 부품, 텐트 및 캠핑용품 등 총 7개 품목이다.

분석 시기는 2014년 10월 말까지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의 수입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 전년 동기 대비 분석이 가능하도록 2012년 및 2013년의 수입 금액도 10월 말까지의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단위 : 천 달러

품명	HS code	MTI code	2014 총 수입금액
골프채	9506.31, 9506.39	541410	242,564
자전거	8712.00, 8713.10 8713.90	743300	202,088
텐트 및 캠핑용품	6306.12, 6306.19 6306.22, 6306.29 6306.30, 6306.40 6306.90	449007	89,397
자전거 부품	8714.20, 8714.91 8714.92, 8714.93 8714.94, 8714.95 8714.96, 8714.99	743400	111,569
골프공	9506.32	541420	52,505
등산화	6403.91, 6403.99	512100	38,180
낚시 릴	9507.10, 9507.20	542110	16,834

## 02 레저용품의 FTA 수입활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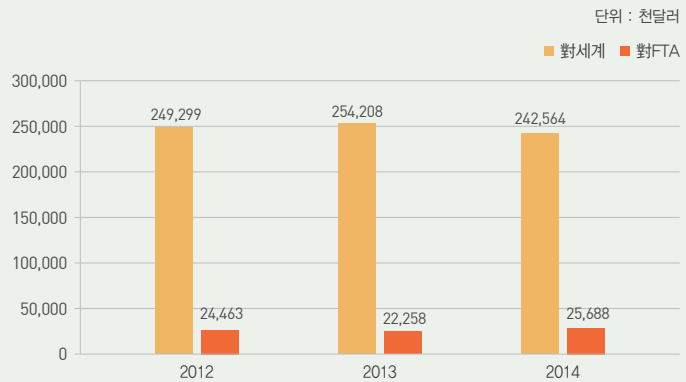
### 골프채

#### • 총 수입

2014년 골프채의 총수입은 2억 4천 2백만달러,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천 5백만 달러이다. 최근 3년 평균수입 금액은 2억 4천 9백만 달러로 레저용품 중에서 수입규모가 가장 크다. 골프채의 경우 고급 골프채와 저가의 골프채로 구분되어 수입되는데 일반적으로 골프채 수입의 60%는 고가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다.

골프채는 최근 3년간 수입변동이 크지 않고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내외로 그 비중이 적은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골프채의 주요수입국이 일본과 중국으로 비체약국인 일본산 수입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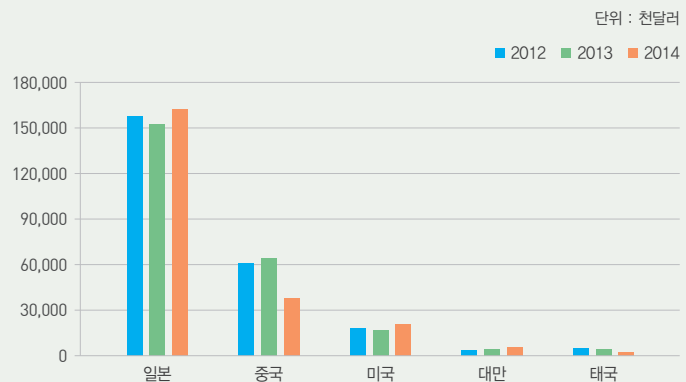
대체로 일본산은 고가의 완성품이 수입되고 중국산의 경우 저가제품과 미완성 상태의 골프채가 많이 수입되고 있어 제품군에 뚜렷한 구분이 있다. 최근 실질적 타격을 이룬 한-중 FTA가 발효되면 현재의 골프채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특혜관세 혜택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골프채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국가별 골프채 수입실적은 2014년 기준 일본 1억 6천 9백만 달러, 중국 4천 2백만 달러, 미국 2천 1백만 달러이다.

골프채 수입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은 올해 전년대비 10%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수입규모 2위인 중국은 34% 감소하였다. 한편 FTA 상대국인 미국과 태국산 골프채는 2014년 전년대비 각각 21%증가, 37% 감소 하였다.

그림 2 골프채 국가별 수입동향

자료 : KITA

• FTA 수입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골프채의 동향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골프채의 총수입에서 FTA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FTA 상대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골프채는 미국산과 아세안산이 주를 이루고 EU로 부터의 수입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2014년 기준 FTA 특혜수입은 미국산은 1천 7백만 달러, 아세안산은 1.2백만 달러 수입되었다. 수입실적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2천 4백만 달러로 2013년 소폭 감소하였을 뿐 평균 수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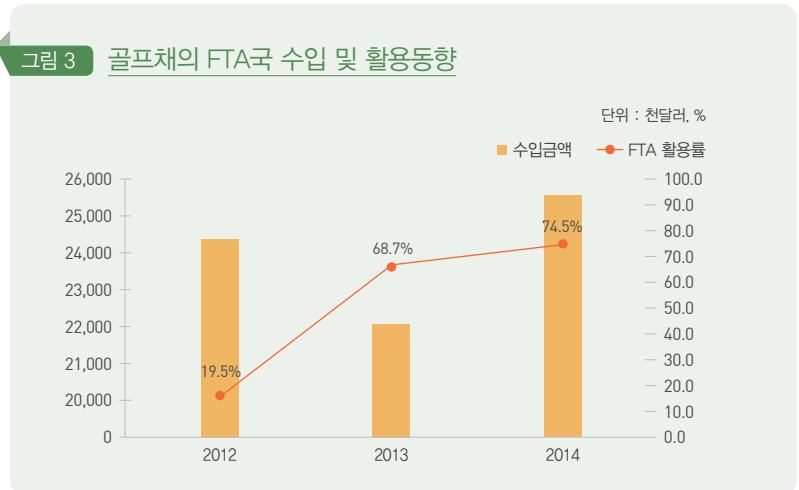
지난 3년동안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실적은 변동이 적은 반면에 FTA 활용률은 2012년 19.5% → 2013년 68.7% → 2014년 74.5%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미 FTA 발효 1년 차인 2012년에는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이행연차를 거듭하면서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단위 : 천 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24,463	4,645	19.5%	22,258	14,556	68.7%	25,688	18,483	74.5%
미국	18,150	2,319	13.2%	17,705	12,597	75.6%	21,536	17,213	83.2%
아세안	5,822	2,313	39.7%	4,333	1,943	44.9%	3,639	1,229	33.8%
EU	455	13	2.9%	182	15	8.5%	481	41	8.6%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3 골프채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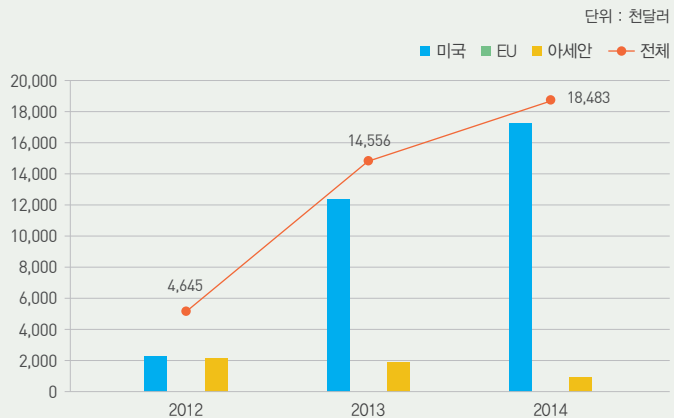


골프채의 FTA 특혜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2백만 달러, 2013년 1천 2백만 달러, 2014년 1천 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013년 443%, 2014년 37%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의 경우 특혜적용 실적이 2012년 2.3백만 달러, 2013년 1.9백만 달러, 2014년 1.2백만 달러로, 2013년 16%, 2014년 37%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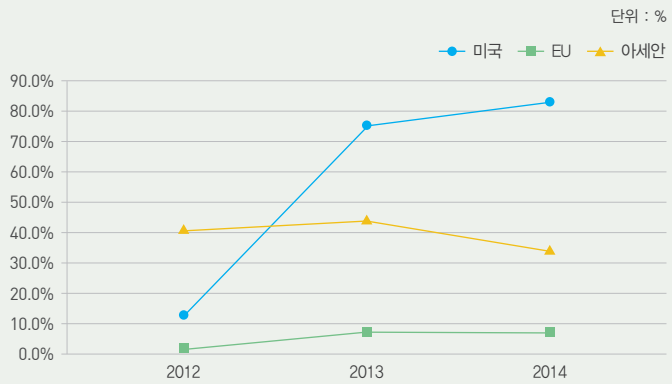
미국산 골프채의 경우 FTA 발효이후부터 수입증가와 더불어 FTA 활용률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고급 골프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산은 한-미 FTA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향후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골프채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협정별로 FTA 활용률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활용률은 (2012년 13%, 2013년 76%, 2014년 83%)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한-EU FTA는 수입금액과 활용률이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세안의 경우 FTA 활용률이 3년 평균 40%수준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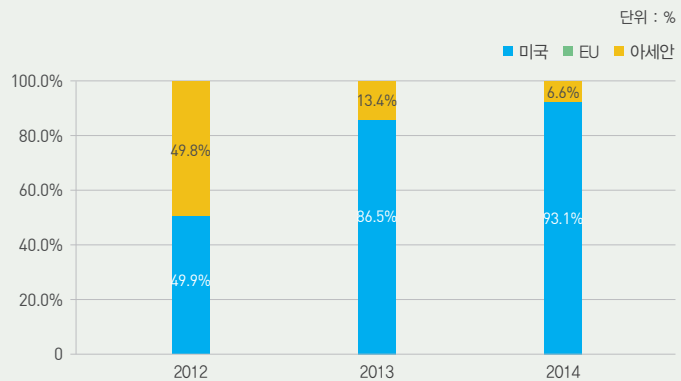
그림 5 골프채의 FTA 활용률



골프채 FTA 특혜수입의 협정별 분포는 미국과 아세안이 양분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 이행 1년차에는 미국과 아세안이 50%의 비중으로 차지하였으나 2013년 87%, 2014년 93%으로 미국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아세안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산 부품의 유입이 많은 아세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 골프채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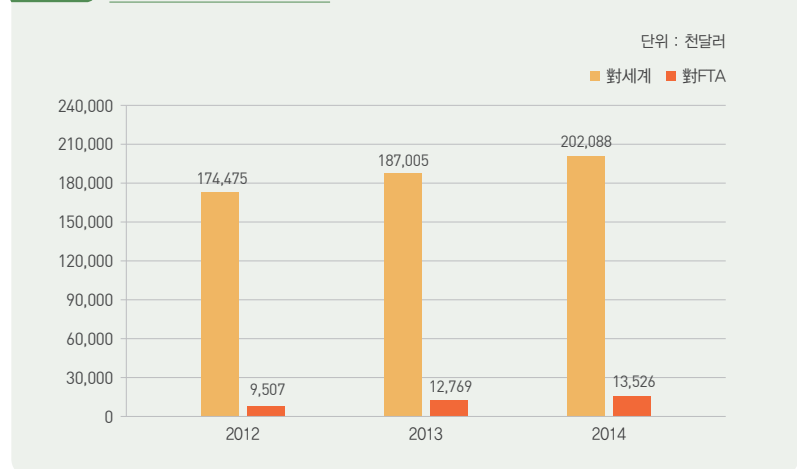
### • 총 수입

국내 자전거 수입은 1994년까지만 해도 1년간 10만대 미만이던 수입물량이 1995년부터 14만대로 늘어났다. 이후 2001년까지 연간 10~50만대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2002년부터 연간 1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른바 ‘바이크 붐’이 일면서 최근에는 자전거 수입량도 170~180만대로 증가하였지만 무엇보다 자전거 매니아층의 소비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자전거 수입금액은 2009년 1억 4천 달러에서 2012년 1억 7천 달러로 매년 연평균 7%이상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말까지 집계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수입금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중 FTA 상대국은 10%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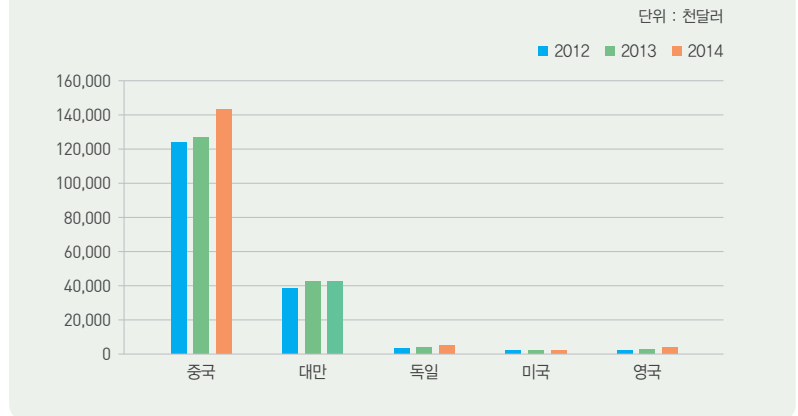
그림 7 자전거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금액 및 물량 기준 모두 중국이 압도적이다. 중국산 자전거 수입은 2012년 1억 2천 6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4천 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고가 자전거의 경우 주로 대만, 독일, 영국산으로 중국산의 뒤를 잇고 있다.

그림 8 자전거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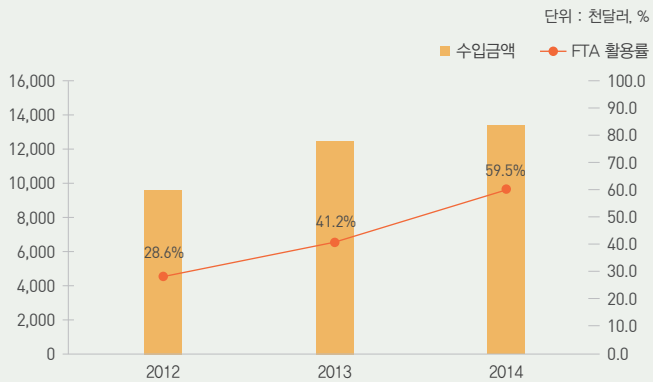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9,507	1,821	28.6%	12,769	3,409	41.2%	13,526	6,270	59.5%
EFTA	8	6	100%*	149	0	0%	60	3	11.3%
EU	6,713	1,764	32.0%	8,923	3,282	44.0%	11,046	5,896	63.7%
미국	1,850	51	6.0%	1,634	127	18.0%	2,128	370	29.7%
아세안	933	0	0%	2,060	0	0%	289	0	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FTA활용률은 FTA 특혜적용수입금액 / FTA 특혜대상품목 수입금액 × 100으로 총수입실적과 FTA 특혜대상 수입실적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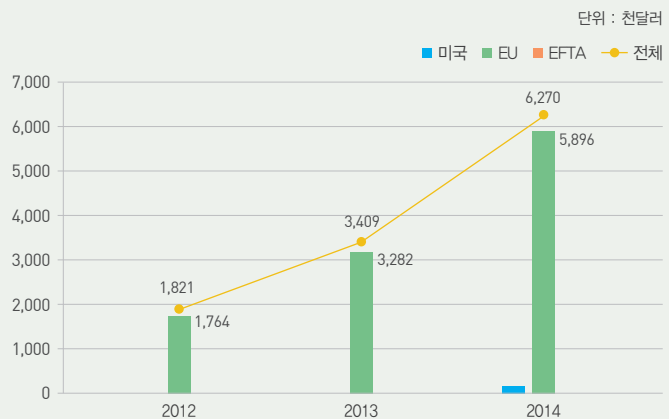
자전거의 FTA 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9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FTA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3년 1천 2백만 달러, 2014년 1천 3백만 달러이다. 증가율은 2013년 전년대비 35%증가하였고 올해도 소폭(5%) 상승하였다.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FTA 활용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 2012년 29%에 불과하던 FTA 활용률은 올해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9 자전거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협정별 주요 특혜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EFTA와 미국은 수입규모가 미미하고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EU산의 특혜 수입은 2012년 1.7백만 달러, 2013년 3.2백만 달러, 2014년 5.8백만 달러로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가자전거의 주요 수입처인 독일 및 영국산 자전거 구매가 늘어나면서 수입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자전거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각 협정별 활용률을 살펴보면 특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산의 경우 협정이 발효한 당해 연도인 2012년은 32%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활용률이 증가하여 올해는 6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32% → 44% → 64%) 미국역시 수입규모는 EU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매년 활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6% → 18% → 30%)

FTA 특혜를 받아 수입한 자전거의 협정별 분포는 EU가 평균 95%이상으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TA 특혜를 적용받은 대부분의 자전거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자전거의 FTA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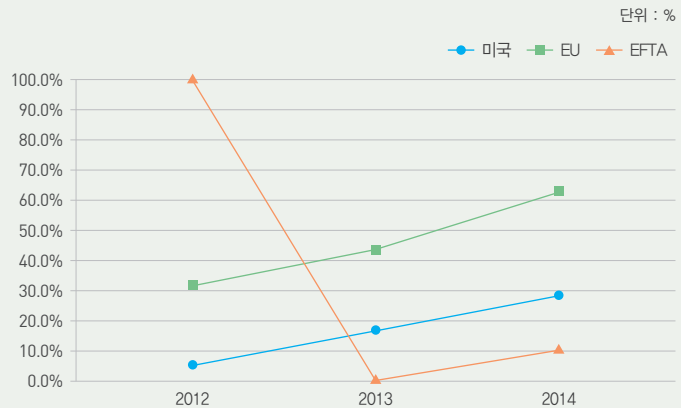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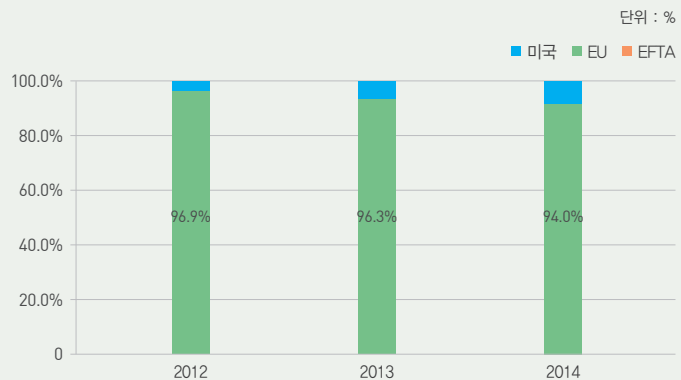


그림 12 자전거의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 텐트 및 캠핑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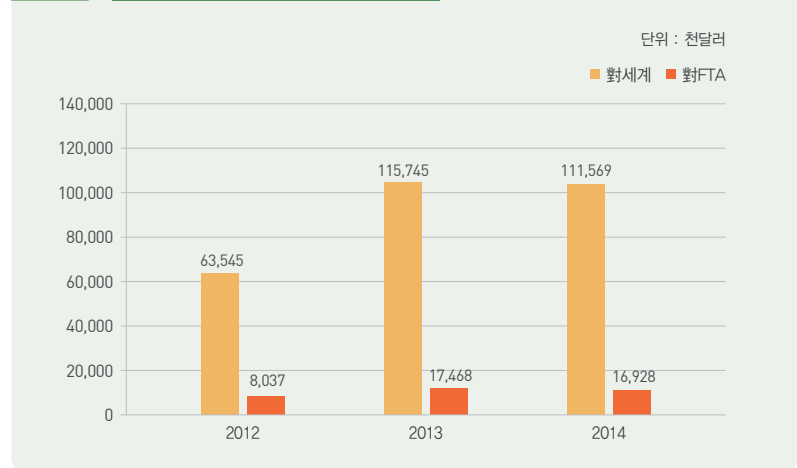
### • 총 수입

최근 몇 년간 캠핑 열풍이 불면서 국내 캠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캠핑시장은 매년 1000억 원 가량씩 매출이 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6000~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캠핑인구도 약 300만 명에 달해 캠핑용품은 2012년 이미 골프용품을 제치고 등산용품에 이어 레저용품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텐트를 중심으로 하는 캠핑용품의 다양한 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텐트 및 캠핑용품의 수입동향을 보면 2012년 6천 3백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1천 6백만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올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 역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텐트 등의 수입의존 심화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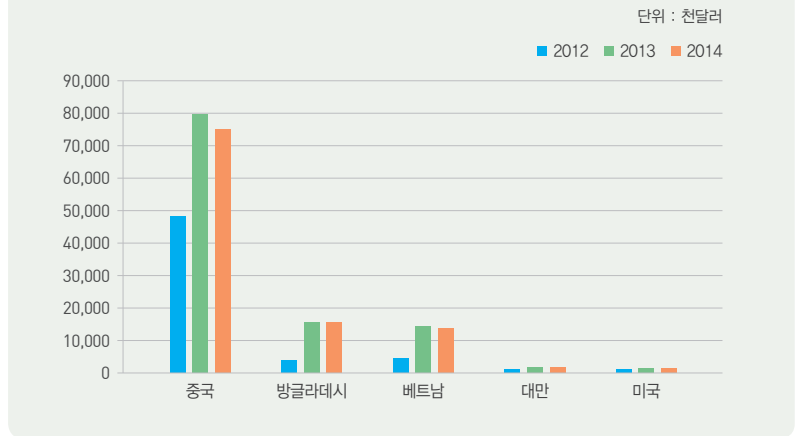
그림 13 텐트 및 캠핑용품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텐트 등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대만, 미국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2년 대비 2014년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부터 각각 177%, 155% 수입이 급증한 변화가 포착 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2년 4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 6백만 달러, 베트남 역시 2012년 5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 4백만 달러로 수입실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14 텐트 및 캠핑용품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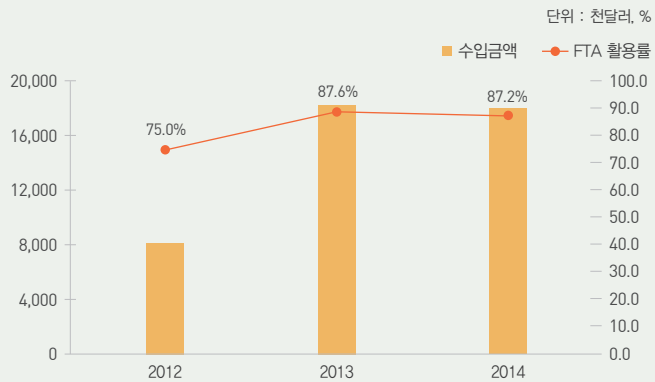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8,037	5,932	75.0%	17,468	15,102	87.6%	16,928	14,645	87.2%
미국	912	295	37.0%	1,368	558	48.1%	1,284	531	45.7%
EU	1,451	524	36.4%	1,699	784	46.7%	1,518	705	46.7%
아세안	5,636	5,104	90.6%	14,381	13,760	95.7%	14,085	13,385	95.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텐트의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수입규모가 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현재 2배 이상 증가한 1천 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FTA 활용률도 75% → 87%로 10% P.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5 텐트 및 캠핑용품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텐트 등의 FTA 특혜수입은 2013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8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1천7백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협정별로는 EU, 미국, 아세안 중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아세안의 경우 2012년 5백만 달러의 특혜수입 실적이 있었으나 2013년 폭증하여 약 1천 4백만 달러의 특혜수입 증가를 보였다.

협정별 FTA 활용률도 미국 및 EU는 3년 평균 50%이하의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은 평균 90% 이상의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텐트 등은 대부분 FTA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6 텐트 및 캠핑용품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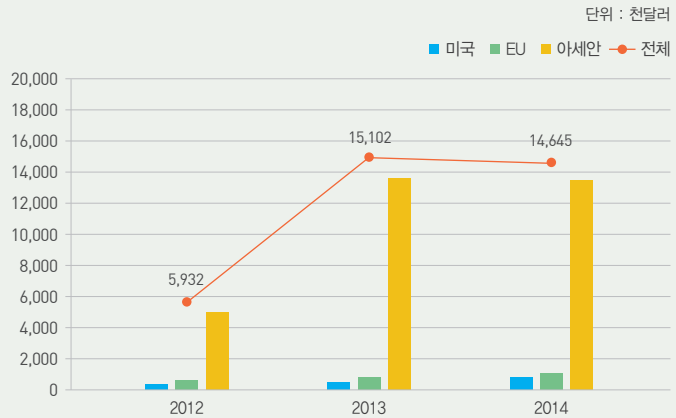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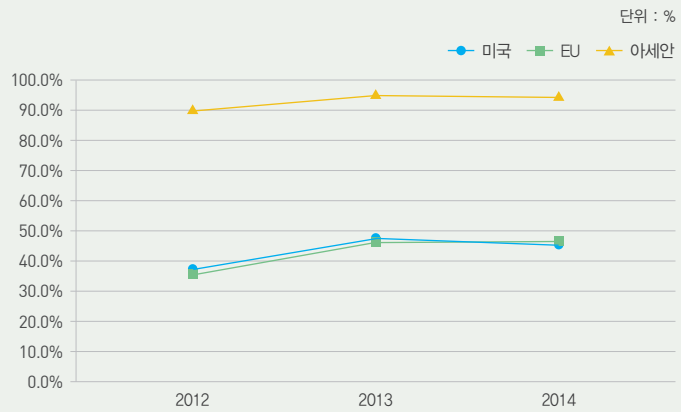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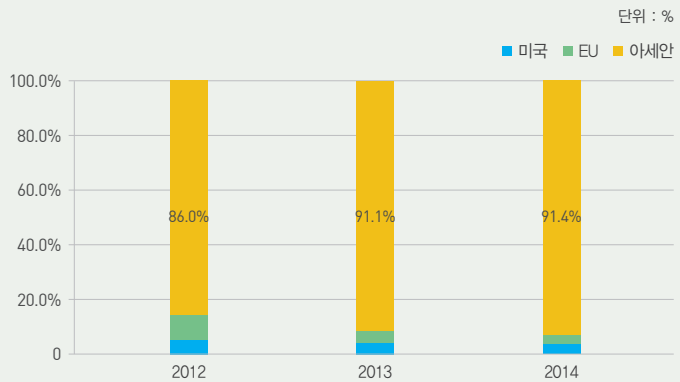
그림 17 텐트 및 캠핑용품의 FTA 활용률



FTA 특혜를 받아 수입된 텐트 등은 아세안 협정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국 및 EU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아세안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8 텐트 및 캠핑용품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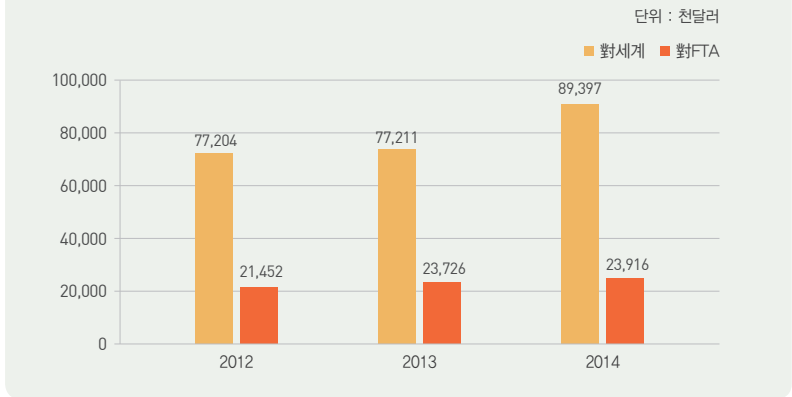
## 자전거 부품

### • 총 수입

국내 자전거 판매량은 2008년 180만대 수준에서 2012년 250만대를 넘어서며 4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고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전거 대수는 1,000대 안팎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부품업체는 2003년 14개에서 2005년 10개, 2007년 3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70여 개 부품업체가 있던 1980년대와는 대조가 되는 실정이다. 결국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의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완성품인 자전거는 국내 주요 생산업체의 판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자전거 부품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자전거 부품은 레저용품 중에서 수입규모 4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년보다 16% 증가한 8천9백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자전거 부품의 FTA 국가로부터 수입은 총수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2천3백만 달러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9 자전거 부품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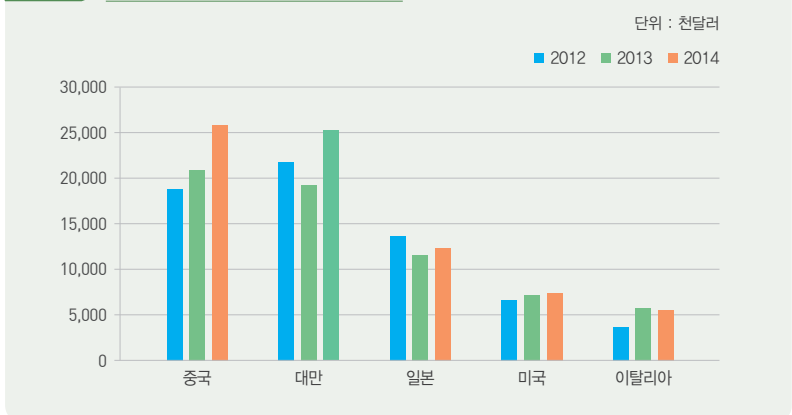


자료 : KITA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난다. 2014년 총수입 실적 8천 9백만 달러 중 중국산은 2천 6백만 달러, 대만산은 2천 5백만 달러이다. 2014년 기준 총수입 대비 수입비중이 중국산 30%, 대만산 28%로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본산의 수입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FTA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적은 폭이지만 꾸준히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20 자전거 부품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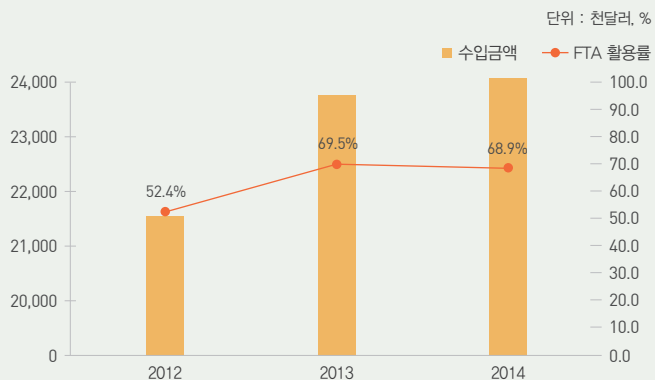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21,452	9,019	52.4%	23,726	13,729	69.5%	23,916	12,829	68.9%
EU	9,405	3,982	45.7%	11,368	6,978	64.4%	10,627	5,835	58.1%
미국	7,613	4,349	60.7%	8,385	6,312	80.5%	8,555	6,780	86.1%
아세안	3,107	0	0%	2,901	0	0%	3,998	0	0%
EFTA	764	561	73.5%	442	314	71.2%	599	169	28.1%
싱가포르	555	127	22.9%	557	58	10.4%	125	38	34.3%
인도	8	0	0%	9	2	27.9%	8	4	51.0%
터키	0	0	0%	64	64	100%	3	3	10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자전거 부품의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2천 1백만 달러에서 2013년 2천 3백만 달러로 11% 증가하고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다. 연차별 FTA 활용률은 2012년 52%, 2013년 70%, 2014년 69%로 2012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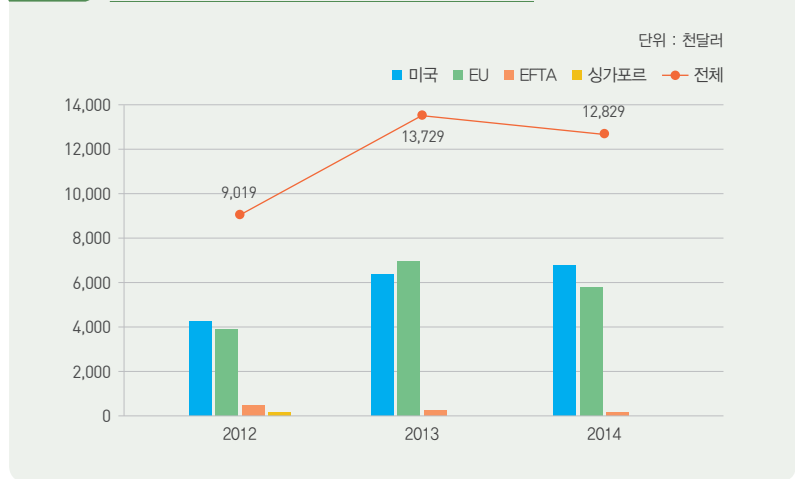
다른 레저용품의 경우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대다수 미국, 아세안, EU 협정으로 한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자전거 부품의 경우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EFTA, 싱가포르, 인도, 터키 등 다양한 협정상대국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1 자전거 부품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협정별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EU와 미국산이 전체 특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산은 2012년 3,9백만 달러에서 2014년 5,8백만 달러, 미국산은 2012년 4.3백만 달러에서 2014년 6.8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협정별 FTA 활용률 검토결과, 수입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2012년 61%에서 2014년 86%로 계속하여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모 2위인 EU의 경우 미국보다는 다소 낮은 활용수준으로 평균 60% 내외의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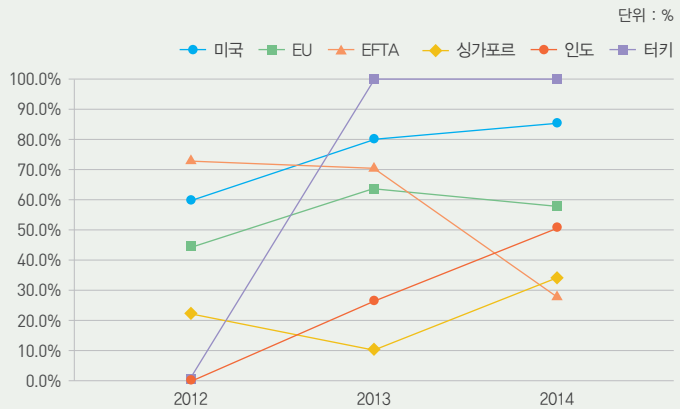
특징적인 것은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한 자전거 부품의 수입규모가 3위에 달하는데 단 한건의 FTA 활용 실적이 없다는 점이다. 아세안으로 부터 연평균 3백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지만 최근 3년 모두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협정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아세안의 특혜적용이 저조한 이유는, 동남아의 경우 대체로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역외산 재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요 수입국 외에 EFTA, 싱가포르, 인도, 터키로부터도 소규모 수입실적이 존재하는데 EFTA의 경우 2014년 FTA 활용률이 전년의 71%에서 2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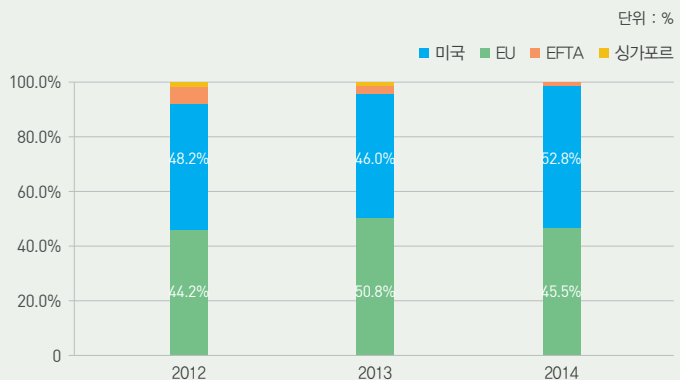
급감하였고, 터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매우작지만 FTA 활용률은 100%에 달하는 특이점이 있다.

그림 23 자전거 부품의 FTA 활용률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FTA 수입 비중은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로 양 협정의 비중은 큰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각각 50% 내외로 양분되어 있다. 다만 2012년에는 EFTA 등 기타 협정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고 2014년에는 미국과 EU로 부터의 특혜수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24 자전거 부품의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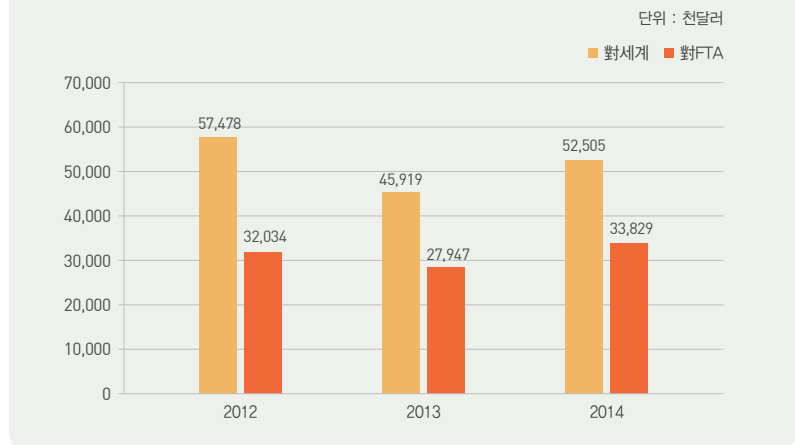
## 골프공

### • 총 수입

최근 3년간 골프공 평균 수입금액은 5천 1백만 달러이다. 2013년 4천 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12%) 하였다가 올해 25% 증가한 5천 2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실적은 2014년 현재 약 3천 4백만 달러로 총수입 실적 5천 2백만 달러의 64%를 차지한다.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3천2백만 달러, 2013년 2천8백만 달러, 2014년 3천 4백만 달러로 2013년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2014년 21%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림 25 골프공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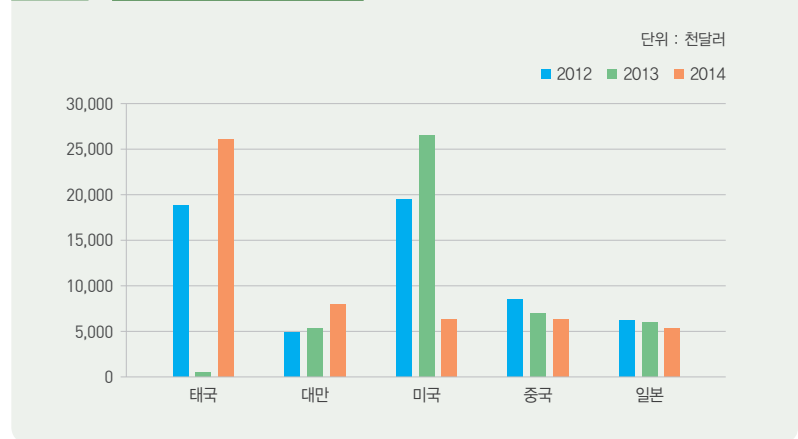
자료 : KITA

골프공 주요 수입국은 태국,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난다. 2012년과 2013년 미국산의 수입실적이 각각 2천만 달러, 2천 7백만 달러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였다. 그러나 태국산 수입실적이 2014년 2천 6백만 달러로 폭증 하면서 2014년 총수입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태국으로 나타난다.

태국산 골프공은 2012년 1천 8백만 달러에서 2013년 7십만 달러로 96% 수입금감 하였으나 2014년 2천 6백만 달러로 3600%이상 증가하면서 비정상적 수입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태국으로 부터의 수입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대만,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26 골프공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골프공이 수입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달러

국가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FTA 전체	32,034	9,657	30.2%	27,947	5,330	19.1%	33,829	25,798	76.3%
미국	13,015	5,473	42.1%	26,399	3,872	14.7%	6,528	5,253	80.6%
EU	6	-	5.9%	22	1	3.0%	13	3	22.0%
아세안	19,008	4,183	22.0%	1,516	1,458	96.0%	27,281	20,542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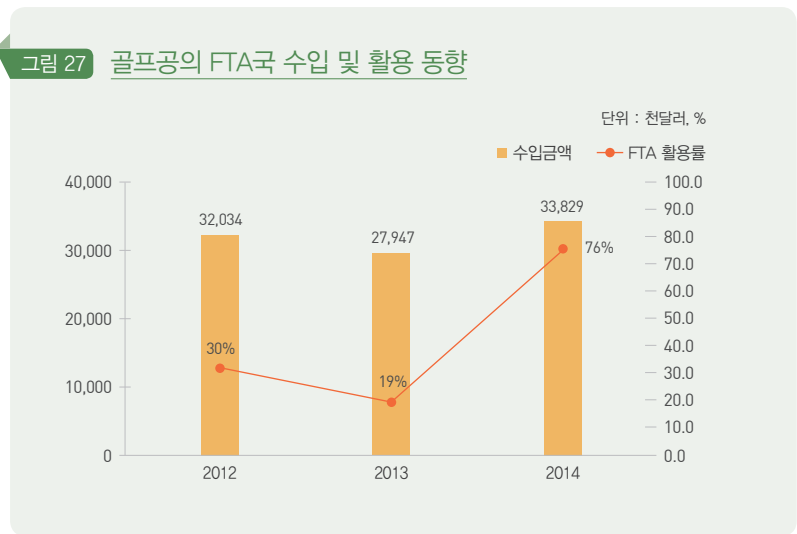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3천 2백만 달러, 2013년 2천 8백만 달러, 2014년 3천 4백만 달러 수입하였다. 수입금액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FTA 활용률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30%), 2013년(19%) 모두 FTA 활용률이 50%

미만이었음에 반해 올해 76%로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골프공의 수입이 큰 폭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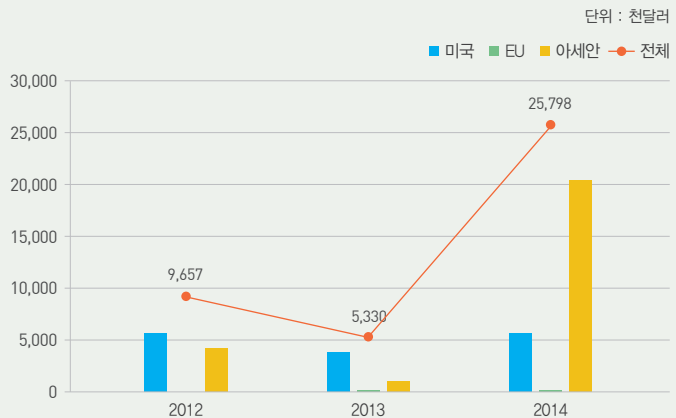
이는 2014년 수입국 변화와 한-아세안 FTA 활용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미국산 골프공의 수입실적이 높았으나 올해 태국산 수입이 전년대비 폭증하였다. 더불어 태국산 골프공의 대부분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으면서 FTA 활용률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림 27 골프공의 FTA국 수입 및 활용 동향



레저용품 FTA 특혜수입은 미국, EU,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골프공의 경우 미국과 아세안이 주를 이룬다. 종래 EU산의 특혜수입은 미미하고 미국과 아세안의 FTA 특혜수입이 평균 5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 아세안의 FTA 특혜수입이 총수입실적과 마찬가지로 2013년(1,5백만 달러), 2014년(2천 1백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10% 폭증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28 골프공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골프공의 연도별 · 협정별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대체로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FTA 이행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FTA 활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FTA 활용에서 미국과 아세안이 반비례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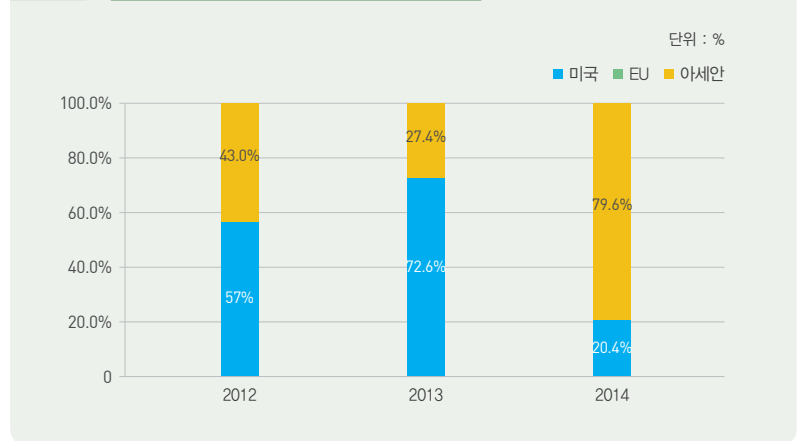
미국산 골프공의 3년간 수입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총수입이 2천 6백만 달러로 이 중에서 실제 FTA 특혜를 받은 수입금액은 3백 8십만 달러, 총수입의 약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FTA 활용률은 15%로 낮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때 FTA 특혜수입이 가능한 골프공의 다수는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을 이유로 FTA를 활용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아세안 원산지의 골프공은 2013년 수입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지만 총수입실적 1.5백만 달러대비 특혜적용 실적 1.4백만 달러로 FTA 활용률은 9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후 올해 태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규모가 폭증하였는데 FTA 활용률은 75%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

미국산과 아세안산 골프공의 2013~2014년 수입실적 및 FTA 활용률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띠는 것은 FTA 이행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FTA 이행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FTA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골프공은 어느 협정에서 가장 많이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아 수입되었을까? 3년간의 수입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은 미국(57%)·아세안(4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2013년과 2014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3년은 미국(73%), 아세안(27%)로 미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14년은 미국(20%), 아세안(80%)로 아세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29 골프공의 FTA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 등산화

### •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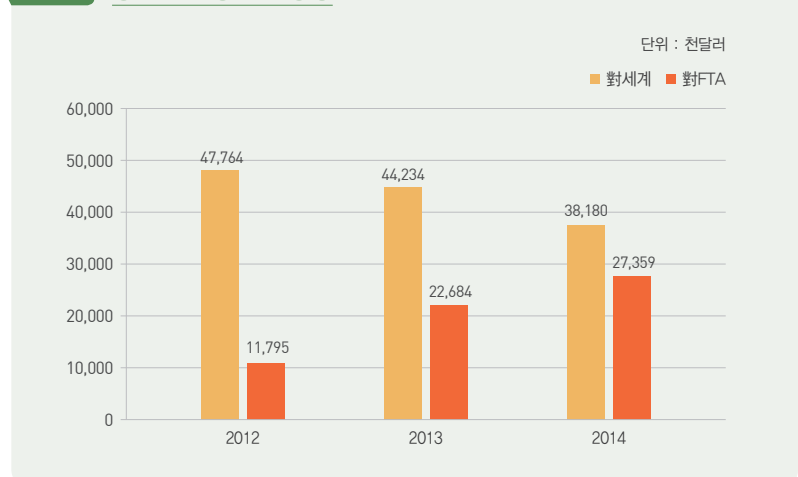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가죽·신발’ 시장 규모가 2009년 4,805백만 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0년 7,005백만 달러에서 2012년 8,400백만달러를 넘어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성장세를 보이던 아웃도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올해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삼성패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웃도어 시장 규모를 지난해 6조 9000억 원보다 16% 증가한 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의 25% 성장률에 비교하면 9% 줄어든 수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시장포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트레킹 등산화에서 하이킹이라는 신개념 초경량 등산화를 선보이며 등산화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등산화의 수입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4천 8백만 달러에서 2014년 3천 8백만 달러로 지속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반대로 2012년 1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입규모가 올해 2천 7백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등산화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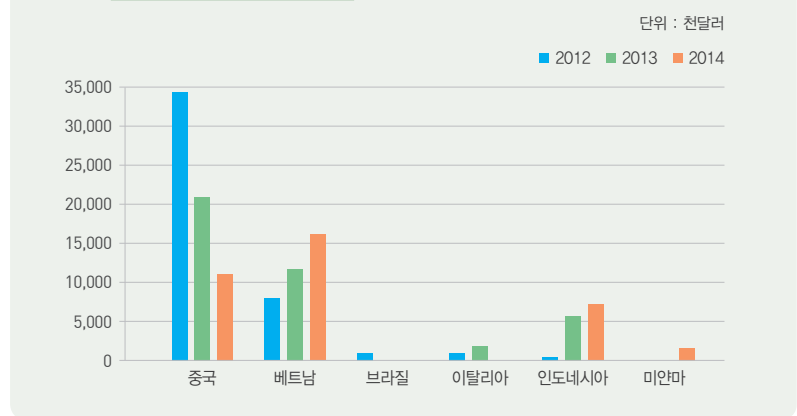
자료 : KITA

등산화의 주요 수입국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등산화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검토해 보자면 2012년 등산화 수입의 7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그 비중이 줄어 올해 중국산 등산화의 비중은 29%에 그쳤다. 반면 한-아세안 FTA 협정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올해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수입변화는 중국의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발제조업 인건비는 2003년 대비 약 3.5배 인상되었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30%상승하여 중국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신발업협회 관련조사 결과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발산업이 중국의 수주물량 30%를 잠식했고, 전체적으로 중국신발 공장 물량의 40%가 동남아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등산화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등산화의 FTA 수입동향을 종합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등산화는 다른 레저용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FTA 활용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 중심 생산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중국산 대신 동남아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아 수입된 것이 증가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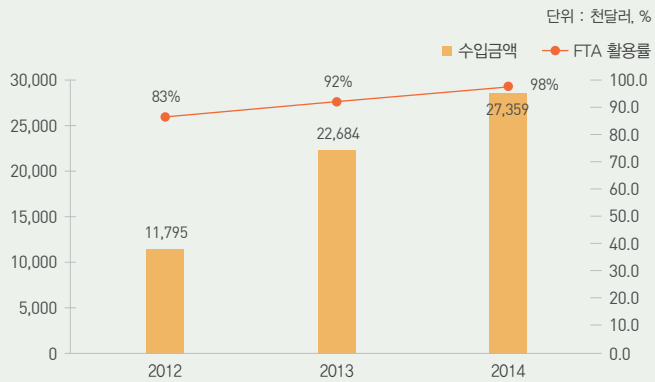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11,795	9,839	83.0%	22,684	20,842	92.0%	27,359	26,734	98.0%
미국	225	163	72.5%	545	494	90.7%	47	36	75.9%
EU	2,409	1,735	72.0%	3,703	2,368	63.9%	1,545	1,079	69.9%
아세안	9,160	7,942	86.7%	18,435	17,979	97.5%	25,766	25,618	99.4%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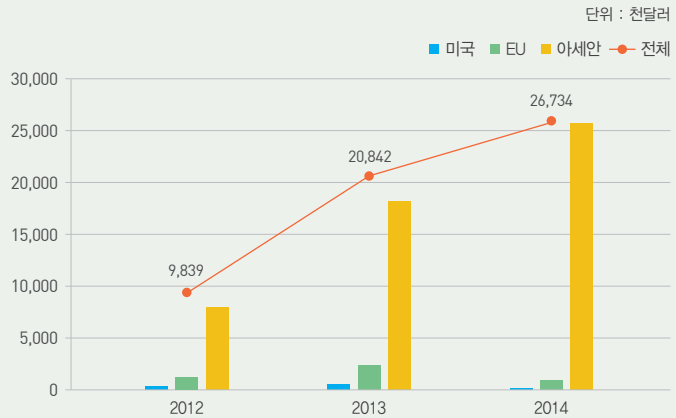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등산화 수입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천2백만 달러, 2013년 2천 3백만 달러, 2014년 2천 7백만 달러로 2013년 전년대비 92% 증가한 것에 이어 올해 역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연도별로 FTA 활용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98%에 달하는 FTA 활용률을 보여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산화는 사실상 대부분 FTA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등산화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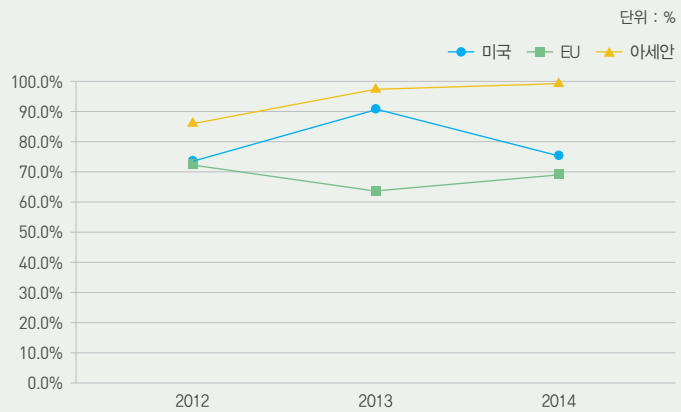
협정별로 FTA 특혜수입 현황을 검토한 결과 등산화는 한-아세안 협정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총 특혜수입 실적 2천 7백만 달러 중에서 아세안 특혜수입 규모가 2천 6백만 달러로 90%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같은 한-아세안 FTA 협정국에서 등산화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은 FTA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3 등산화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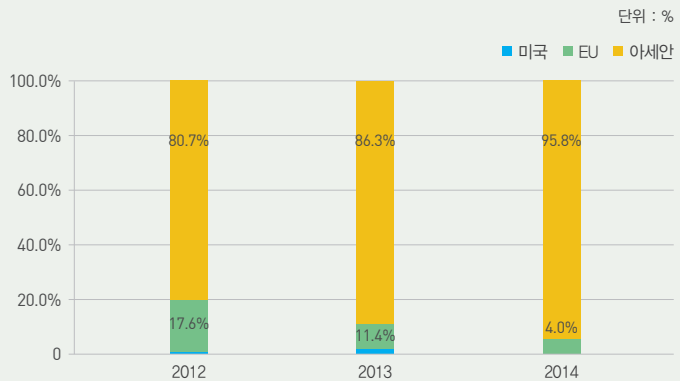
또한 등산화는 다른 레저용품들과 달리 연도별·협정별 FTA 활용수준이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평균 80%이상, EU는 평균 60%이상, 아세안을 평균 90%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4 등산화의 FTA 활용률



등산화의 협정별 FTA 수입 분포는 2012년 아세안(81%), EU(18%)에서 2014년 아세안(96%), EU(4%)로 변동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웃도어 상품, 특히 등산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 신발류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수입에 의존 하였던 고성능 제품들이 국내 제품으로 대체되었고, 중저가의 제품군 및 동남아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등산화를 수입함에 따라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등산화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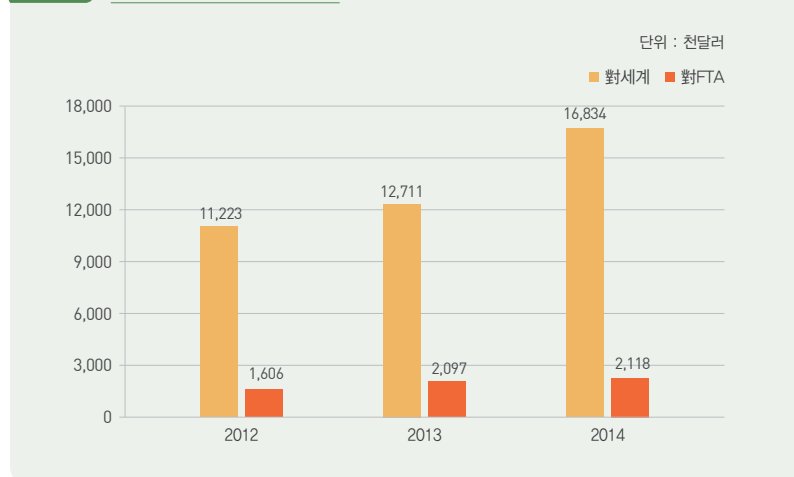
## 낚시 릴

### • 총 수입

최근 중장년층의 취미활동으로 인식되던 낚시가 20대까지 확대 되면서 낚시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올 추석을 전후하여 온라인 마켓을 통한 낚시용품 구매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 기간 동안 40~50대의 낚시용품 구매는 70% 증가한 것에 비하여 20대의 낚시용품 구매는 13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엔저 현상에 따라 주요 수입국인 일본산 낚시 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이후 낚시 릴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1천 1백만 달러, 2013년 1천 3백만 달러, 2014년 1천 7백만 달러로 3년 평균 1천 4백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올해는 전년대비 32%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2012년(1.6백만 달러), 2013년 (2백만 달러), 2014년(2.1백만 달러)로 2013년은 전년대비 30%증가 하였고 올해는 1%증가 수준에 그쳤다.

그림 36 낚시 릴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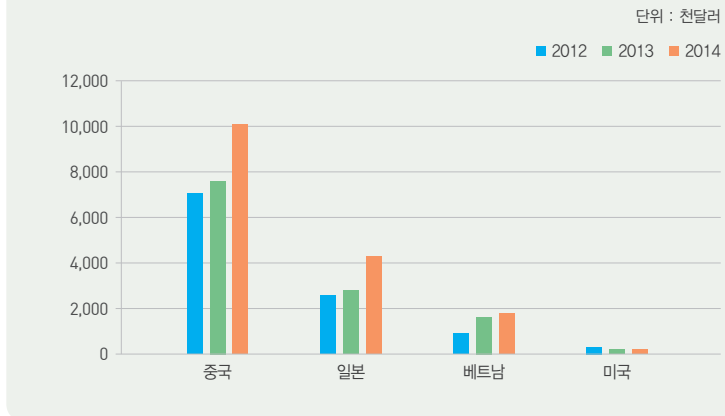
낚시 릴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비중이 작다.

주요수입국인 중국산과 일본산은 매년 수입금액도 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7.8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9%, 일본은 2013년 2.7백만 달러에서 2014년 4.2백만 달러로 52% 수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은 수입 3위국가로 중국과 일본보다 비중이 작지만 꾸준히 그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9십만 달러)에서 2013년 1.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8%증가하여 중국 및 일본과 수입증가 연도에 대비를 보인다.



그림 37 낙시 릴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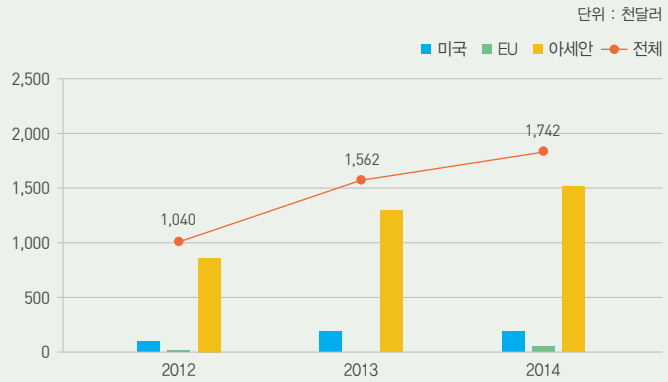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FTA 전체	1,606	1,040	65.0%	2,097	1,562	84.0%	2,118	1,742	83.0%
EU	9	3	32.0%	10	-	0.0%	40	30	77.4%
미국	433	157	36.4%	350	219	63.4%	375	209	56.7%
아세안	1,164	881	75.7%	1,736	1,343	89.3%	1,703	1,503	89.2%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FTA국가로 부터의 낙시 릴 수입실적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1.6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4년 2.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 수입 낙시 릴에 대한 FTA 활용률도 65% → 84% → 83%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

낙시 릴의 주요 특혜 수입 협정은 미국과 아세안으로 아세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과 EU의 FTA 활용규모는 미미한 반면 아세안의 특혜수입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아세안산 낙시 릴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14년 FTA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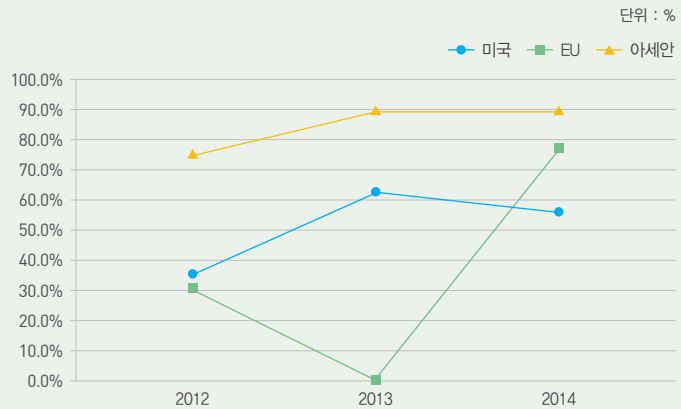
그림 38 낚시 릴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낚시 릴의 FTA 활용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매년 모든 협정의 FTA활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수입국인 미국은(36% → 63% → 57%), 아세안은 (76% → 89% → 89%)이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FTA 이행 환경이 정착되고 기업의 활용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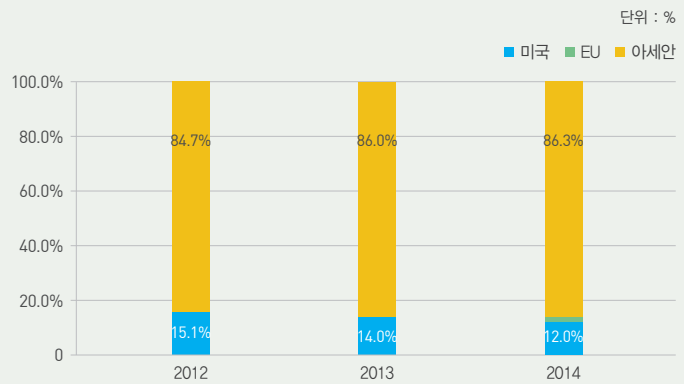
또한 아세안의 FTA 활용도가 90%에 육박하는 안정적 모습을 띠는 것과 동시에 2013년 단 한건의 FTA 특혜적용도 받지 않았던 EU 협정이 올해 77%의 활용률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9 낚시 릴의 FTA 활용률



FTA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협정은 아세안으로 평균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낚시 릴의 주요수입국가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실질적 수입 국가는 베트남이다. 2014년 베트남산 총수입실적이 1.8백만 달러로 2014년 한-아세안 특혜적용실적이 1.5백만 달러인 점을 감안 할 때 베트남산 대부분이 FTA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0 낚시 릴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 한-EU FTA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sup>1)</sup>

한상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 01 들어가는 말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을 체결하게 되면 수출입기업들로서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이 확보되는 토대가 되며,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더라도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요건충족 및 원산지 증명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등의 난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FTA에 의한 특혜관세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접운송의 요건은 특혜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리적이나 수송상의 이유로 부득이 환적이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 하에 있어야 하고, 제3국에 판매되었거나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본 글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 사)한국통상정보학회의 『통상정보 연구』에 게재된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를 대폭 수정하여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FTA하에서 직접운송 규정은 역내 운송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운송과정에서 비체약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물품의 생산공정을 수행한 장소나 재료의 조달처와는 무관하게 제조가 완료된 물품의 운송경로에 따라 원산지나 특혜관세혜택의 적용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원산지 결정기준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품의 운송이 FTA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된다면 특혜관세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많은 교역물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단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 및 직접운송 인정여부에 대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는 해당업체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당국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무역구조의 다변화 및 무역거래형태의 복잡화로 인하여 제3국을 경유해서 수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당사자간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직접운송과 관련된 FTA협정문,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세관에서도 직접운송 요건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할 뿐 아니라, 관세청 등 상부기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FTA상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FTA별로 규정내용이 서로 상이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해당 상품이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부담도 안고 있다. 그러므로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넓고 수준높은 FTA'로 평가받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하에서의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과 직접운송 요건을 분석하여 시사점의 도출과 아울러 실무상의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전체 인구 약 5억 명에 2014년을 기준 GDP가 세계 전체 GDP의 약23.7%인 18조 달러(추정치)로 NAFTA와 함께 세계 GDP 점유율 1, 2위의 규모에 달하는 거대경제권이며, 세계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별로 볼 때도 28개국으로 기존 발효된 16개국보다 많고 교역량도 세계에서 두 번 째로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규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의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을 분석함과 아울러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들로 하여금 한-EU FTA와 한-EU FTA 원산지규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출입기업들에게 업무처리상의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02

###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 FTA하에서 직접운송 요건의 의의와 목적

##### 1 직접운송 요건의 의의

FTA하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원산지상품(originating products)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이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된다는 것, 즉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동일성여부 등이 수입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정한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FTA에 의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 하더라도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협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이 있거나, 당해 상품이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상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즉, 상품이 수출당사국이나 수입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 즉, 첫째,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둘째, 그 상품이 경유국가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직접운송 규정은 원산지 충족요건의 확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물품의 원산지 자체가 당연히 부인되게 된다. 그러므로 동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원산지상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에 의해 협정관세가 부인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원칙과 절차적인 요건을 결합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

## 2 직접운송 요건의 목적

FTA하에서 특혜관세 적용요건으로서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혜관세 수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거래관계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국과 협정당사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즉, 직접운송이 아니라 운송 중간에 어느 국가에 수입통관된 후 다시 재수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초로 수출된 상품을 일일이 추적하여 다른 상품으로 바뀌었거나 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EU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과 가공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운송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역내운송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EU FTA하에서 직접운송 요건의 분석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수록되어 있는 원산지의정서 제13조의 직접운송 요건은 FTA 원산지규정 중 불인정공정기준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1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

#### ARTICLE 13 : DIRECT TRANSPORT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sup>2)</sup>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pplicable in the importing Party, by the production of :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third countries; (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country of transit.<sup>3)</sup>

2)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이나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한-EU FTA 원산지규정서 제13조의 내용

### (1) 원칙

한-EU FTA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EU FTA를 포함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협정당사국 간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만일 해당 원산지상품이 운송 중간에 어느 다른 국가에 수입통관된 후 다시 재수출되는 경로를 거치게 되면, 최초 수출 상품을 일일이 추적하여 다른 상품으로 바뀌거나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2) 예외적용

한-EU FTA는 제3국의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되었거나 보세구역 보관을 증명하는 경유국 관세당국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등의 불가피한 환적이나 제3국의 단순경유도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현대의 국제컨테이너 운송시스템과 복잡한 무역거래형태의 현실에 비추어 실제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원산지규정서 제13조에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여건을 충족하면서 양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2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이나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관을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즉, 제13조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EU 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운송상 또는 지리상의 이유 등)이 발생하여 다른 영역에서 단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상품이 통과 또는 창고에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하역, 재선적이나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외에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3) 당사국의 의미

한-EU FTA하의 직접운송 원칙에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은 EU 회원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EU는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인데, EU영역은 모두 당사국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록 덴마크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EU 회원국인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EU의 역내 인증수출자가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면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상품이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터키 등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수출되게 되면 이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제13조의 적용사례와 분석

첫째, 만일 네덜란드 생산자가 최종 생산하여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지위를 얻은 상품이 덴마크의 물류창고로 이동되어 보관되어 있다가, 덴마크 물류창고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한국으로 수출된 경우의 원산지증빙 방법은?

- ① 이것은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된다.
- ② 덴마크 물류창고업자는 덴마크 관세당국에 원산지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등록하고,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③ 덴마크 물류창고업자는 자신이 발행하는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 원산지증빙문언 및 세관인증번호를 기입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덴마크 물류창고업자는 네덜란드 생산자로부터 당해 물품이 한-EU FTA에 따라 역내산 지위를 얻은 물품임을 증빙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원산지사후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만일 상품은 프랑스산 와인이며, 거래관계는 프랑스(수출자) → 한국(수입자)이고, 운송관계는 프랑스(수출자) → ① B/L → 싱가포르(물류허브) → ② B/L → 한국(수입자)의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는?

상기의 사례와 같이, 프랑스의 수출자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포르 물류기지에 와인을 보관하다가, 한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물류기지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운송관계는 제3국 경유에 전제조건으로 허용된 단일 탁송화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셋째, EU나 한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를 한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과 거래당사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상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다.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이나 일시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 03

한-EU FTA  
직접운송 관련  
심사청구  
사례 소개

## 사건의 개요 및 쟁점내용

1 사건<sup>4)</sup>과 청구개요

청구법인(심사청구인)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2007년 7월 31일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 EU 영내국가인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선적된 B/L ESBKR804058H01 외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08-\*\*\*\*\*U호(2008년 8월 22일)등으로 수입통관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반송신고번호 \*\*\*-10-09-\*\*\*\*\*호 외 7건으로 최초 반입한 물량에서 수입통관 후 남은 물량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구역에서 홍콩의 OOO LTD.사로 반송하였다.

이후 2009년 7월 13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입항일 기준) 홍콩에서 선적된 B/L 809207호 외 7건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여,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13건(이하 '청구대상 건'이라 함)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당국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2년 6월 30일 청구법인은 청구대상 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에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함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8월 28일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건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 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함) 제13조의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0월 19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결정번호 : 관심 제2012-33호, 청구법인 : (주)OOOO (대표 OOO),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구일 : 2012. 10. 19., 결 정일 : 2012. 12. 21.

## 2 쟁점내용

본 심사청구의 쟁점내용은 본건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쟁점물품이 양 당사자간에 직접 운송되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본 협정상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단순 환적이나 일시 장치된 물품인지의 여부, 그리고 쟁점물품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단일의 송품장(Commercial Invoice)에 의해 다루어진 제품인가의 여부 등이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다.

## 당사자의 주장

### 1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스페인 등에서 선적된 B/L번호 ESBKR804058H010 외 7건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국내 와인시장의 약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송신고번호 \*\*\*-10-09-\*\*\*\*\*호 외 7건으로 홍콩으로 반송하였다가, B/L번호 809207호외 7건으로 재반입한 후 청구대상건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물품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순 환적 및 일시 장치된 물품이며 FTA 관세특례법 고시에 규정된 대로 권한이 있는 기관인 홍콩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보세구역 미개장 증명서도 이미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과세당국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과세당국(처분청)

과세당국은 한-EU FTA는 상대국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당해 원산지의 상품일지라도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다만 중간 경유국에서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단순 환적이나 보관 혹은 장치는

예외적으로 인정)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운송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는 한-EU FTA상 직접운송 규정은 역내운송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운송과정에서의 일시 환적이나 일시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는 것이며, 비록 원산지가 한-EU FTA협정에 의한 역내산이라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당해 수입계약과 관련된 운송조건과 인도조건 등이 수입국내에서 종료된 이후,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의 반송수출한 것은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규정인 단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결과와 판단내용

관세청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sup>5)</sup>을 내렸다.

즉,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었다. 이와 같은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으로의 반송과 국내로 재반입한 운송과정은 한-EU FTA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당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 관세청장, 「결정서, 관세청 결정」, 관심 제2012-33호, 2012, pp.1-7.

## 04

본건 관련  
법령 및 결정  
분석과 시사점 및  
실무상의 대응책

## 결정분석 : 사실관계와 판단의 분석

## 1 쟁점물품이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었는지 여부

전술과 같이, 한-EU FTA에서는 동 협정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직접운송 요건의 예외로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occasion arise) 다른 영역에서 단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에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하역, 재선적이나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직접운송 여부는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운송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선하증권에도 수출자, 수입자, 선적항 및 수입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건의 주요 운송관계와 경로는 EU 회원국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물품은 다시 홍콩으로 반송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의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건의 경우 EU에서 국내, 국내에서 홍콩, 홍콩에서 국내로 재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총 운송과정에서, 스페인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가 발행한 B/L 1통과 홍콩에서 발행된 B/L 1통 등 총 2통의 B/L이 각각 별도로 발행되었으므로 단일 운송서류가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 2 쟁점물품이 본 협정상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은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때,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3 쟁점물품이 단순 환적 및 일시 장치된 물품이었는지의 여부

본건에서 핵심쟁점인 직접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직접 운송 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원산지 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을 포함하여 상기의 규정들에서 일관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환적되었거나 일시 장치되었던 경우에도 직접운송과 같이 원산지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건은 EU 회원국 역내의 생산국과 제3국 간 구매계약에 따라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인 홍콩으로 운송되어 보세구역에 보관된 후 별도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를 통해 제3국인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다. 단순 환적이나 일시장치의 경우, 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B/L이나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계약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만, 본건에서는 EU 수출자가 발행한 B/L 1통과 홍콩에서 발행된 B/L 1통 등 통 2통의 B/L이 별도로 발행되었고, 단순 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쟁점물품이 지리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단순히 환적이 이루어졌거나 장치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운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4 쟁점물품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진 제품인가의 여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는 직접운송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단일 탁송화물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되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탁송화물에 대해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는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EU 회원국인 스페인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다가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은 다시 홍콩으로 반송되었고 이것은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지역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거래에 대해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이 발급되었고, 또한 홍콩의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재반입 거래와 관련하여도 별개의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이 발급되었음이 운송경로관계와 사실관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건은 직접운송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시사점 및 실무상의 대응책

### 1 자의적 혹은 가공적인 해석의 금지

한-EU FTA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에 있어 자의적 혹은 가공적인 해석은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만, 특혜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충족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공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는 관세당국과 수출입기업이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EU FTA하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수입국에서 특혜대상이 되는 원산지상품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해당 상품이 원산지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변의 원칙인 것이다. 물론 실거래에 있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협정문 규정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은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구 하나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협정문 우선 원칙은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러한 주장과 적용은 객관적이며 동적인 자료나 문서 및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2 단순 환적이나 보세구역의 일시장치에 대한 경유관련 증빙서류의 조속 확보

한-EU FTA하에서는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 이루어졌거나 보세구역 보관을 증명하는 경유국 관세당국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 관세영역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원래 물품과의 일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지만, 단순 경유나 환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제운송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술과 같이 예외의 적용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3국 경유 시 단순 환적이나 보세구역 또는 일시장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산지상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 관세당국 등의 경유증빙서류를 완벽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증빙을 받기 힘들 수 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운송경로를 파악하여 해당 증빙서류 등을 구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득이 제3국을 경유하게 되어 직접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세관의 확인서, 관련 선사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경유국 행정당국에서 발급한 단순경유 사실 확인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3국을 경유하는 단일 탁송화물 구성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한-EU FTA 의정서 제14조는 전술과 같이,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일 탁송화물 구성 제품에 대해서만 상황에 따라 제3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탁송화물의 정의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제3국에서 분할 선적된 상품은 단일 탁송화물 구성제품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협정관세의 적용도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 4 단일의 운송서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EU FTA의 적용에 있어 단일의 탁송화물 및 단일의 운송서류의 개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상 하나의(혹은 단일) 운송서류(a single transport document)는 운송과정(경유지 포함) 전체를 포괄하는 수출국과 수입국간 One B/L이나 직접거래인 하나의 송품장(One Invoice)의해서만 운송 요건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유럽연합지역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거래에 대해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이 별도로 발급되었고, 홍콩의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재반입 거래와 관련하여도 별개의 운송서류와 상업송장이 발급되게 되면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되지 못한 것이 된다.

### 5 한·EFTA와의 구분 적용

EU와 EFTA는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통합형태로 물류체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운송 요건을 위반할 개연성도 많다. 왜냐하면 최근 네덜란드 비보세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노르웨이 생산품이 비당사국 세관 통제에 벗어나 직접 운송규정 위반으로 협정이 배제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EU와 EFTA는 우리로서는 엄연히 다른 FTA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05

## 맺음말

한·EU FTA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여타의 FTA와는 수출입 통관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동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과 결정기준 등을 포함한 협정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특혜관세 적용시의 요건충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입기업이 한·EU FTA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의 법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업무처리상의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건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종합하면, 우선 한·EU FTA하에서 단일의 탁송화물 및 단일의 운송서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한·EU FTA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에 있어 자의적 혹은 가공적인 해석은 피하여야 한다. 셋째, 한·EU FTA하에서는 경유국에서 단순환적이 이루어졌거나 보세구역 보관을 증명하는 경유국 관세당국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환적이나 보세구역의 일시 장치에 대한 경유증빙서류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한·EU 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단일 탁송화물 구성제품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EU와 EFTA는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통합형태로 물류체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운송 요건을 위배하는 사례가 많을 개연성이 있으며, EU와 EFTA는 우리로서는 엄연히 다른 FTA라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사례분석을 주된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법리적 문헌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연구의 제사가 미흡하고, 동일 사례에 대해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 있어 상이한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심사결정이나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사점과 정책적 보완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FTA 체결로 넓어진 경제 영토, 활용을 잘해야 '내 땅'

변영만 단장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난 11월 한-중 FTA 실질적 타결, 한-뉴질랜드 FTA 타결, 12월12일 한-호주 FTA 발효, 내년 1월 한-캐나다 FTA 발효 예정 등 연이은 FTA 협상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도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다. 금년 중 이들 5건의 FTA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 영토의 약 73.5%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거대 경제권역별 FTA 협상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3대 경제권으로 불리는 미국·EU·중국 뿐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끊임없이 발표되는 FTA 체결 소식에 대하여 소위 '양날의 칼'이라는 말처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FTA 체결에 대한 찬반이 주된 논란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체결된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그 효과와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수출·수입국이자, 13억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고, 지리적 근접성 및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FTA 체결은 시장 개방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국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는 한편,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투자의 국내 유치, 양국 간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 통합 촉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농수축산부문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다. 한편, 중국 시장은 개방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우리 농산품이 상대국 중산층을 공략하면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열렸다. 즉, 한-중 FTA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호주, 캐나다 FTA는 상대국들이 각각 세계 11위와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 부족한 LNG·철광석·석탄·원목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수출기업 뿐 아니라, 수입기업과 내수기업들도 이들 국가와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일지를 보면, 경쟁국들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일본에 앞서 FTA를 통한 호주 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되어 온 FTA 협상의 성패는 결국 이를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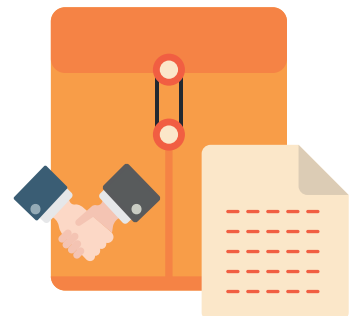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62.7%, 2013년 66.9%, 2014년(1-10월) 69.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한-EU, 한-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히고 그 효과를 경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나 유관 기관에서는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도 FTA 활용 관련 종합정보 제공, FTA 콜센터 '1380' 운영, FTA 전문 컨설팅, 사후검증대응지원, FTA 활용 교육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중이다. 최근 중국 등 신규 FTA 활용 수요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전문 상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로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FTA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모든 기업들이 잘 적응하고 혜택을 활용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고 경제권역별 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FTA를 이해하고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직접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등 내수 기업의 제품들도 FTA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고 거래과정에 글로벌 경제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넓어지는 경제 영토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지원하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FTA는 더 큰 시장을 열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다. 발 빠르게 달려온 협상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가 우리 경제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

# 2014년 11월 한-중 FTA 타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경은 선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중국 경제 개관

중국은 세계 GDP 상위 2위에 오른 경제대국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었던 2009년에도 무려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7.4~7.7%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배적인 추세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장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닌 '시장'으로 논해 지듯이, 중국의 구매력은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6,000달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6,569달러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3년 13.1%로 전년대비 증가세는 다소 떨어졌으나, 구매력의 증가율은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표1

중국  
주요 경제 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상반기)
경제성장률(%)	7.7	7.7	7.4
GDP(10억 위안)	519,322	568,845	269,044
1인당 GDP(US \$)	6,100	6,569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6	2.3
민간소비증가율(%)	14.3	13.1	12.1
수출실적(1억달러)	20,487	22,096	10,619
수입실적(1억달러)	18,184	19,504	9,590

자료 :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코트라 재인용

## 중국의 대외 정책 기초

2014년 5월 중국 정부(국무원)는 대외무역의 회복을 위해 '국 16조'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지원에 관한 의견'으로 5대 정책,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5대 정책이란, 대외무역 구조개선, 대외무역 환경 개선, 정책적 보장 강화, 대외무역 경쟁력 강화, 정부관리 개선 등이다. 중국 정부는 국 16조를 통해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서비스 무역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타결이 선언된 한-중 FTA도 중국 정부의 대외무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 중국의 FTA 체결 현황

중국 정부는 관세의 인하 또는 폐지, 서비스 및 투자부문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생산과 교역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 지역과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초기 중국은 2003년 홍콩, 마카오 등의 주변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한 뒤, 2004년에는 ASEAN으로 확대, 이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로 그 대상을 넓혀갔다.

최근에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주도하는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의 핵심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인 2014년 11월 한-중 FTA를 본격적으로 타결했다.

■ 표2  
중국의  
F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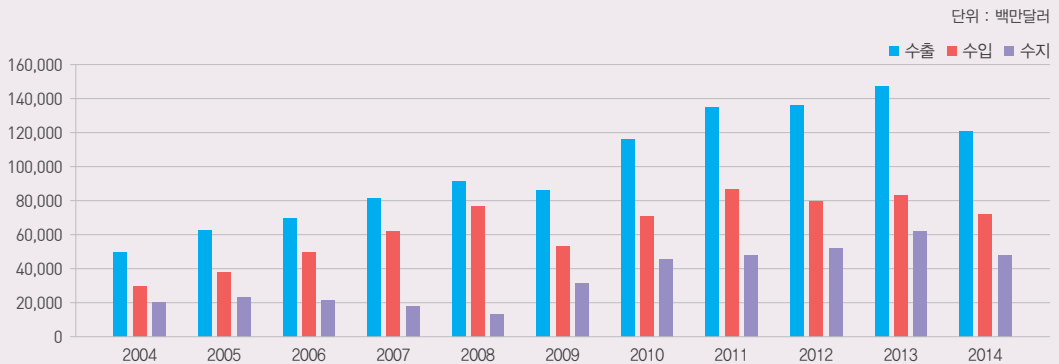
구분	대상국	주요 내용
발효	홍콩	03.6월 CEPA 체결
	마카오	03.10월 CEPA 체결
	ASEAN	(상품) 04.11월 서명, 05.7월 발효(서비스) 07.1월 서명, 07.7월 발효(투자) 09.8월 서명, 10.1월 발효
	칠레	(상품) 05.11월 서명, 06.10월 발효(서비스) 08. 4월 서명, 10.8월 발효
	파키스탄	(상품·투자) 06.11월 서명, 07.7월 발효(서비스) 09.2월 서명, 09.10월 발효
	뉴질랜드	08.4월 서명, 08.1월 발효
	싱가포르	08.10월 서명, 09.1월 발효
	페루	09.4월 서명, 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10.4월 서명, 11.8월 발효
	대만	10.6월 ECFA 기본협정 서명, 10.9월 발효 12.8월 세관협력 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13.6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상품 협상 진행중
	아이슬란드	07.4월 협상 개시 13.4월 서명
	스위스	스위스 11.1월 협상 개시, 13.7월 서명
타결	한국	12.5.2 협상 개시, 14.11월 협상 타결 선언
	호주	05.5월 협상 개시, 14.11월 협상 타결 선언
협상중	GCC	05.4월 협상 개시, 14.1월 Action Plan 서명
	노르웨이	08.9월 협상 개시, 10.9월 제8차 협상
	SACU	04.6월 협상 개시 선언
	한중일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4.11월 제6차 협상
공동연구	RCEP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4.6월 제5차 협상
	인도	RTA 공동연구 완료(03.6월~07.10월, 6차례 회의)

자료 : 산업통상부 <http://www.fta.go.kr/cn/>에서 참고하여 작성

### 우리나라와의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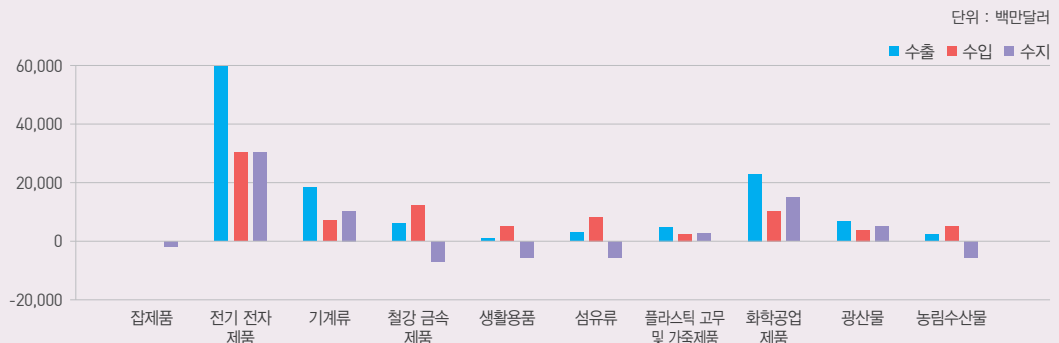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21.3%, 수출의 26.1%, 수입의 16.1%를 점유하는 제1위 무역파트너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역흑자 대상국라는 점일 것이다. 對중 무역수지는 중국과의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말 628.2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이 흑자 부문이며,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자전기제품은 전체 무역수지의 약 64.7%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 품목이다.

그림 1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 수입, 수지(2004~2014)



주: 2014년은 10월 누계치임

그림 2 품목별 對중 무역 현황(2014.10말, MTI 1단위 기준)



### 한-중 FTA 협상의 타결 선언

한-중 FTA 협정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첫 공식협상을 벌인 이래 30개월간 14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며,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타결이 선언되었다.

■ 표3  
한-중 FTA  
협상 경과

구분		주요협상내용
1단계 협상	1차	'12.5.14 (중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12.7.3~5 (제주도)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12.8.22~24 (중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4차	'12.10.30~11.1 (경주) •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5차	'13.4.26~28 (중 하얼빈) •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6차	'13.7.2~4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13.9.3~5 (중 웨이하이) •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1단계 협상 마무리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 -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 합의
2단계 협상	8차	'13.11.18~22 (인천) •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만 협의
	9차	'14.1.6~10 (중 시안)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10차	'14.3.17~21 (일산)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11차	'14.5.26~30 (중 쓰촨성) • 상품분야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12차	'14.7.14~18 (대구) •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방식(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13차	'14.9.22~26 (중 베이징) •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14차	'14.11.4~9 (중 베이징) •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상품분야 협상 결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이에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의 자유화율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이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이 20년내 관세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한-중 FTA를 통해 對中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84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또한 한-중 FTA로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불(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4

### 한-중 FTA 상품분과 협상 결과

단위 : 개, 억불

		한국		중국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일반품목	관세즉시철폐	6,108	418.5	1,649	733.7
	5년내철폐	1,433	31	1,679	58.3
	10년내 철폐	2,149	173.3	2,518	312.5
민감품목	15년내 철폐	1,106	79.5	1,108	219.2
	20년내 철폐	476	34.1	474	93.75
초민감품목	부분관세감축	87	23	129	100.1
	저울할당관세(TRQ)	21	6	-	-
	양허제외	852	43	637	149.9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협정문의 구성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5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 있다. 특히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의 FTA 협정보다 한층 더 진전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5  
한-중, 한-미, 한-EU 협정문 구성 비교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상품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6개)	상품, 농업, 섬유, 의약품, 원산지,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9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투자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5개)	투자, 국경간 서비스공급, 금융서비스, 통신, 노동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투명성, 분쟁해결(12개)	서비스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지급 및 자본이동, 정부조달, 지적재산,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 해결
규범·협력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6개)		
기타	총칙 (5개)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예외, 최종규정(3개)	목적 및 일반 정의, 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
총계	22개	24개	15개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각 FTA 협정문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 이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석유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기존에 중국이 제시한 '결합기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한

세번변경기준<sup>1)</sup> 등 무역촉진적 기준이 설정되었다. 일례로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기전자 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이 적용되었고,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CC) 또는 RVC 40%<sup>2)</sup> 등 특혜 관세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부문인 농수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되었다.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은 국산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도록 가장 강화된 원산지기준인 완전생산기준(WO)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

■ 표6

### 한-중 FTA 원산지 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공산품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기전자	CTH, CTSH 등
	섬유류	CC 또는 RVC 40%
농수산물	신선농수산물,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 곡분	완전생산기준(WO)
	가공식품	수입 원재료 사용 가능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1)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통 HS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기준이 사용되지만, 농수축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CC)도 사용된다.

① HS 2단위 변경 기준(CC, change of chapter):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② HS 4단위 변경 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드는 경우 CTH가 적용되면 원산지가 인정되나 CC가 적용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불가

③ HS 6단위 변경 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2)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산방법에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이 주로 사용된다.

기준을 적용하여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조제·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최대 애로 요인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58.4%)을 꼽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위상이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2위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37.9%)로 알려졌다.<sup>3)</sup> 중국의 각 성별로 상이한 통관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은 이미 널리 알려진 애로 사항이다.

이에 한-중 FTA 통관의 경우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명문화하였다. FTA를 통해 한-중 양국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 협정문에는 상품의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별도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한-중 FTA는 지난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 정상은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상태다. 이에 향후 일정은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가서명(initialing)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가서명 이후에는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명진호 외(2014.11),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Trade Focus Vol.13 No.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표7

한-중 간  
관세율 비교

	對중국 관세율	對한국 관세율
전체	7.8	8.6
디지털 가전	6.0	11.8
반도체디스플레이	3.3	3.5
비금속광물제품	7.3	11.4
비철금속	5.5	5.7
생활용품	5.2	10.4
석유화학	5.6	5.6
섬유	9.4	10.4
의료기기	6.0	4.0
의약품	5.6	3.9
일반기계	6.5	7.8
자동차	7.2	13.3
전기전자	4.6	5.6
정밀화학	5.7	5.8
조선	4.0	7.2
증전기기	6.0	6.5
철강	1.6	6.2
통신기기	2.1	0.6
항공	2.1	1.7
기타제조업	5.4	9.9
기타	13.9	10.2
농산물	47.6	17.0

자료 : 명진호 외(2014.11),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Trade Focus Vol.13 No.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I)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시작하면서

수출입기업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관련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문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 HS 품목분류표 제6부(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규칙과 같은 일부 규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 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 규칙1을 해설하고 다음 호에는 규칙2 부터 규칙7까지 소개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 화학제품인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로 구성된 제6부에 속한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대부분 호의 변경을 기준(CTH)으로 하고, 일부는 소호 변경기준(CTSH)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나 소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품목별원산지기준 제6부 주1”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규칙1부터 규칙7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6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별도로 둔 이유는 제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호나 소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규칙을 충족할 경우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특수한 공정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칙1부터 규칙7까지의 규칙은 화학에 관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해석과 사례가 제시된 바 없어 수출입기업이 이 규칙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규칙의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HS 품목분류표와 HS 해설서에 근거하여 이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 품목별원산지 기준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의 제1규칙은?

###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Chemical Reaction Origin)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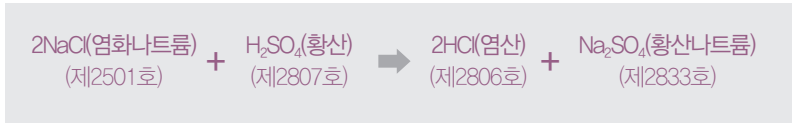
#### 〈주〉

제6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이 규칙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화학반응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되어야 한다. 다음 [보기 1]의 화학반응은, 염화나트륨(NaCl)의 분자 내 결합은 나트륨이온( $\text{Na}^+$ )과 염소이온( $\text{Cl}^-$ ), 황산( $\text{H}_2\text{SO}_4$ )은 수소이온( $\text{H}_2^+$ )과 황산이온( $\text{SO}_4^-$ )으로 분자 내 결합이 깨어진 다음에 수소이온( $\text{H}_2^+$ )과 염소이온( $\text{Cl}^-$ )이 결합하여 새로운 염산(HCl)이 생성 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화학반응을 이온결합이라 하고, 화학반응의 종류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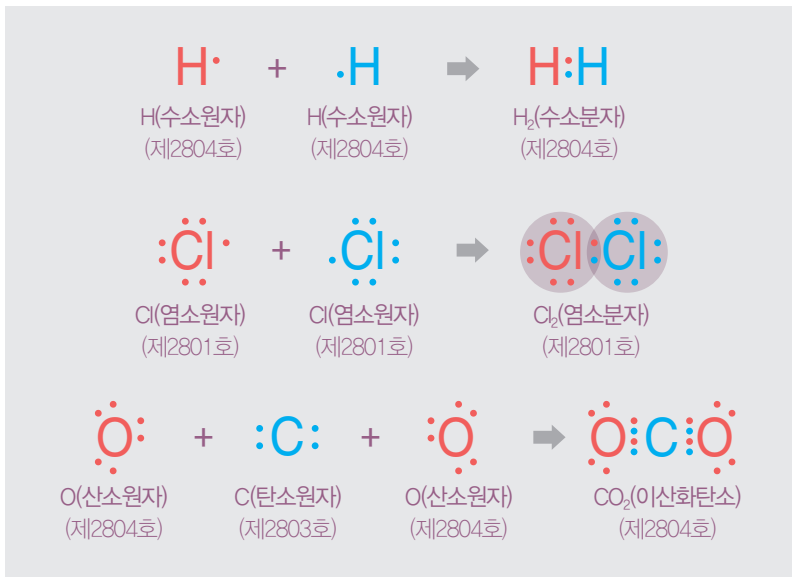
[보기1] 염산(제2806호)의 화학반응



두 번째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이어야 한다.

아래 [보기2]에서는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공유결합이라 한다.

[보기2]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반응



즉, 화학반응에 사용된 물질과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의 호가 다른 경우 [보기1]도 있고, 또는 호가 같은 경우[보기2]도 있다. 전자와 같이 호가 다른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을 적용하면 되므로 이 규칙1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1의 화학반응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28류(무기화합물)은 같은 원자끼리의 공유결합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반응을 거치면 대부분 호의 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29류(유기화합품)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염과 각종 유도체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염(salt)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온성의 물질을 말한다. 염은 주로 중성을 띠는 물질이 많으나, 산(산성염)이나 염기(염기성염)를 띠는 화합물도 있다.

참고적으로 제28류의 염은 아래 [보기3]과 같이 화학반응의 결과로 호의 변경이 일어나므로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보기3] 염소산칼륨(염)의 화학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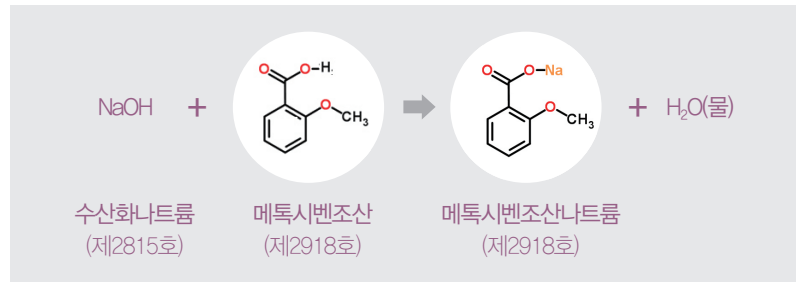


그러나 제29류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염을 얻었다고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기4]부터 [보기6]까지의 사례와 같이 화학반응으로 염을 생성하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연하면 초산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을 시키면 초산나트륨(초산의 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초산나트륨은 초산과 같은 호인 제2915호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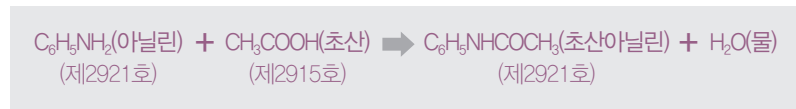
#### [보기4] 초산나트륨(초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보기5] 메톡시벤조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과 메톡시벤조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보기6] 초산아닐린(아닐린과 초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따라서 [보기4]부터 [보기6]까지의 사례와 같이 호의 변경이 없더라도 화학 반응의 결과 염이 생성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된다.<sup>1)</sup>

### 그 밖의 유도체(derivative)

유도체란 유기 화합물의 어미화합물(parent compound)에 작용기의 도입·산화·환원·원자의 치환 등의 반응으로 어미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화된 화합물을 말한다. 즉, 분자구조 가운데 일부가 변화하여 생긴 화합물로 어미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한 것이어야 한다. 제29류에서 유도체의 종류에는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SO<sub>3</sub>H), 니트로화유도체(-NO<sub>2</sub>), 니트로소화유도체(-NO), 에테르유도체, 에스테르유도체 등이 있다.

유도체의 경우에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우선 호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벤젠(C<sub>6</sub>H<sub>6</sub>)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유도체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1) HS 품목분류표 제29류(유기화합물) 주 제5호다목에서 규정한 염의 분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 29류에서 이와 같은 특례 규칙을 정한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보기7] 벤젠과 벤젠의 유도체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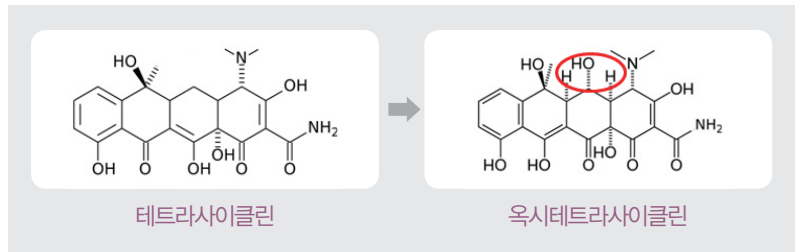
그러나, 초산에서 초산에틸에스테르의 유도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7] 초산의 에스테르유도체인 초산에틸(초산에틸에스테르)의 생성



또한, 제2941호의 향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모두 제2941호(소호도 제2941.30호로 동일하다)에 분류되므로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8] 향생제의 유도체(테트라사이클린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생성



[보기7]과 [보기8]의 사례와 같이 화학반응에 따라 각종 유도체를 생성한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규칙1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염이나 그 밖의 유도체를 생성하는 공정을 화학반응이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되었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 종류

그러나 이 규칙1에서는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음의 세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이 예외적 규칙은 한-미 FTA협정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사항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1부의 일반주해는 제1류 내지 제40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예외적 규칙은 제28류 내지 제38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규칙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물이나 다른 용제에 용해하는 것은 화학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용해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거나,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 규칙을 이해하려면 우선 HS 품목분류표 제28류와 제29류의 관련 주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28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제28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이를 물에 용해하거나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나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경우 것은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29류 주 제1호에서는 위의 규정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29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단, 바목·사목·아목은 이 규칙과 관련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 마.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HS 품목분류표 주 규정의 의미는 제28류와 제29류의 원소나 화합물은 물이나 용제(용매)에 용해하더라도 해당 주의 각목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의 원소나 화합물과 같은 호에 분류함에 따라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HS 품목분류표 해당 주의 각목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한-미 FTA협정의 일반주해에서 정한 규칙인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한다”이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물에 용해한 것

다음 [보기9]부터 [보기11]까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와 제29류 뿐만 아니라 제30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도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면, 물이나 용제(용매)로 용해했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보기9] 인산수용액의 제조**

인산(제2809호)은 조해성(고체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녹는 성질)이 있는 프리즘형 결정이므로 고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여 보통 65%나 90%의 수용액으로 보존

**[보기10] 화학조제품의 용해**

페인트와 잉크(제32류)나 향수(제3303호)를 물이나 다른 용제(용매)로 용해

**[보기11] 시약으로 용해**

분석이나 진단 또는 화학실험용 시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 농도(용액)<sup>2)</sup> · 노르말 농도(용액) · 모랄 농도(용액)나 퍼센트(%) 농도(용액)와 같은 표준용액으로 만든 용해

다만, 화학실험용 시약은 이 규칙1에 의해서는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으나, 규칙5에서 규정한 표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물외에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용제(solvent)란 용액을 만들 때에 용질을 녹이는 액체를 말하며, 용매라고도 한다. 그 종류에는 메틸알코올이나 에틸알코올 · 벤젠 · 아세톤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제는 휘발성을 지니고 있다. 물로 용해한 경우에는 용도나 특성의 변화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용제로 용해한 경우에는 제28류와 제29류의 관련 주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정한 용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2) 물 농도(용액)란 용액 1리터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물수를 말하는데, 1몰은 용질의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값이다. 따라서 1리터의 물에 분자량이 40인 수산화나트륨(NaOH) 40그램을 녹이면 수산화나트륨 1몰 농도(용액)가 된다.

제28류와 제29류 뿐만 아니라 제30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비누(제3401호)를 시크로헥사놀과 같은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것은 조제계면활성제(제3402호)로 분류하여, 호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용질<sup>3)</sup>을 녹이기 위하여 사용한 용제를 제거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것을 없애거나 또는 용질의 함유량을 높이기 위하여 목적(농축)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용제의 제거공정은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산지상품으로도 취급되지 않는다.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결정수란 결정물질 속에 일정비율로 함유하는 물( $H_2O$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정물질에 물이 결합된 것을 수화물(水化物)이라 하고 물이 없으면 무수물(無水物)이라 하는데, 제28류나 제29류의 무수물이 수화물로 또는 수화물이 무수물로 바뀌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흡착제를 사용하여 결정수를 제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브롬화나트륨( $NaBr$ , 제2827호)은 섭씨 51도 이상에서 결정화되어 불안정한 무수물 상태이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수화물( $NaBr \cdot 2H_2O$ )로 소 큰 입방체의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이 결정수의 첨가나 제거는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래 표1은 결정물질의 무수물과 수화물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칼슘과 같이 어떤 물질은 조해성이 있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을 스스로 흡수하여 스스로 수화물로 되는 경우도 있다.

3) 용질이란 용매에 녹아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의미하며, 앞의 보기9과 보기10에서 언급한 인산 및 페인트와 잉크나 향수를 용질이라 할 수 있다.



#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관세청은 2009년부터 발굴한 FTA활용 사례들에서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로 연결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하였으며, 이번호부터는 동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별로 활용사례도 같이 수록하였다.

# 01

## 국내가공 FTA 특혜 활용 모델 (한-중 FTA)

### 개 요

-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하여, 우리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적용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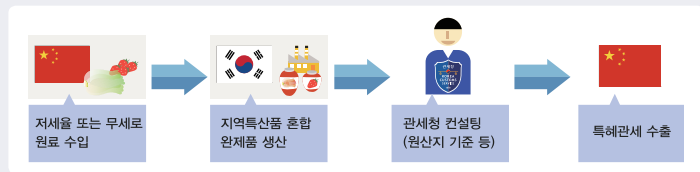
### 비즈니스 모델

-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만, 가공식품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
  - FTA 체결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기초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함으로써 원재료비 절감, 고품질 유지 및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

한-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FTA특혜 활용가능

※ (적용가능품목) 김치, 조제 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품, 믹스커피, 잼 등

###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한-중 FTA)



###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식품가공기업 등
- 한-중 FTA

## 02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 개요

- 기존에 역외산에 의존하던 주요 부품을 국내조달(원산지확인서 징구) 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역내산 재료로 전환하는 모델
  - 원재료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비즈니스 모델

- 완성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가 역외산 재료인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예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완성품의 HS코드와 동일한 역외산 재료 사용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성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역외산 재료 사용

##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 (유의사항)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이 국내조달에 따른 생산비 상승보다 더 큰지 확인하고, 부품 구매선 전환 효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

## 활용 및 확산분야

- 협력사에서 원산지 확인서류 수취가 곤란한 기업

##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_활용사례 1 원산지확인서 수령으로 FTA특혜세율 적용

### 기업 및 제품소개

- 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로 무산소 동판, 관, 봉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 주요 수출 품목 : 무산소 동판, 관, 봉(HS 7409, 7411 등)

### FTA 활용전 상황

- 국내거래업체로부터 Brass Tube, Brass Rod 등을 공급받아 필요한 형태, 크기로 가공하여 수출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같아 C/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어 FTA 혜택 없음

### 장애 요인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
-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FTA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납품업체의 무지 및 비협조로 어려움

### 극복 방법

-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지만 국내 업체로부터 한국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품업체의 원산지증빙서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세관 컨설팅을 토대로 원산지확인방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교육하고 설득함으로써 증빙서류 확보

### FTA활용 효과

- 한·미 FTA 적용시 약 1.4 ~ 3% 관세 혜택 및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가능(발효 전 75천불 → 89천불로 14% 증가)
- FTA 관세 혜택시 원가 절감으로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 예상

###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역외산 재료의 국내전환 모델\_활용사례 2 무한경쟁시대에 FTA 신형엔진 장착

###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세계 4위의 방송용 HD 모니터 제조업체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KBS, MBC, SBS 등 국내지상파는 물론 BBC, NBC, HBO 등 굴지의 해외방송국에도 공급하고 있음

### FTA 활용전 상황

- '08년부터 지속된 세계 경기의 동반침체는 방송국의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축소로 이어져 미주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방송장비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

### 장애 요인

- 주요 원재료가 수입 물품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불가능
- 동 업체는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없고, 관련 담당자조차도 FTA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극복 방법

#### 주요 원재료 국내산으로 대체

- 방송용 모니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CD 패널이 한국산이어야 하므로, 기존에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던 구매선을 국내로 전환

원재료명	비고
LCD 패널	모니터의 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
전자부품	IC 종류 포함
기구자재	각종 부품을 고정하고 모양을 갖추게 함

### FTA활용 효과

#### <정량적 효과>

- (미국 수출증가) FTA 체결국 중 미국 수출금액이 발효 전 4,443천달러에서 4,962천달러로 11% 증가됨에 따라 세관의 1:1 맞춤 컨설팅, 전화상담 등의 FTA 활용지원 대책이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
- (EU 수출증가) EU 수출금액 또한 발효 전 8,629천불에서 11,162천불로 무려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상황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인 것으로 판단

기간	EU 수출금액(천불)	미국 수출금액(천불)
발효 전	4,443	8,629
발효 후	4,962	11,162

- (가격 경쟁력 확보) 세계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SONY, JVC, Panasonic 등 메이저급 외에도 동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인 Mashall(미국), HD2Line(독일), Vutrix(영국) 등 20여개사가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완전경쟁형태의 시장

- '08년부터 '12년까지 세계 디지털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연평균 약 9.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연간 약 15%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한-EU 및 한·미 FTA 활용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03

###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 개요

- 원재료 중 일정비율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원산지관리를 간소화한 모델
  -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간과하기 쉬운 '미소기준'을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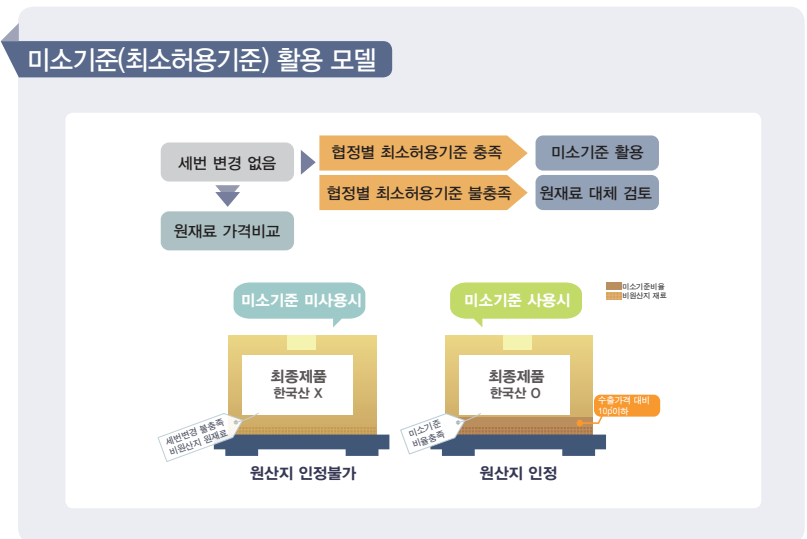
#### 미소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요건(PSR)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비즈니스 모델

-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되어 모든 원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협정에서 규정한 미소기준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 필요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관리의 유연성 발휘
  - 원재료 종류가 많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가격이 미미한 원재료에 미소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 창출



※ 유의사항 BOM의 품목별 세번번호와 단가를 확인하고 FOB 또는 EXW에 대한 미소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

■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가격 기준	일반	8%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류~14류 적용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 기준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미소기준 활용 모델\_활용사례 3

## 미국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한 의류 전문 업체

###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남성용 셔츠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 FTA 활용전 상황

- A사는 와이셔츠, 티셔츠 등 섬유제품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미국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품질의 우수성 필요

###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에 있어 국내산 재봉사를 사용해야하는 예외 조건으로 인해 수출품의 원산지를 충족하기 어려움
- 미소기준 역외산 재봉사에 대한 미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원산지결정 기준	미소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제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 7%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소요부품명세(BOM)

품명(재료명)	세번번호(HS)	원산지	공급자
원단(100% cotton)	5205.47	KR	○○방직
심지(Interlining)	6217.10	미상	○○사
재봉사(Sewing Thread)	5401.10	미상	○○상사
어깨테이프(Should Tape)	6217.90	KR	○○상사
·	·	·	·
·	·	·	·

극복 방안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
- 비원산지원재료인 재봉사의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충족함을 확인 함

■ 미소기준 산출 내역

구 분	무게(g)	전체무게(g)	미소기준 산출
어깨테이프	0.49	244.3	$5.58/244.3 \times 100 = 2.28(\%)$
재봉사	5.58		
·	·		
·	·		

- 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FTA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세관의 FTA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 등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
- FTA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전담직원이 세관, 무역협회 등 전문 기관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적극 참여

활용 효과

- 우수한 품질과 한·미 FTA 관세인하로 전년대비 對美 수출 67% 증가

## 시사점

- FTA를 활용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전문기관의 컨설팅, 교육 참석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FTA 활용에 성공한 사례임

### 미소기준 활용 모델\_활용사례 4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미 FTA 활용

####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스피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 제품소개

품명	HS번호	원산지결정기준(한·미 FTA)	관세혜택
스피커	8518.29	4단위 세번변경 (CTH) 또는 제8518.90호로부터의 변경 (단,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한 것)	4.9% ▶ 0%

#### FTA 활용과정

##### FTA 활용시 장애요인

- 한·미 FTA를 對美 수출확대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FTA 협정을 이해하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음

##### 활용과정(극복과정)

- HS4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조정가격의 10% 이내인 경우 '미소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없이 자체적으로 FTA 활용 결정

■ 수출물품 원재료 명세서 (BOM)

부 품	HS코드	부품의 부가가치 비중(%)			비 고
		제품A	제품B	제품C	
FRAME	7209	※ 세번변경 기준 불충족 원재료의 부가가치 비중 모두 10% 미만으로 미소기준 충족			4단위 세번변경
CENTER POLE	7209				
TERMINAL	8518	1.45	1.15	1.21	미소기준 적용
-	-	기재생략			4단위 세번변경

활용 효과

- FTA 관세혜택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0% 수출증대 효과를 거둠
- 세번변경기준의 완화규정인 '미소기준'을 물품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비용 절감

시사점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각 원재료별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미소 기준 등 보완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역내부가가치조건 충족 시 베트남 등 FTA 체결국 현지공장에서 반제품을 무관세 수입 후 가공수출 형태의 국제분업 가능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경향 분석

박병대 실장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 01 개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4과목(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각 25문제씩(회차별 100문제, 총 1,300문제) 출제되었다.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을 분석, 제공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및 주요 평가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수출입통관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의 개요</li> <li>관세법 일반</li> <li>통관</li> <li>수입통관절차</li> <li>수출통관절차</li> <li>보세구역관리</li> <li>보세화물관리 등</li> </ul>
FTA 협정 및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개요</li> <li>FTA 관세특례법</li> <li>원산지증명제도</li> <li>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li> <li>원산지 조사 및 사전심사</li> <li>비밀유지 의무</li> <li>불복신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li> </ul>
품목분류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품목분류 제도</li> <li>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li> <li>석유화학공업제품</li> <li>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li> <li>금속과 기계 및 기기</li> <li>수송기기 등</li> </ul>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결정기준 개요</li> <li>FTA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li> <li>원산지결정 일반기준</li> <li>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등</li> </ul>

# 02

## 출제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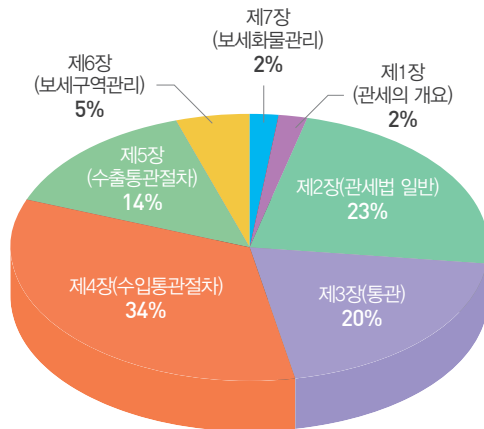
### 수출입통관 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출제된 325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에서 34.2%(111문제),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부분은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도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통관”과 “수출통관절차”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세구역관리”와 “보세화물관리”는 각각 5.2%와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13년도에 신규로 원산지 관리사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그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종전보다 출제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출제경향을 예상해보면, 특히 관세법일반 부분의 “과세 및 부과·징수”, 통관부분의 “통관요건”, 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 보세구역관리에서 “특허보세구역”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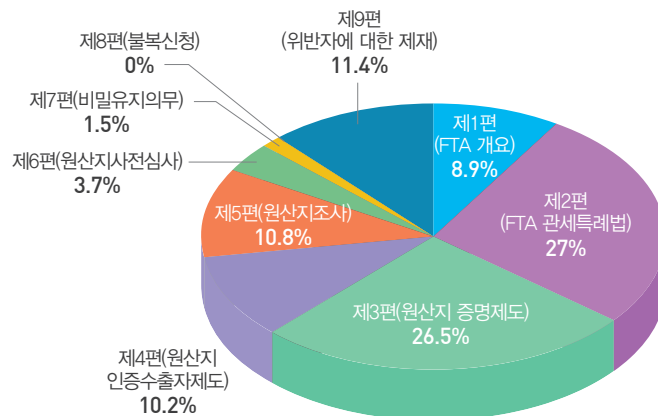
## FTA협정 및 법령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과 관련 국내 법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FTA협정 및 법령은 총 325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경향을 보면 “FTA 관세특례법”에서 27.1%(88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제도”가 26.5%(86문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부록 [표 11] 참조)

다음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 “원산지 조사”, “인증수출자 제도”에서 각각 11.4%와 10.8% 및 10.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출제될 예정이다.

반면 “비밀유지 의무”와 “불복신청”은 각각 1.5%와 0.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연계되어 있고 “불복신청”은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FTA 관세 특례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 개별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전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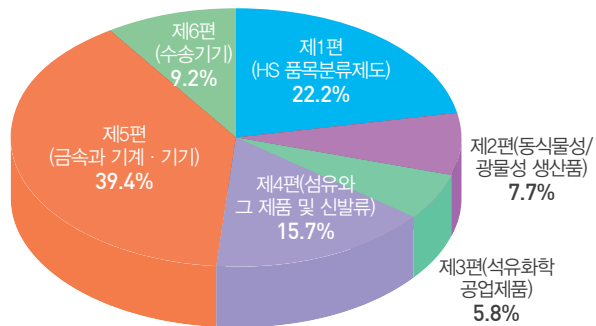
### 품목분류 실무

품목분류 실무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4과목 중 수험생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이며 실제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13회까지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금속과 기계·기기”부분에서 39.4%(128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 되었다. 다음으로 “HS 품목분류제도” 부분에서 22.2%(72문제),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부분에서 15.7%(51문제), “수송기기” 부분에서 9.2%(30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부록 [표 22] 참조)

출제 빈도가 높은 품목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니며, 또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경향이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과 “석유화학공업제품”은 각각 7.7%, 5.8%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동·식물성 생산품(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이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에 추가되어 그 이전에는 1회와 3회시험에, 단 2문제만 출제 되었다. 그러나 제8회 시험부터 출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출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록 [표 21] 참조)

이와 같이 출제경향으로부터 향후 수험생들은 특히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섬유와 섬유제품”, “자동차” 부분을 주의깊게 학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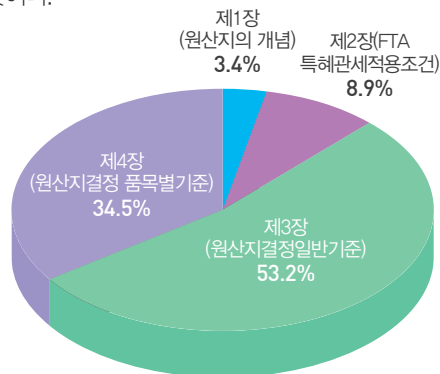
총 13회에 걸쳐 출제된 325문제 중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원산지결정 일반기준(General Rule)”으로서 총 173문제가 출제되어 53.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부분의 세부항목별 출제 비율을 보면 “원산지 결정 특례(보충) 기준” 60.1%(104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완전생산기준” (15.6%), “역내생산기준”(8.7%), “충분가공원칙”(8.1%), “불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기준)”(4.0%), “원산지재료 생산품 ”(3.5) 순으로 출제되었다.(부록 [표33] 참조)

“원산지결정 일반기준(General Rule)” 부분 외에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 34.5%(112문제), “FTA특혜관세 적용조건” 8.9%(29문제), “원산지의 개념” 3.4%(11문제)가 출제되었다.(부록 [표 30] 참조)

“품목별기준(PSR)” 부분의 세부항목별 출제경향을 보면 “부가가치기준”에서 48.2%(50문제)로 매회 마다 3~5문제를 다루고 있어 부가가치 산출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세번변경기준” 37.5%(42문제), “가공공정기준” 14.3%(16문제)순으로 출제되었다.(부록 [표 34] 참조)

원산지결정기준 과목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협정문에 등장하는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용어와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되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원산지판정이 가능할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부록 1 시험 과목별 출제 비중

1 수출입 통관실무 2 FTA 협정 및 법령 3 품목분류 실무 4 원산지결정기준

### 01 수출입 통관실무 출제 경향(표1~표9)

■ 표1 시험 회 별 출제문항 분석표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 기준)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장 관세의 개요	-	-	-	-	-	2	1	-	1	1	-	1	-	6
제2장 관세법 일반	4	5	-	5	7	5	9	4	5	4	10	7	9	74
제3장 통관	3	3	4	3	5	8	6	6	6	6	3	6	5	64
제4장 수입통관절차	11	13	17	12	10	6	6	9	6	7	6	3	5	111
제5장 수출통관절차	7	4	4	5	3	4	3	3	2	2	2	4	2	45
제6장 보세구역관리	-	-	-	-	-	-	-	2	4	3	3	3	2	17
제7장 보세화물관리	-	-	-	-	-	-	-	1	1	2	1	1	2	8
합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2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합계
(편)	관세의 개요	관세법 일반	통관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보세 구역 관리	보세 화물 관리	-
출제 문항수	6	74	64	111	45	17	8	325
비율(%)	1.8	22.8	19.7	34.2	13.8	5.2	2.5	100.0

■ 표3 제1장(관세의 개요)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관세의 개요	합계
출제 문항수	6	6
비율(%)	100.0	100.0

■ 표4 제2장(관세법 일반)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과세 및 부과·징수 등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등	합 계
출제 문항수	17	9	34	14	74
비율(%)	23.0	12.2	45.9	18.9	100.0

■ 표5 제3장(통관)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통칙	제2절 통관요건	제3절 원산지확인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	제5절 통관의 예외	합 계
출제 문항수	1	29	11	13	10	64
비율(%)	1.6	45.3	17.2	20.3	15.6	100.0

■ 표6 제4장(수입통관절차)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수입신고	제2절 가격신고	제3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제4절 세액의 결정방법	제5절 수입신고 수리	기 타	합 계
출제 문항수	47	18	5	34	3	4	111
비율(%)	42.4	16.2	4.5	30.6	2.7	3.6	100.0

■ 표7 제5장(수출통관절차) 출제비율

구 분	제1절 총칙	제2절 수출신고	제3절 물품의 검사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제5절 수출신고 정정 / 취하 / 각하
출제 문항수	3	14	3	5	0
비율(%)	6.7	31.1	6.7	11.1	0.0
구 분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제7절 반송통관	제8절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기 타	합 계
출제 문항수	10	3	3	4	45
비율(%)	22.2	6.7	6.7	8.9	100.0





■ 표11 FTA 협정 및 법령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제9편	합 계
(편)	FTA 개요	FTA 관세 특례법	원산지 증명 제도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원산지 조사	원산지 사전 심사	비밀 유지 의무	불복 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출제 문항수	29	88	86	33	35	12	5	0	37	325
비율 (%)	8.9	27.1	26.5	10.2	10.8	3.7	1.5	0.0	11.4	100.0

■ 표12 제1편(FTA 개요)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FTA란 무엇인가?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합 계
출제 문항수	9	20	29
비율(%)	31.0	69.0	100.0

■ 표13 제2편(FTA 관세특례법)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총론	제2장 협정관세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제4장 FTA 적용물품의 통관절차	합 계
출제 문항수	19	25	9	35	88
비율(%)	21.6	28.4	10.2	39.8	100

■ 표14 제3편(원산지증명제도)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원산지 증명서류	제2장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소 계
출제 문항수	15	15	19	6	55
비율(%)	17.4	17.4	22.2	7	64
구 분	제5장 원산지(포괄) 확인서	제6장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제7장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비교	제8장 원산지증명서류의 보관 및 제출	합 계
출제 문항수	7	3	8	13	86
비율(%)	8.1	3.5	9.3	15.1	100

■ 표15 제4편(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개요	제2장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3장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합 계
출제 문항수	8	10	15	33
비 율(%)	24.2	30.3	45.5	100

■ 표16 제5편(원산지조사)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개요	제2장 원산지 조사 기본원칙	제3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합계
출제 문항수	2	3	25	5	35
비 율(%)	5.7	8.6	71.4	14.3	100.0

■ 표17 제6편(원산지 사전심사)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사전심사 개요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의 절차	제3장 원산지 사전심사내용의 변경	합계
출제 문항수	3	7	2	12
비 율(%)	25.0	58.3	16.7	100.0

■ 표18 제7편(비밀유지 의무)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비밀 유지의 의의	제2장 비밀취급 자료의 제공	제3장 비밀취급 자료 지정	제4장 비밀취급의 보관 및 폐기	합 계
출제 문항수	0	2	3	0	5
비 율(%)	0.0	40.0	60.0	0.0	100.0

■ 표19 제8편(불복신청)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불복신청의 개요 및 대상	합 계
출제 문항수	0	0
비 율(%)	0.0	0.0

■ 표20 제9편(위반자에 대한 제재)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협정관세 적용보류	제2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장 벌칙	합 계
출제 문항수	9	12	16	37
비 율(%)	24.3	32.4	43.3	100.0

### 03 품목분류 실무(표21~표28)

■ 표21 품목분류 실무 회차별 출제문항 분석표

회 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계
제1편 HS 품목분류제도	15	6	3	6	5	5	4	3	4	5	5	5	6	72
제2편 동식물성/광물성 생산품	1	-	1	-	-	-	-	5	2	5	4	5	2	25
제3편 석유화학공업 제품	-	1	1	3	3	1	1	1	1	1	3	2	1	19
제4편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	5	6	5	3	6	3	3	4	4	4	4	4	51
제5편 금속과 기계·기기	9	11	11	9	12	10	15	12	12	7	6	7	7	128
제6편 수송기기	-	2	3	2	2	3	2	1	2	3	3	2	5	30
합 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22 분야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편 HS 품목 분류제도	제2편 동식물성/광물성 생산품	제3편 석유화학 공업제품	제4편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제5편 금속과 기계·기기	제6편 수송기기	합 계
출제 문항수	72	25	19	51	128	30	325
비 율(%)	22.2	7.7	5.8	15.7	39.4	9.2	100.0

■ 표23 제1편(HS 품목분류 제도) 출제비율

구 분	제1장 HS 국제통일 상품분류표	제2장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장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합 계
출제 문항수	8	17	47	72
비 율(%)	11.1	23.6	65.3	100.0

■ 표24 제2편(동·식물성 생산품 및 광물성 생산품) 출제비율

구분	제1장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제2장 광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합계
출제 문항수	22	3	25
비율(%)	88.0	12.0	100.0

■ 표25 제3편(석유화학공업제품)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석유화학공업과 연관공업생산품	제2장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장 고무와 그 제품	합계
출제 문항수	4	10	5	19
비율(%)	21.1	52.6	26.3	100.0

■ 표26 제4편(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섬유와 섬유제품	제2장 신발류	합계
출제 문항수	50	1	51
비율(%)	98.0	2.0	100.0

■ 표27 제5편(금속과 기계 및 기기) 출제비율

구분	제1장 금속과 금속제품	제2장 기계류의 공통 분류기준	제3장 기계	제4장 전기 및 전자기기	제5장 정밀기기	합계
출제 문항수	22	27	29	30	20	128
비율(%)	17.2	21.1	22.7	23.4	15.6	100.0

■ 표28 제6편(수송기기)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수송기기의 분류체계	제2장 자동차	합계
출제 문항수	9	21	30
비율(%)	30.0	70.0	100.0

### 04 원산지결정기준(표29~표34)

■ 표29 원산지결정기준 시험 회 별 출제문항 분석표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제1장 원산지의 개념	-	-	-	1	1	1	1	1	1	1	1	1	1	2	11
제2장 FTA 특혜관세 적용조건	2	1	2	2	5	4	1	2	3	2	3	2	0	29	
제3장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General Rule)	14	16	17	12	10	13	13	14	13	15	11	13	12	173	
제4장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9	8	6	10	9	7	10	8	8	7	10	9	11	112	
합 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25	

■ 표30 분야별(편)별 출제문항 분석표

분야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합계
(편)	원산지의 개념	FTA특혜관세 적용조건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
출제 문항수	11	29	173	112	325
비율 (%)	3.4	8.9	53.2	34.5	100.0

■ 표31 제1장(원산지의 개요) 출제비율

구분	제1장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합계
출제 문항수	11	11
비율(%)	100.0	100.0

■ 표32 제2장(FTA 특혜관세 적용 조건) 출제비율

구분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요건	3. 운송요건	4. 원산지 증명요건	합계
출제 문항수	8	2	12	7	29
비율(%)	27.6	6.9	41.4	24.1	100.0

■ 표33 제3장(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출제비율

구분	1. 완전 생산기준	2. 역내 생산기준	3. 충분 가공원칙	4. 불완전 생산품 (실질적 변형기준)	5. 원산지 재료생산품	6. 원산지 결정의 특례(보충)기준	합계
출제 문항수	27	15	14	7	6	104	173
비율(%)	15.6	8.7	8.1	4.0	3.5	60.1	100.0

■ 표34 제4장(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기준) 출제비율

구분	1. 세번변경 기준	2. 가공공정 기준	3. 부가가치기준	합계
출제 문항수	42	16	54	112
비율(%)	37.5	14.3	48.2	100.0

## 부록 2 원산지관리사 2015년 시행 일정

● (2015년)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검정 시행 일정

회차	시행일자	시험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합격발표
14회	3. 28(토)	2. 23(월)	3. 2(월) ~ 3. 11(수)	4. 27(월)
15회	8. 22(토)	7. 20(월)	7. 27(월) ~ 8. 5(수)	9. 21(월)
16회	11. 21(토)	10. 19(월)	10. 26(월) ~ 11. 4(수)	12. 21(월)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장소** : 시험공고 시 안내예정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01 시행계획

● **검정기준** :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업계 3년 이상 종사자가 관련

\* 관련지식(직무지식)

- 수출입통관 제도 전반을 이해할 것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을 파악하고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을 숙지할 것
- 품목분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을 것
- FTA 원산지관리기준을 이해하고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을 것

● **검정방법**

검정방법	시행형태			합격기준	
	구분	과목	문제수		
필기 (4지선다 객관식)	1교시 (60분)	• FTA협정및법령	25	총 50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품목분류실무	25		
	2교시 (60분)	• 원산지결정기준	25	총 50	
		• 수출입통관실무	25		

※ 자격의 유효기간 : 자격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 (보수교육 후 갱신)

● **검정과목**

과목	출제분야
① FTA협정및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FTA 이해</li> <li style="width: 50%;">• FTA 관세특례법</li> <li style="width: 50%;">• 원산지증명 제도</li> <li style="width: 5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li> <li style="width: 50%;">• 원산지 조사</li> <li style="width: 50%;">• 원산지 사전심사</li> <li style="width: 50%;">•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li> </ul>
② 품목분류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HS 품목분류제도</li> <li style="width: 50%;">• 관세율표 통칙</li> <li style="width: 50%;">•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li> <li style="width: 50%;">* 동식물성생산물 및 광물성생산물, 석유화학공업제품,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수송기기 등</li> </ul>
③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원산지개요</li> <li style="width: 50%;">• FTA특혜관세적용조건</li> <li style="width: 50%;">• 일반기준</li> <li style="width: 50%;">• 품목별기준 등</li> </ul>
④ 수출입통관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관세의 개요</li> <li style="width: 50%;">• 관세법 일반</li> <li style="width: 50%;">• 수출입통관</li> <li style="width: 50%;">• 보세구역관리</li> <li style="width: 50%;">• 보세화물관리 등</li> </ul>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

## 02 응시방법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FTA원산지아카데미(<http://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접수 ➔ 공고명 클릭
- **응시료** : 50,000원
  - ※ (참고) 취소 · 환불 규정

구분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기간 중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시험시행일 6일전부터
환불적용률	100% 환불	부분환불*	환불불가

\* 부분환불금액 : 24,900원

-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 031-600-0734~5

## 03 참고자료

-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2010.12.1.)되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2012.12.27.) 자격으로 승인
- **(혜택)** 관세청고시 제2013-7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에 대한 심사 생략 가능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 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혜택)**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지원요건에 원산지관리사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할 경우 최대 연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센터 ([www.ei.go.kr](http://www.ei.go.kr))



# 한-미 FTA 수출 활용시, 통관 유의 사항은<sup>1)</sup>?

**A** 2012년 3월 본격적으로 발효된 한-미 FTA는 EU에 이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제정된 미국 고유의 통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거나 불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의 관세행정 동향과 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미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자의 성실한 입증의무를 규정하는 현미국 통관제도의 근간은 1993년 세관 현대화법이다. 미국의 최초 관세법은 1789년 제정되어 약 22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성 체계를 갖춘 것은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이다. 동법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들을 규정한 원류이다.

그리고 1993년 세관 현대화법에 의해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 세관 현대화법은 그간의 관세법의 틀을 깬 시도로서, 세관과 무역업자에게 구법에 없었던 3대 키워드(Informed Compliance, Shared Responsibility, Reasonable Care)를 제시하였다.

먼저 통관절차 집행의 당사자로서 세관은 관세법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되 이해관계자에게 관세행정 규정을 모두 공개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Informed compliance). 무역업자는 자율신고를 통한 신속통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대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세관과 수입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배하게 되었다(Shared Responsibility). 그리고 수입자가 법규 및 그 이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순응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즉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면 규정 위반시 처벌을 완화해 주는

1) 본 글은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의 2014년 해외통관제도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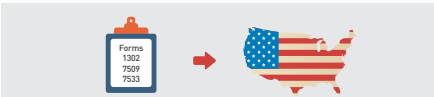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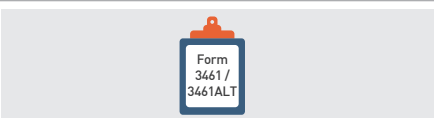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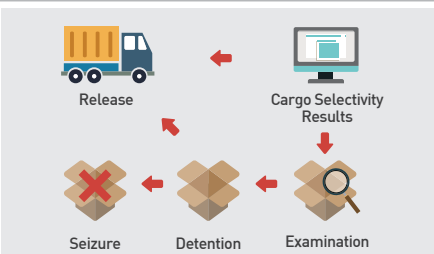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관세행정에 있어 수출입 당사자의 법준수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 C-TPAT 인증은 미 세관의 검사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첩경



한편 미국의 관세행정은 2001년 9.11 이후 통관제도의 최우선순위가 “안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테러

방지를 위해 생산, 선적, 운송, 보관 및 유통 등 물류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의 법규준수도를 심사 인증하는 C-TPA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TPAT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은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우선 반출 및 검사 비용 절감, 벌금 경감, 세관전문가(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를 통한 상담, CEE(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프로그램<sup>2)</sup> 가입신청 자격 부여 등 총 6종류에 달한다. 미인증업체 화물은 세관검사 빈도가 높아 검사비용 추가 부담(1천불~5천불), 통관지체에 따른 납기 지연 등 직·간접적인

■ 표1 미국의 통관절차

		주요 내용
Step 01		• 무역 계약 체결, 구매 발주, 제조 및 운송 (수출국)
Step 02		• 선사에서 항만 도착 전 적하목록 CBP 전송(e-manifest)
Step 03		• 수입자,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통해 form 3461(즉시반출신고서) 전송 • 도착 후 15일 이내 제출 원칙, 이 때 bond 제출 필요
Step 04		• C/S에 걸리지 않은 물품은 즉시 반출(Release) 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화물은 X-ray 검색 실시 • 검사 결과 이상 없는 물품은 반출(Release), 이상 있는 물품은 통관보류(Detention) 및 압류(Seizure) 조치

2) 미 CBP가 “21st Century Trade”비전의 하나로 도입한 One-Stop 세관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품목별로 관리전문센터를 설치하여 파격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CEE는 전자, 의약, 자동차, 석유, 비금속 등 주요 품목별로 설치·운영(10개)하고 있으며 수입검사·사후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
Step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반출 후 form 7501(Entry Summary) 전송 및 세액 납부</li> <li>• 제출기한 : 화물반출 후 10 근무일 이내</li> </ul>
Step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심사팀에서 납세신고 내역 심사 및 과부족 세액 정산</li> <li>• 세액 정산(liquidation)은 수입일부터 314일에 마감.</li> <li>• 단 반담평관세 부과 품목은 10년까지 정산</li> </ul>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신속, 안전한 통관과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미국에 선적되는 화물을 출발하기 전 위험을 평가하여 해외 항구에서 고위험 화물을 미리 검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58개 항구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으로 선적되는 화물의 80% 이상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주요 물품의 통관시 유의사항

미국으로의 수출시 수입통관관리는 물품에 따라 관장하는 기관이 각기 상이하다. <표 2>와 같이 식품, 의료기기, 농축산물, 완구, 자동차 등은 수입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해져있으며, 별도의 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가 없으면, 수입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對미 수출자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2 미국의 품목별 수입통관 관리기관

수입관리기관	담당 분야
식약청(FDA)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 사료 및 수의사용품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및 검사 업무 담당
농림부 및 식품안전검사청 (USDA & APHIS)	농축산물 담당
소비자보호 안전위원회(CPSC)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및 자전거 등 소비자안전용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및 검사업무 수행
환경청(EPA)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허가 담당
연방통신위원회(FCC)	셀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 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업무 담당
수산야생동물청(FWS)	어패류,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 허가업무 담당

우선 미국은 식품에 대해 식약청(FDA) 관리 하 식품제조 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회사는 해외제조 시설을 FDA에 미리 등록하고, 수출할 때 마다 그 내용을 미 FDA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시설은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 시설이며 식당은 제외한다. 등록대상 식품은 건강보조

식품, 음료수, 과일, 야채, 수산물, 유제품, 냉동제품, 베이커리, 통조림, 캔디, 동물 사료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사전통보내용은 해당 식품의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수출업체명 등이며, 항공은 도착 4시간 전, 해상은 도착 8시간 전 보고 및 FDA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등록 시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FDA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수입 식품은 도착항에서 억류된다. 그리고 사전신고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CBP가 FDA를 대신해서 벌금 부과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3년 249건의 통관 보류건이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음료(116건), 멸치(48건), 수산물(55건), 과자(25건), 인삼류(24건), 소스류(22건) 순으로 통관 보류가 발생했다. 통관불허 사유는 수산물의 경우 내장을 미제거하거나, HACCP 미인증인경우가 대다수였고, 아이스크림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땅콩분을 라벨링에 미표기한 것, 건강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라벨링에 기재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및 자전거 등 소비자안전용품은 CPSC(소비자보호안전위)가 관리하며, 수출시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판정받은 증명서 첨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대상물품은 완구, 유아용품, 섬유제품, 헬멧, 자전거, 페인트 등 47개물품이다. 해당물품은 CPSC(소비자보호안전위)가 미CBP와 독자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통관보류, 폐기·반송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항목은 납, 가소제 등 중금속 성분 기준치 이상 함유 여부로 알려졌다. 최근 미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강화된 미 소비자안전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통관 보류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안전용품 수출자는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셀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 무선통신기기, 어패류,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은 수입허가 담당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주요 물품의 통관 피해 사례와 대응방법

한-미 FTA 발효 이후 넓어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미국에 새로운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농수산물·식품 및 소비자제품 중심으로 위생·안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고, 법 집행도 매우 엄격하다. 특히 미 CBP의 C-TPAT와 선적정보 도착전 송부, 미 FDA의 식품제조시설 사전등록 및 식품선적정보 사전송부 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대표적인 수입통관 절차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등록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미 FDA는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데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은 각종 원재료 구매·조달 및 제품의 제조·수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한다. 미 CBP, FDA 등의 사후 자료제출요구에 대비해서 5년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 보관은 우리기업이 반드시 기억해야할 부문이다.

**사례 1** 한국산 기능성 건강식품 - 통관불허

2012.11월, 한국에서 잘 팔리는 기능성 건강제품을 수입했으나 미 FDA에서 포장박스에 표기된 제품의 효능이 의약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통관을 불허하고 반송/폐기 처분 명령(약 15만불 피해)

-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식품이라도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필요

**사례 2** 한국산 눈마사지기 / 레이저 치술 - 통관불허

2012.12월, 한국의 유망중소기업이 생산한 눈마사지기 및 레이저치술을 미국으로 수입했으나, 미 FDA에서 포장박스에 표기된 문구가 의료기기로 볼 소지가 있다며 통관 불허

- 한국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및 의료기 제조시설 등록 필요

**사례 3** 한국산 샴푸 - 통관불허

한국에서 제조한 샴푸를 수차례 이상 없이 미국으로 수입통관해 왔으나 미FDA에서 모발재생 효능이 있다는 광고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통관 불허

- 모발 치료가 있는 제품은 샴푸라도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필요

**사례 4** 한국산 홍삼드링크 - 통관불허

미량의 녹용 성분이 첨가된 한국산 홍삼 드링크를 미국으로 수입해 왔으나 녹용의 축산물 검역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미 USDA에서 통관불허

- 식품 또는 기능성 드링크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녹용 등 육류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수출국 발행 축산물검역증 필요

**사례 5** 한국산 멸치 - 통관불허

한국에서 수입한 멸치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FDA에서 통관불허

- 일정 길이 이상의 멸치는 내장을 제거해야만 수입 가능

## 원산지 판정·관리 종합 솔루션

**FTA** **PASS**의 주요 기능으로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합시다

윤호성 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지난 11월 한-중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4%에 이르게 될 예정이다.

FTA 영토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이는 직접 수출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국내 수출기업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등에게 모두 해당된다. 납품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고, 관세청이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금번호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FTA-PASS의 주요 기능 가운데 ① 다양한 방법의 원산지 일괄판정 기능과 ② 원산지 지위 변동 모니터링을 소개한다.

# 01

## 원산지일괄판정 기준 다양화

원산지일괄판정 기능은 물품에 대해 현재 발효된 모든 협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일괄 판정하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물품별(매출일 기준)에 따라 판정되었으나, 최근 기업의 원산지정보 요구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별(생산일 기준), 매출처별, 요청서별 등 판정 수행 단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 표1 원산지 판정의 기준과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물품별	매출일 기준	판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한 뒤, 완제품의 매출일을 기준으로 판정
	생산일 기준	판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한 뒤, 완제품의 생산일을 기준으로 판정
매출처별		매출처를 기준으로 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선택한 고객사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을 판정
요청서별		고객사로부터 수신한 원산지요청서를 기준으로 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선택한 원산지요청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을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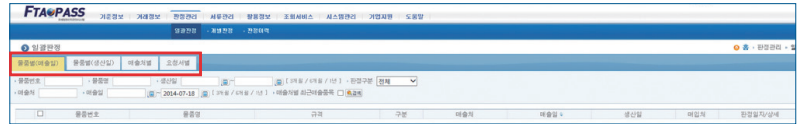


###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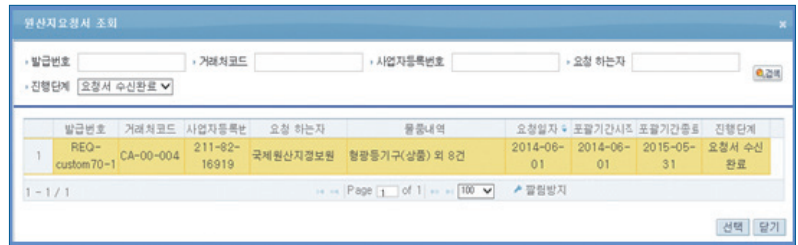
- 1 원산지일괄판정 기능을 각 기준별로 판정하려면, 먼저 FTA-PASS(<http://www.ftapass.or.kr>)에 로그인 후 [판정관리 > 일괄판정] 메뉴를 클릭하고,



- ② 물품별(매출일), 물품별(생산일), 매출처별, 요청서별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탭을 클릭하여 일괄판정을 수행한다.



(예) 요청서별 일괄판정 수행 결과



본 기능은 기업이 필요한 물품, 시점, 필요처 등에 다양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원산지 판정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02

수입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원산지 지위변동을  
‘모니터링’ 하려면?

우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납품하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주요 원자재는 수입품입니다. 수입시점에 따라 수입원자재 가격이 변동되고 이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의 판정결과가 달라질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후 변동되는 가격으로 인해 발급한 확인서 상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바뀌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모니터링’ 기능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물품이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원산지 지위가 변경될 경우 원산지확인서 목록에서 원산지 지위 변동 여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수입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이 큰 기업에서 매우 유용하다.





④ 원산지 지위가 변동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원산지확인서를 보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용에러나 문의가 있는 경우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031-600-0770)으로 문의하거나 현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지원 신청 FTA-PASS 현장지원 안내

FTA-PASS 사후관리팀이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FTA-PASS 사용자
- ▶ 지원내용 : FTA-PASS 사용관련 애로해소, 협력사 교육 ➔ 자료입력방법,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등 애로사항 해결
- ▶ 신청방법 : FTA-PASS 사이트 접속
  - ➔ 기업지원 > 현장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① 신청서 접수	② 사전준비	③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접속 (ftapass.or.kr)</li> <li>• 신청서 작성 및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일정협의</li> <li>• 입력자료 작성</li> <li>• 증빙서류 준비 (원산지확인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업 직접방문</li> <li>• 준비자료 검토</li> <li>• FTA-PASS 적용</li> <li>• 사후관리 안내</li> </ul>

# 지도로 보는 2014 특혜 수출입실적(1월~10월)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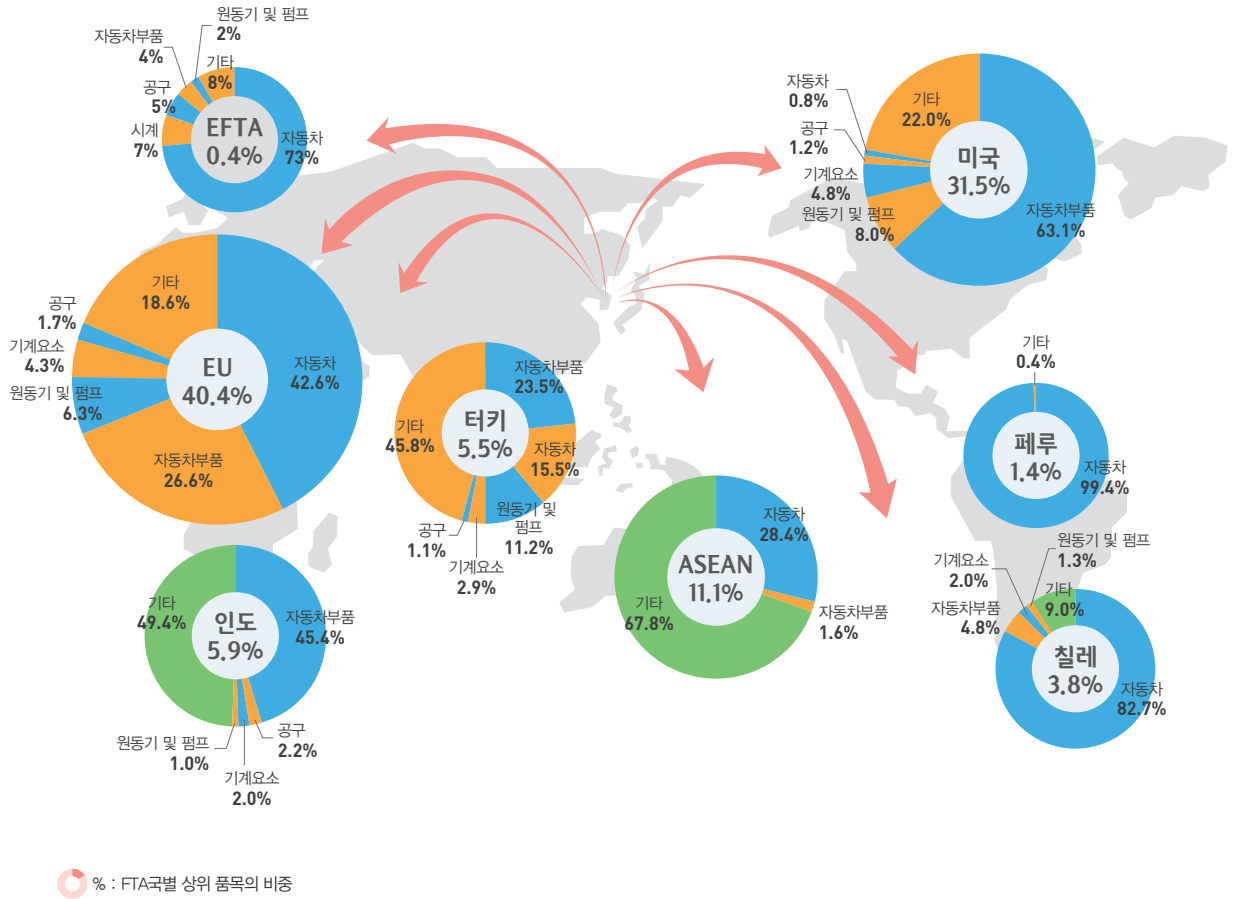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특혜 수출입 실적을 알아보았다.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광산물,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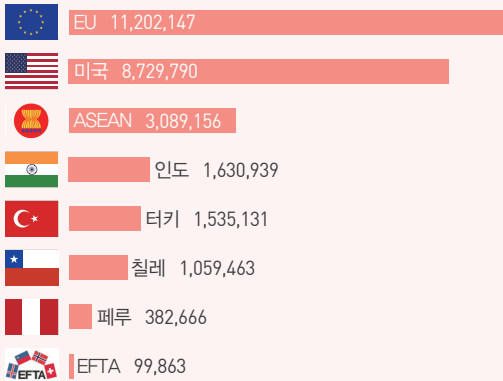
# 수출 기계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7,729,155 (47%)	31,147,964 (53%)	58,877,119 (100%)



## 협정별 기계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27,72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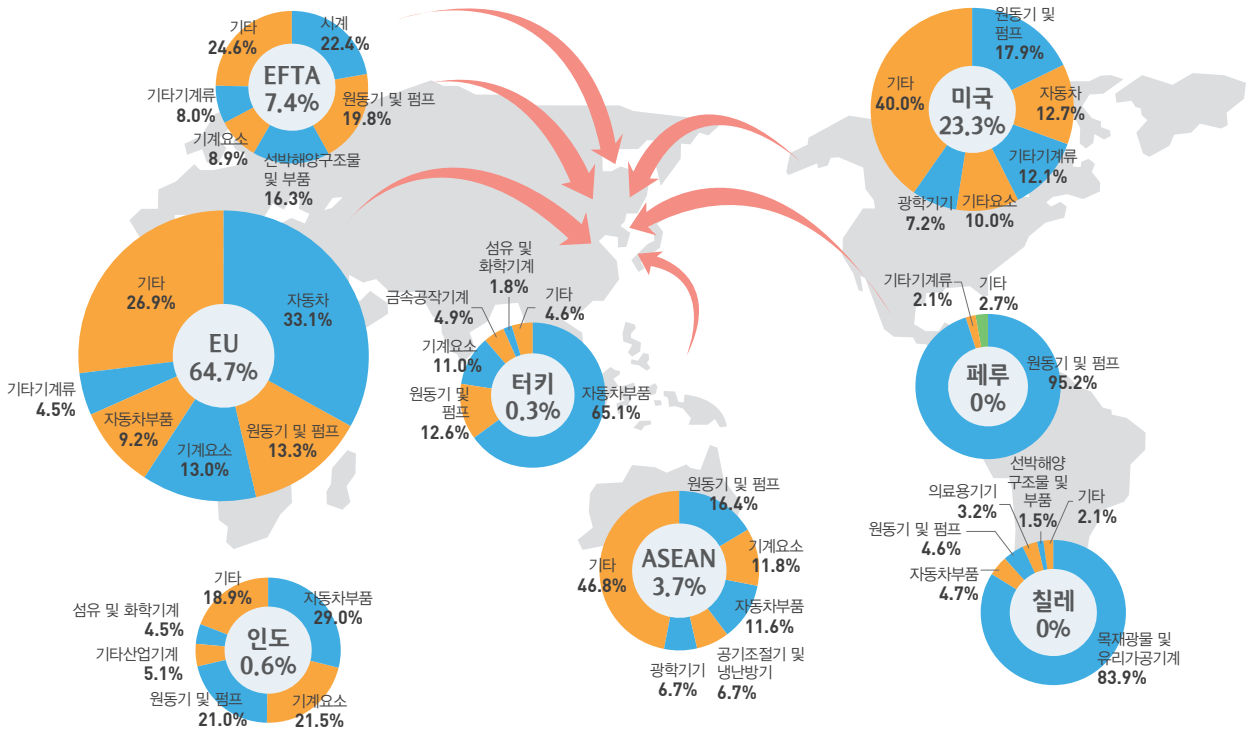
## 기계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부품	9,840,596	35.5
2	자동차	6,839,653	24.7
3	원동기 및 펌프	1,848,579	6.7
4	섬유 및 화학기계	1,186,240	4.3
5	기계요소	1,175,502	4.2
6	금속공작기계	1,040,593	3.8
7	광학기기	436,851	1.6
8	공구	410,968	1.5
9	기타 산업기계	238,464	0.9
10	시계	10,887	0.0
총계		27,729,155	100.0

# 수입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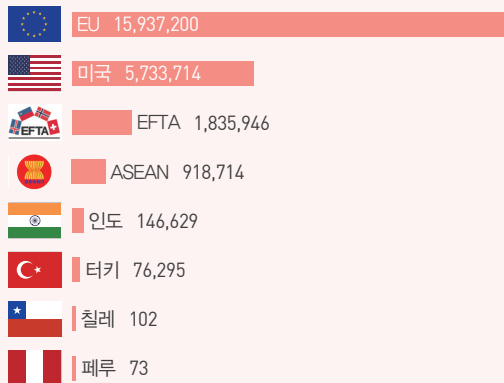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4,648,673 (74%)	8,886,023 (26%)	33,534,697 (100%)



## 협정별 기계류 특혜 수입금액

총액 24,648,673



## 기계류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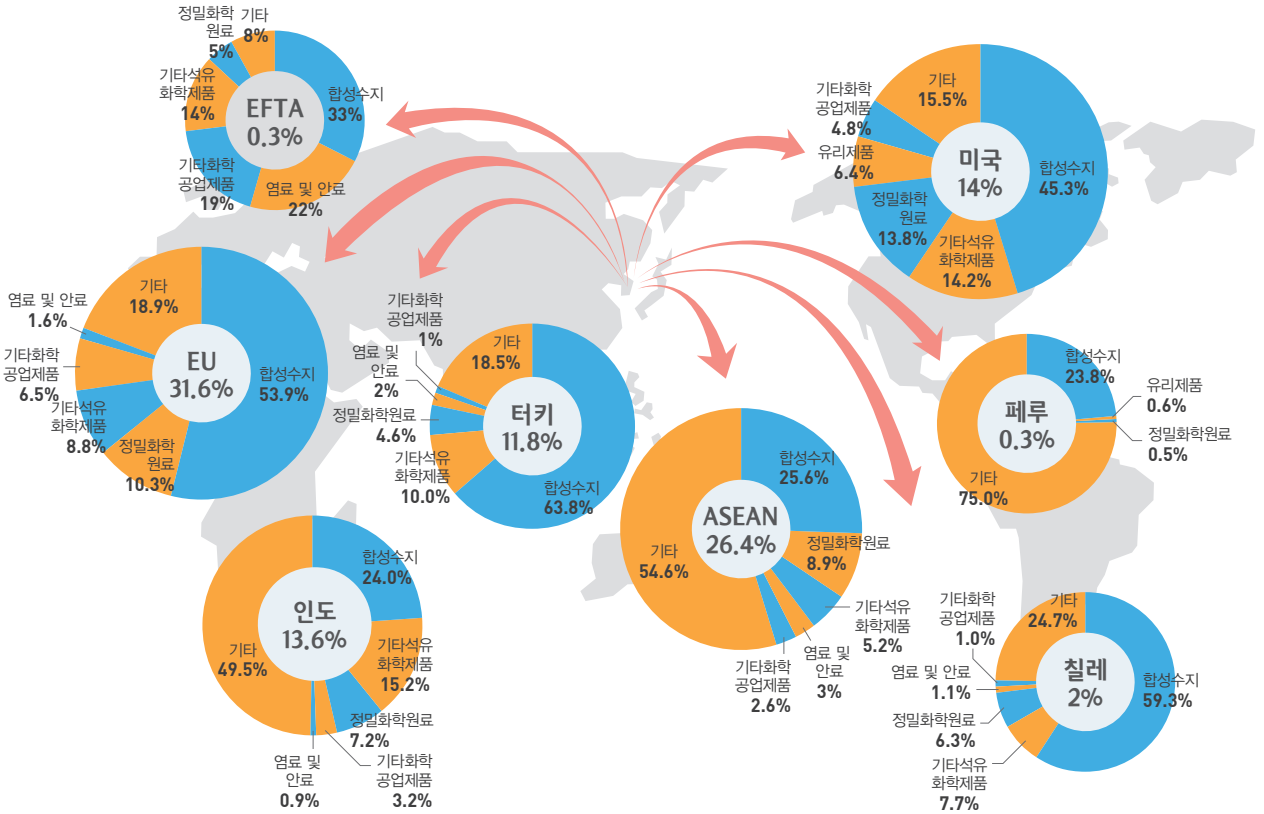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6,009,371	24.4
2	원동기 및 펌프	3,705,290	15.0
3	기계요소	2,951,924	12.0
4	자동차부품	1,983,885	8.0
5	기타 기계류	1,612,533	6.5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369,059	5.6
7	섬유 및 화학기계	877,088	3.6
8	기타 산업기계	749,432	3.0
9	금속공작기계	642,705	2.6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38,485	2.2
총계		24,648,673	100.0

# 수출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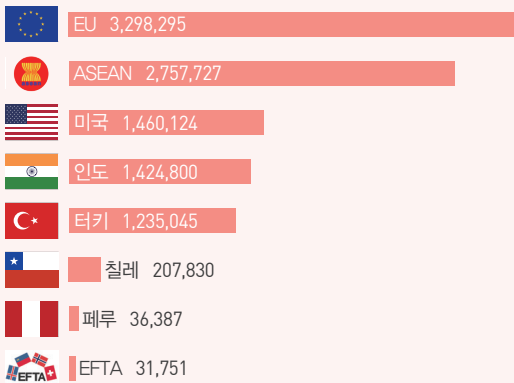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0,451,959 (55%)	8,717,477 (45%)	19,169,436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10,451,959



##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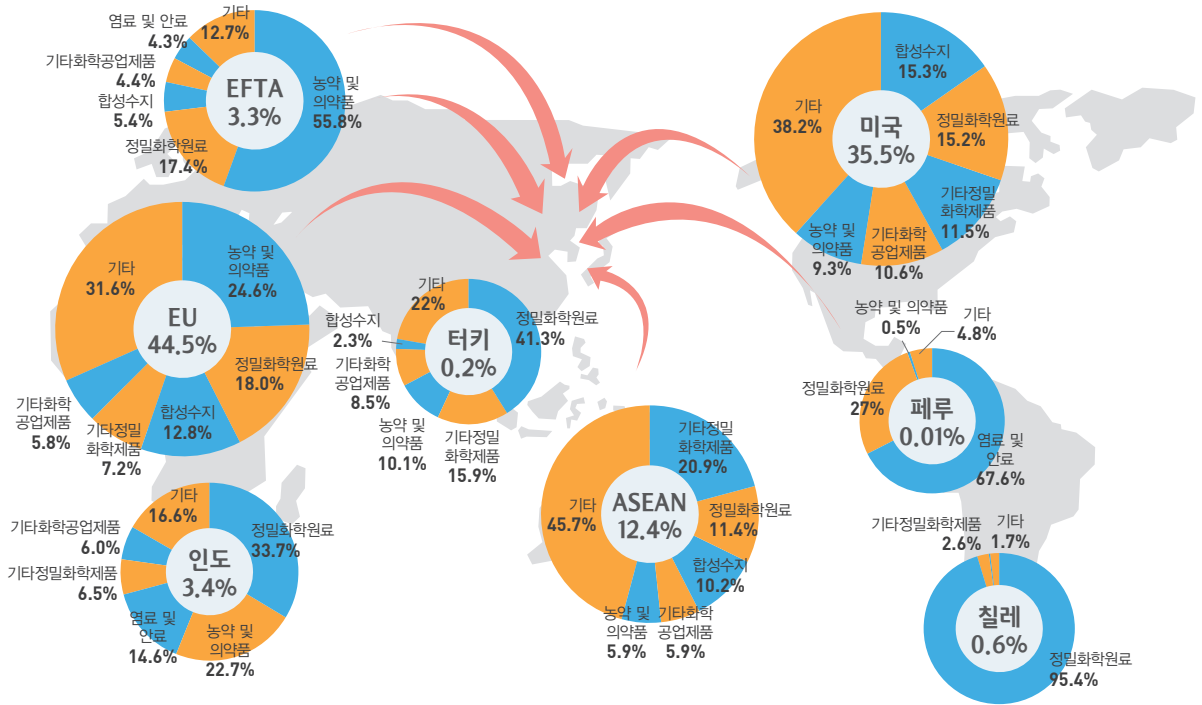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4,416,203	42.3
2	기타 석유화학제품	1,004,159	9.6
3	정밀화학원료	959,584	9.2
4	종이제품	583,082	5.6
5	기타 화학공업제품	423,983	4.1
6	염료 및 안료	209,093	2.0
7	유리제품	180,606	1.7
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81,218	0.8
9	연마제품	64,192	0.6
10	타일 및 도자기제품	61,639	0.6
총계		10,451,9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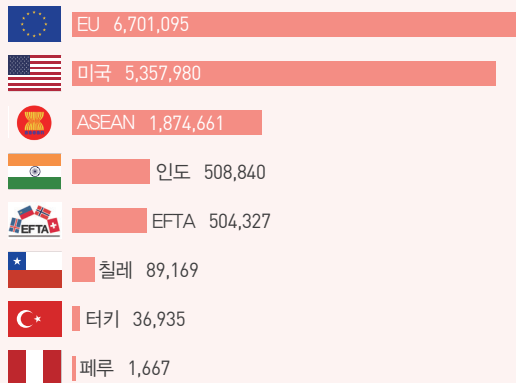
# 수입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5,074,674 (75%)	4,917,077 (25%)	19,991,751 (100%)



##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15,074,674



## 화학공업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농약 및 의약품	2,654,538	17.6
2	정밀화학원료	2,591,352	17.2
3	합성수지	1,914,038	12.7
4	기타 정밀화학제품	1,548,981	10.3
5	기타 석유화학제품	1,154,553	7.7
6	기타 화학공업제품	1,123,765	7.5
7	비누치약 및 화장품	941,250	6.2
8	염료 및 안료	568,482	3.8
9	유리제품	466,209	3.1
10	타일 및 도자기제품	273,007	1.8
총계		15,074,6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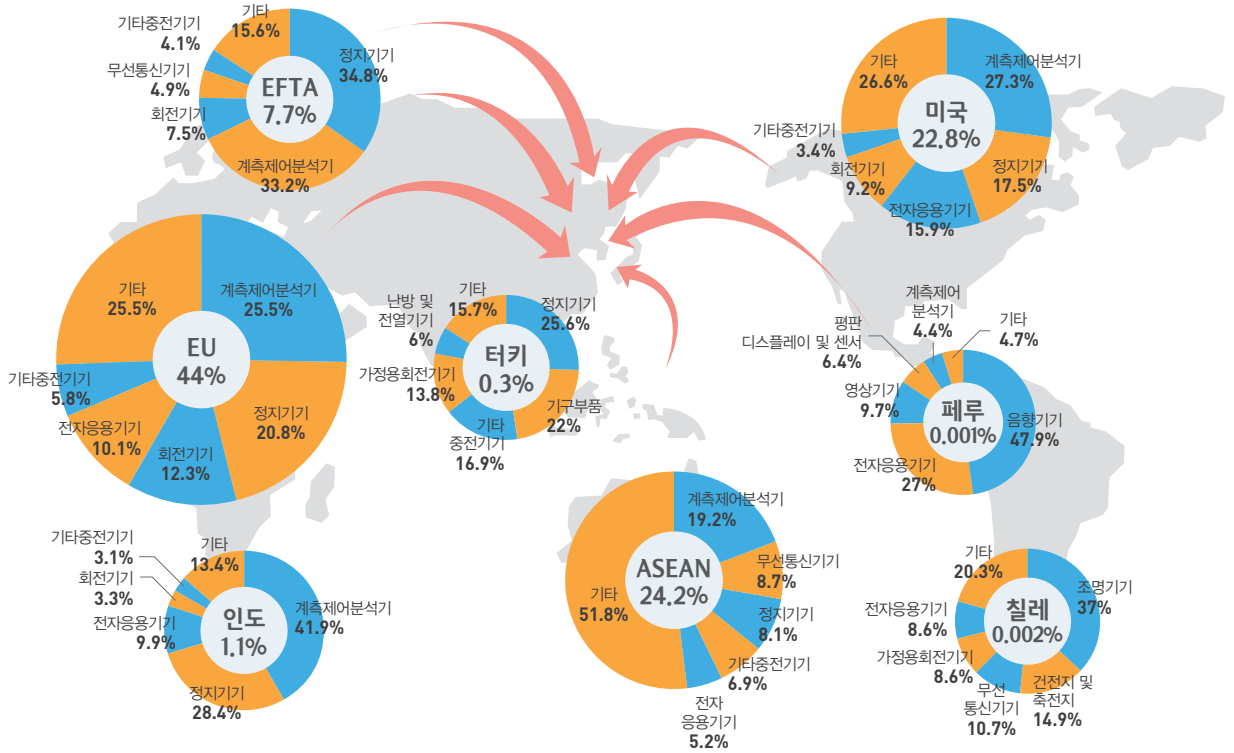




# 수입 전기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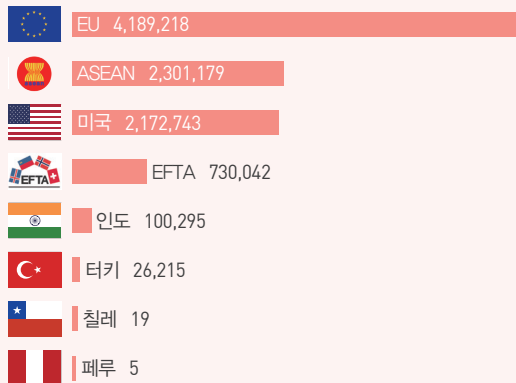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9,519,716 (35%)	17,587,749 (65%)	27,107,465 (100%)



##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9,519,716



## 전기전자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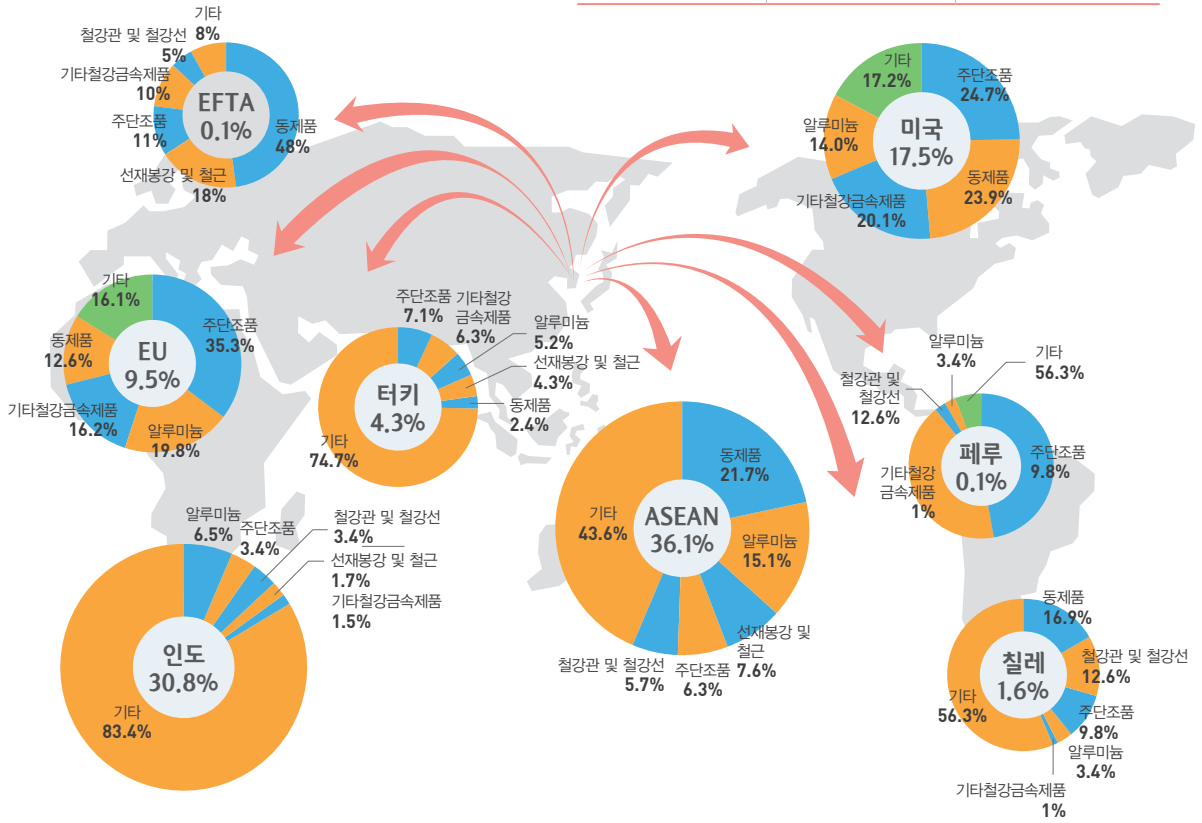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2,386,339	25.1
2	정지기기	1,728,140	18.2
3	전자응용기기	927,471	9.7
4	회전기기	853,372	9.0
5	기타 중전기기	515,644	5.4
6	무선통신기기	499,236	5.2
7	기구부품	372,030	3.9
8	전선	311,187	3.3
9	조명기기	268,583	2.8
10	난방 및 전열기기	169,317	1.8
총계		9,519,716	100.0

# 수출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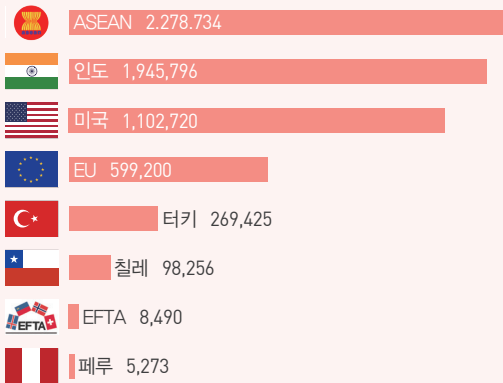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6,307,893 (35%)	11,830,518 (65%)	18,138,411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6,307,893



##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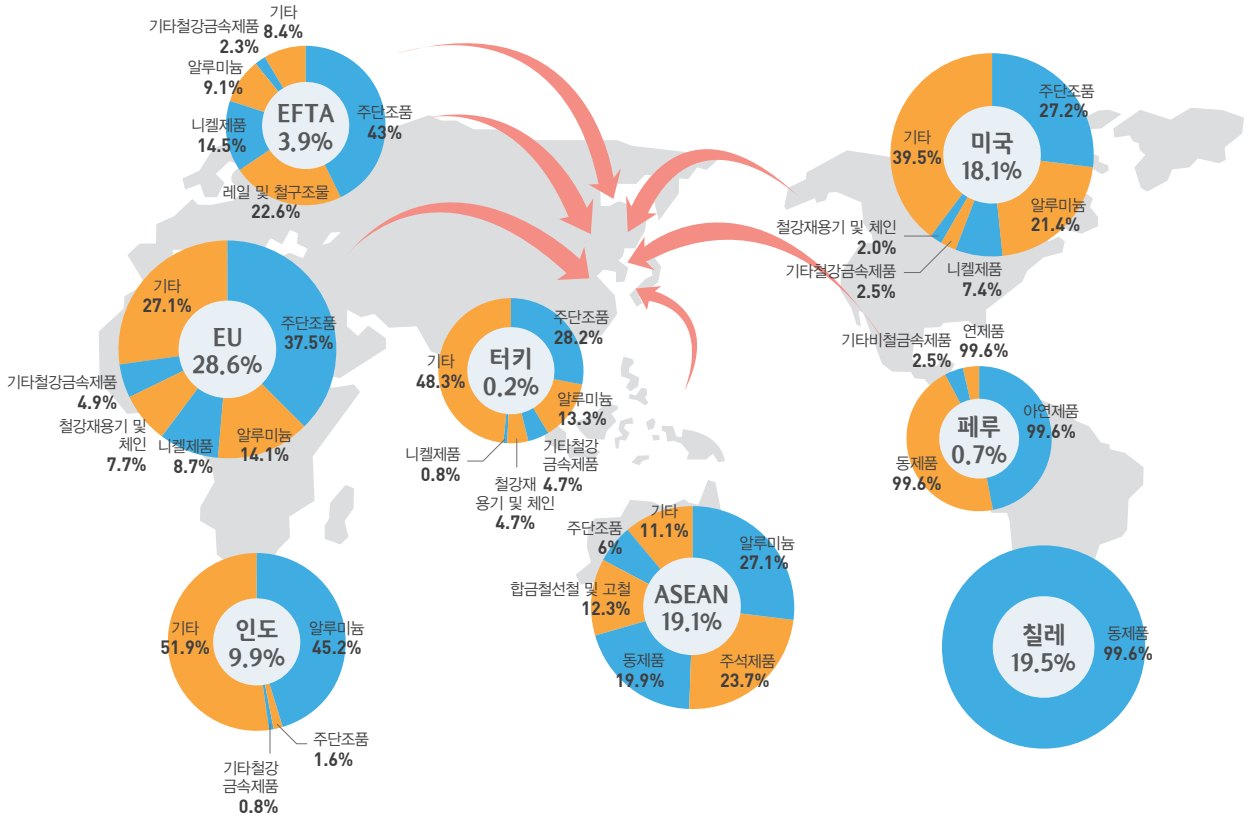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1,913,233	30.3
2	동제품	879,959	14.0
3	알루미늄	762,894	12.1
4	주단조품	726,528	11.5
5	기타 철강금속제품	454,580	7.2
6	선재봉강 및 철근	219,047	3.5
7	철강관 및 철강선	208,490	3.3
8	레일 및 철구조물	65,675	1.0
9	식탁용구	26,608	0.4
10	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제품	20,181	0.3
총계		6,307,8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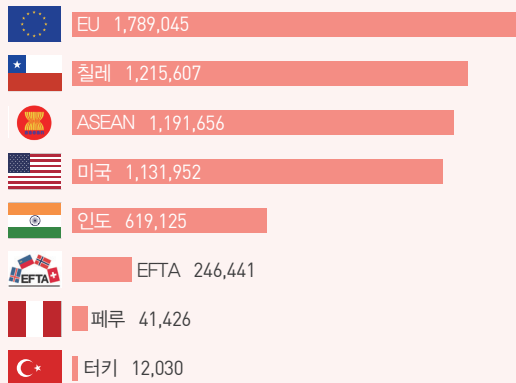
# 수입 철강금속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6,247,280 (56%)	4,973,962 (44%)	11,221,241 (100%)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6,247,280



철강금속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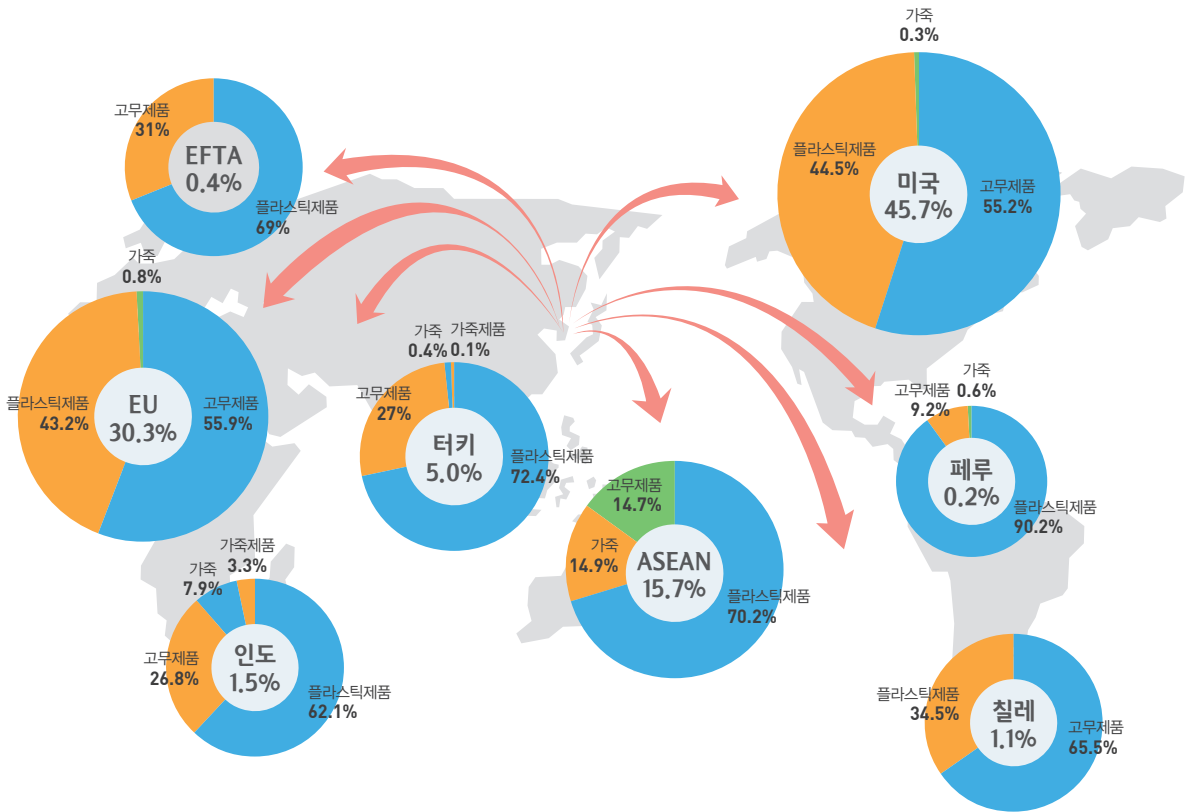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동제품	1,680,871	26.9
2	주단조품	1,173,733	18.8
3	알루미늄	1,121,325	17.9
4	합금철선철 및 고철	366,346	5.9
5	니켈제품	278,613	4.5
6	기타 비철금속제품	236,795	3.8
7	철강재 용기 및 체인	182,843	2.9
8	강판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159,403	2.6
9	기타 철강금속제품	138,961	2.2
10	아연제품	120,850	1.9
총계		6,247,280	100.0

# 수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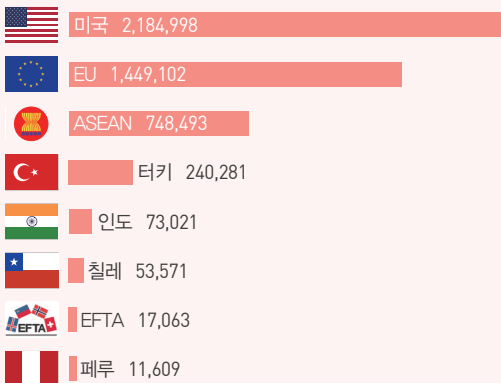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778,138 (85%)	859,851 (15%)	5,637,989 (100%)



○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4,778,138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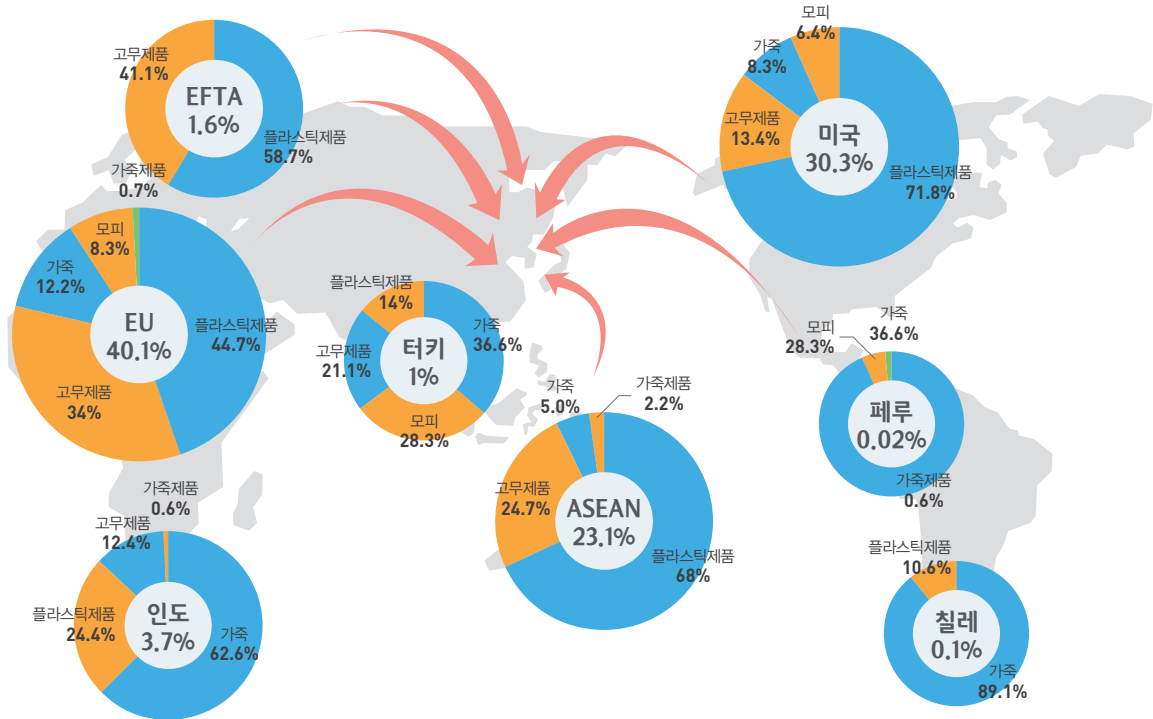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2,385,101	49.9
2	고무제품	2,252,470	47.1
3	가죽	135,758	2.8
4	가죽제품	4,667	0.1
5	모피	142	0.0
총계		4,778,138	100.0

# 수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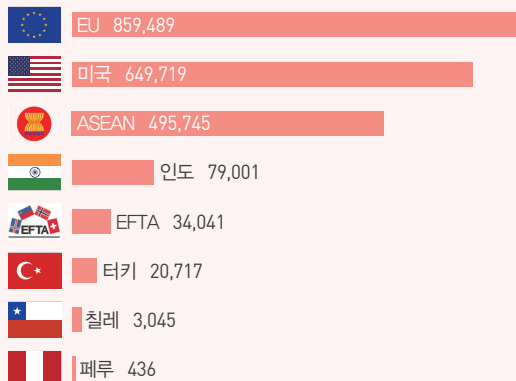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142,194 (81%)	496,951 (19%)	2,639,145 (100%)



##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2,142,194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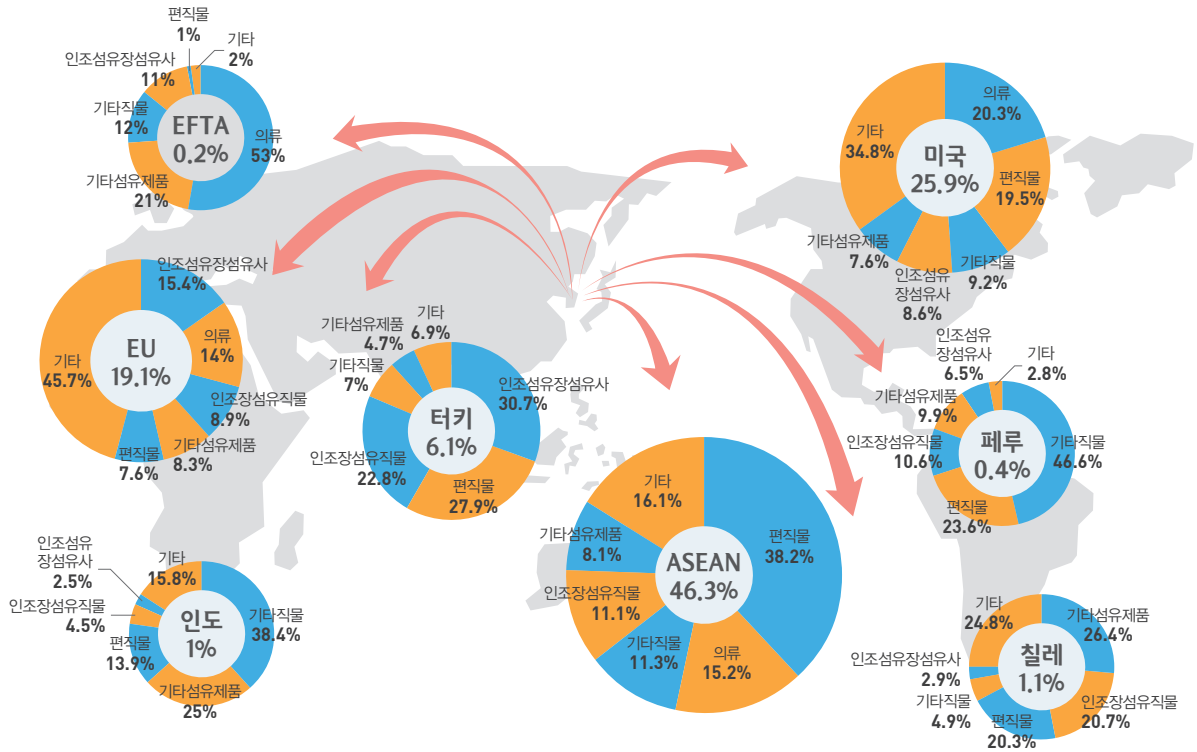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1,230,908	57.5
2	고무제품	530,055	24.7
3	가죽	243,573	11.4
4	모피	118,893	5.6
5	가죽제품	18,764	0.9
6	임산부산물	1	0.0
총계		2,142,194	100.0

# 수출 섬유류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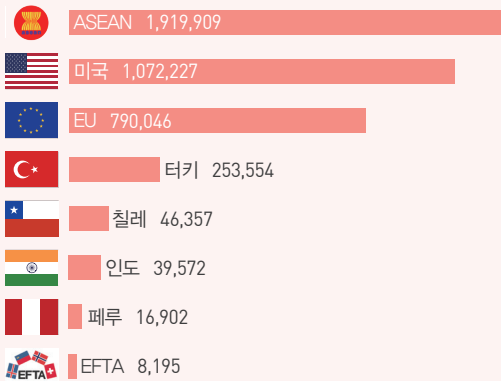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146,763 (58%)	3,043,841 (42%)	7,190,604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섬유류 특혜 수출금액

총액 4,146,763



## 섬유류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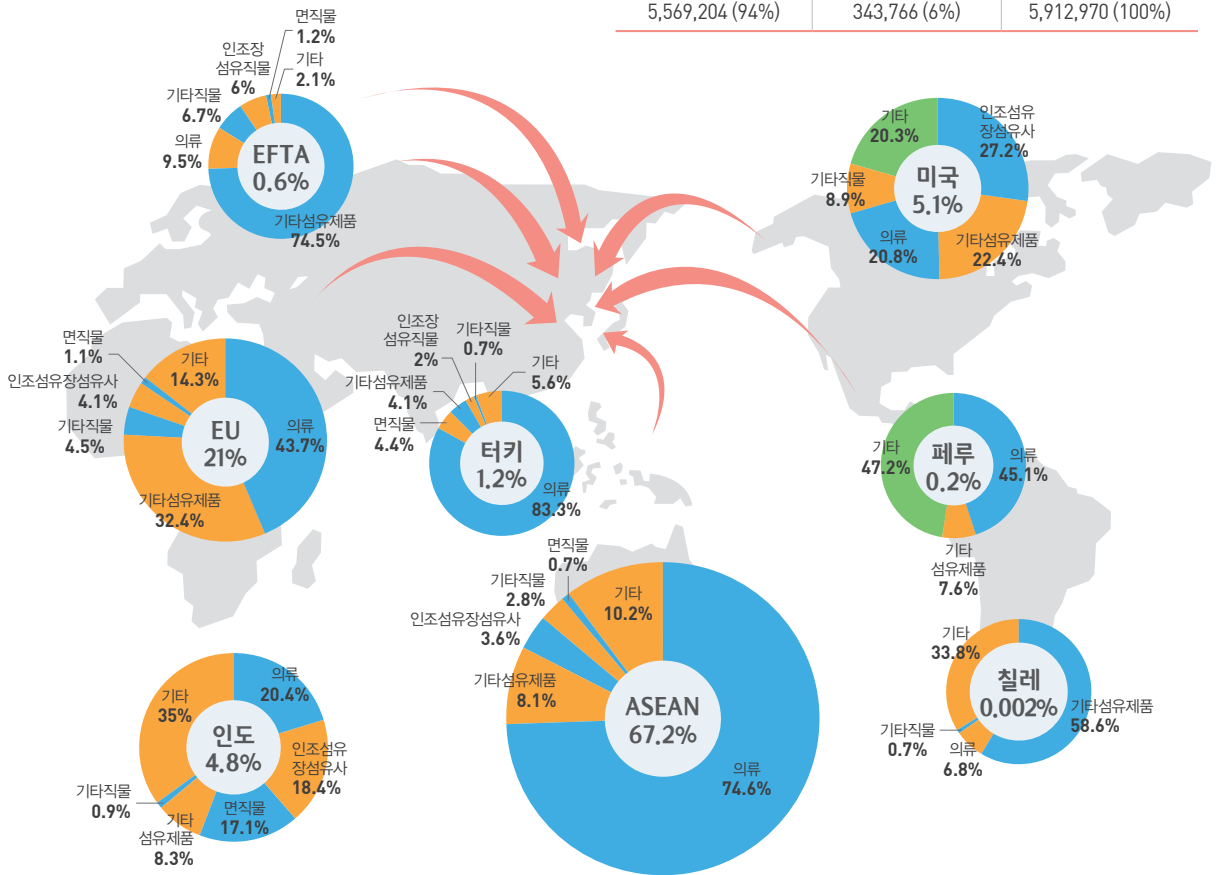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편직물	1,092,884	26.4
2	의류	626,551	15.1
3	인조섬유	514,417	12.4
4	인조장섬유직물	433,135	10.4
5	기타 직물	402,223	9.7
6	인조섬유장섬유사	356,030	8.6
7	기타 섬유제품	339,582	8.2
8	인조단섬유직물	67,753	1.6
9	재생섬유	66,160	1.6
10	견직물	7,524	0.2
총계		4,146,763	100.0

# 수입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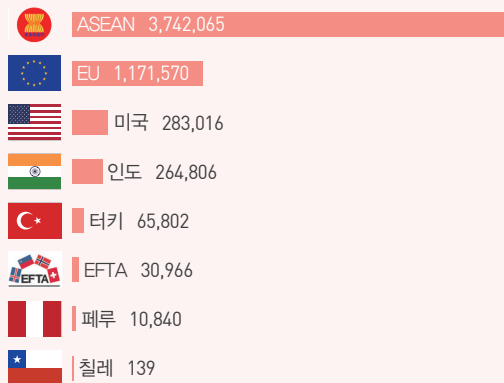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569,204 (94%)	343,766 (6%)	5,912,970 (100%)



## 협정별 섬유류 특혜 수입금액

총액 5,569,204



## 섬유류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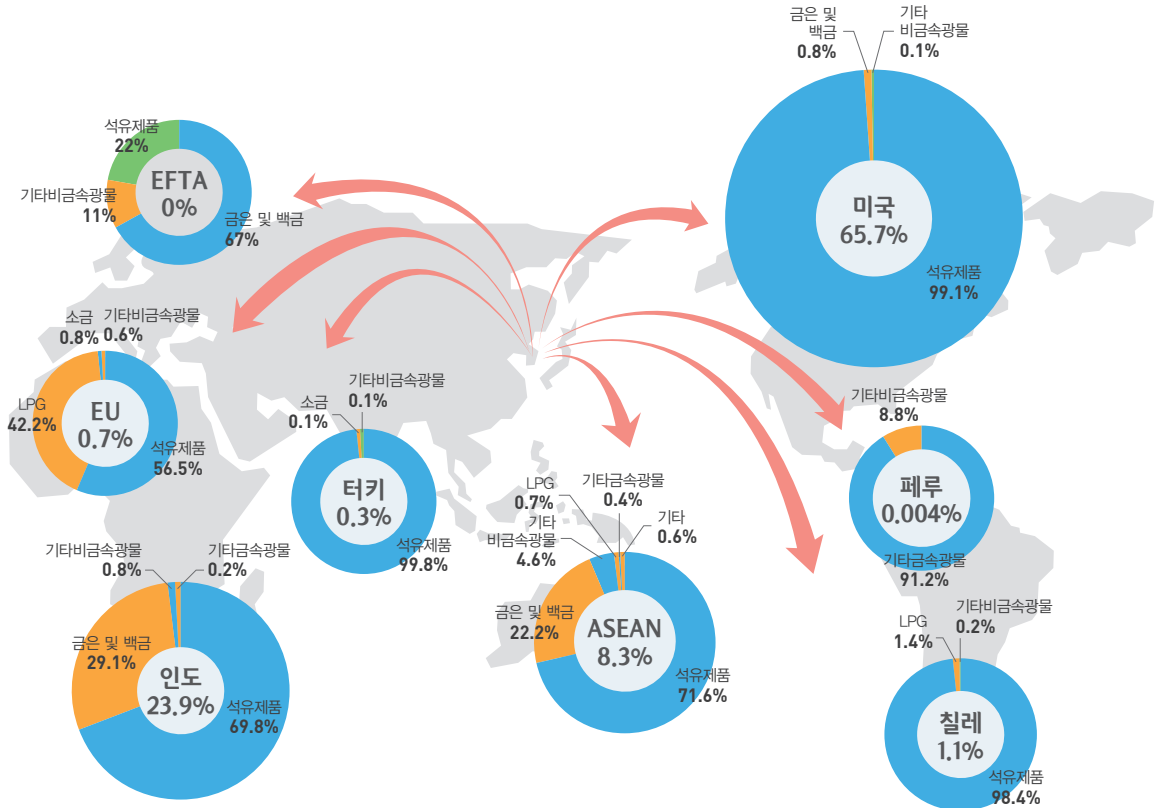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3,476,930	62.4
2	기타 섬유제품	792,963	14.2
3	인조섬유장섬유사	309,588	5.6
4	천연섬유사	226,289	4.1
5	기타 직물	188,114	3.4
6	면직물	89,619	1.6
7	재생섬유	65,169	1.2
8	모직물	54,622	1.0
9	인조단섬유직물	44,515	0.8
10	편직물	40,424	0.7
총계		5,569,204	100.0

# 수출 광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972,361 (28%)	10,451,641 (72%)	14,424,002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광산물 특혜 수출금액

총액 3,972,361



## 광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3,555,539	89.5
2	금은 및 백금	370,580	9.3
3	기타 비금속광물	24,036	0.6
4	LPG	15,326	0.4
5	기타 금속광물	3,484	0.1
6	니켈광	1,191	0.0
7	소금	899	0.0
8	동광	720	0.0
9	흑연	206	0.0
10	고령토	145	0.0
총계		3,972,36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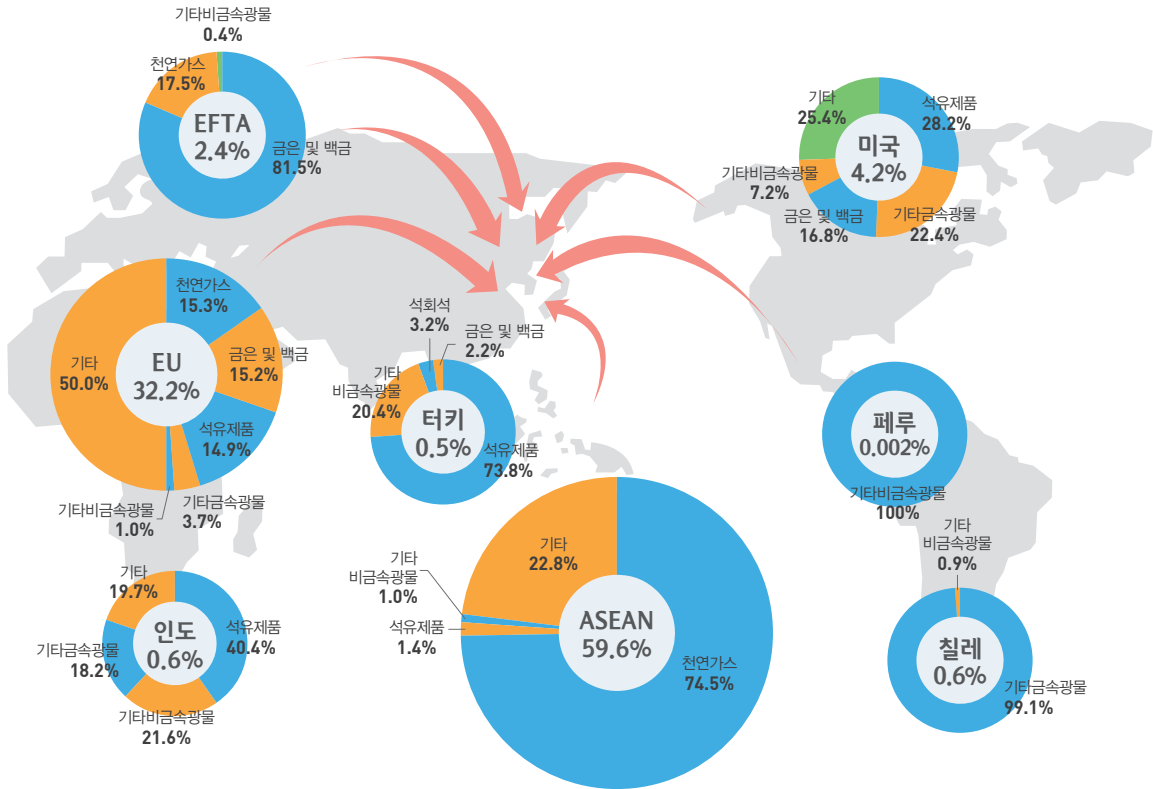


# 수입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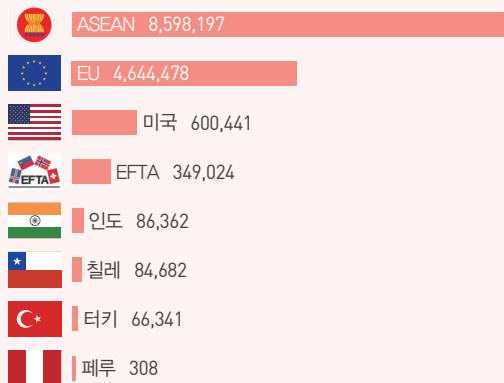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4,429,832 (51%)	13,832,217 (49%)	28,262,050 (100%)



## 협정별 광산물 특혜 수입금액

총액 14,429,832



## 광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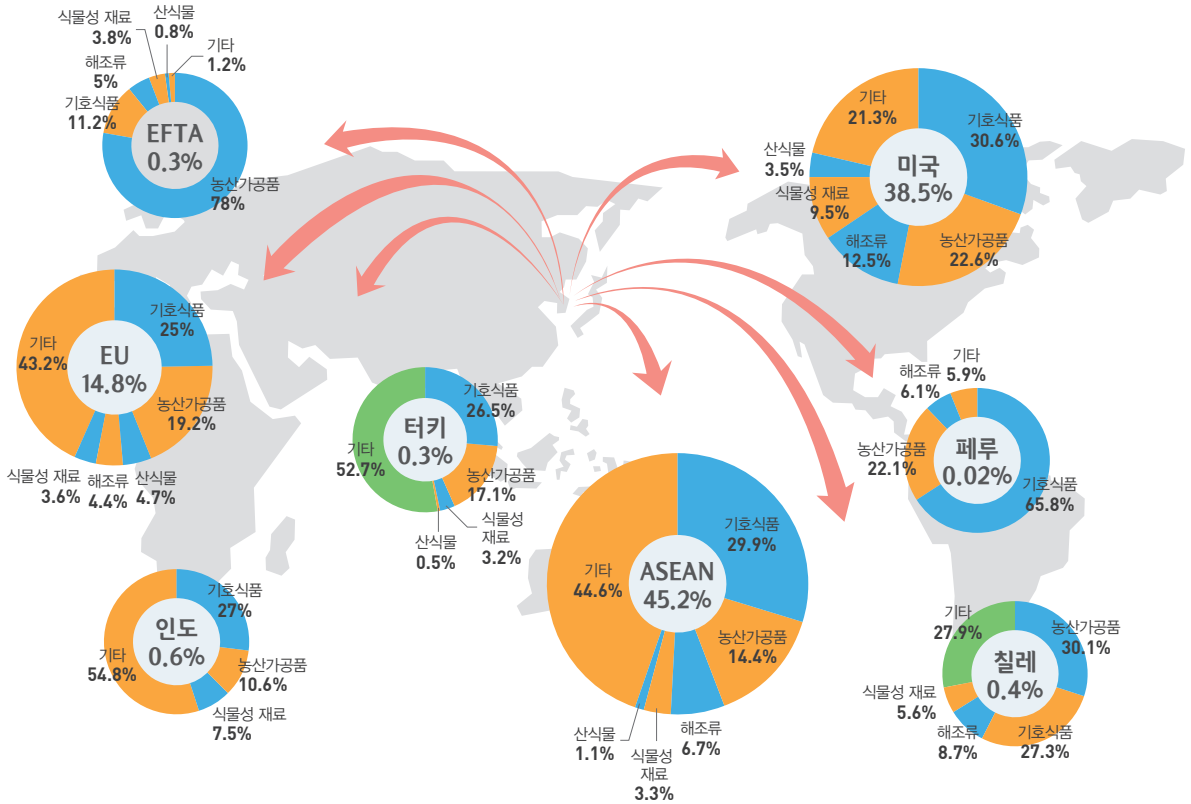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7,178,839	49.7
2	원유	4,373,357	30.3
3	금은 및 백금	1,098,553	7.6
4	석유제품	1,066,231	7.4
5	기타 금속광물	423,201	2.9
6	기타 비금속광물	210,842	1.5
7	고령토	36,593	0.3
8	소금	19,191	0.1
9	석탄	11,861	0.1
10	흑연	2,762	0.0
총계		14,429,832	100.0

# 수출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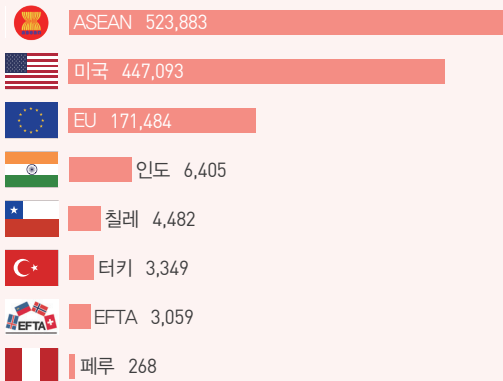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160,023 (70%)	504,087 (30%)	1,664,111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금액 총액 1,160,023



## 농림수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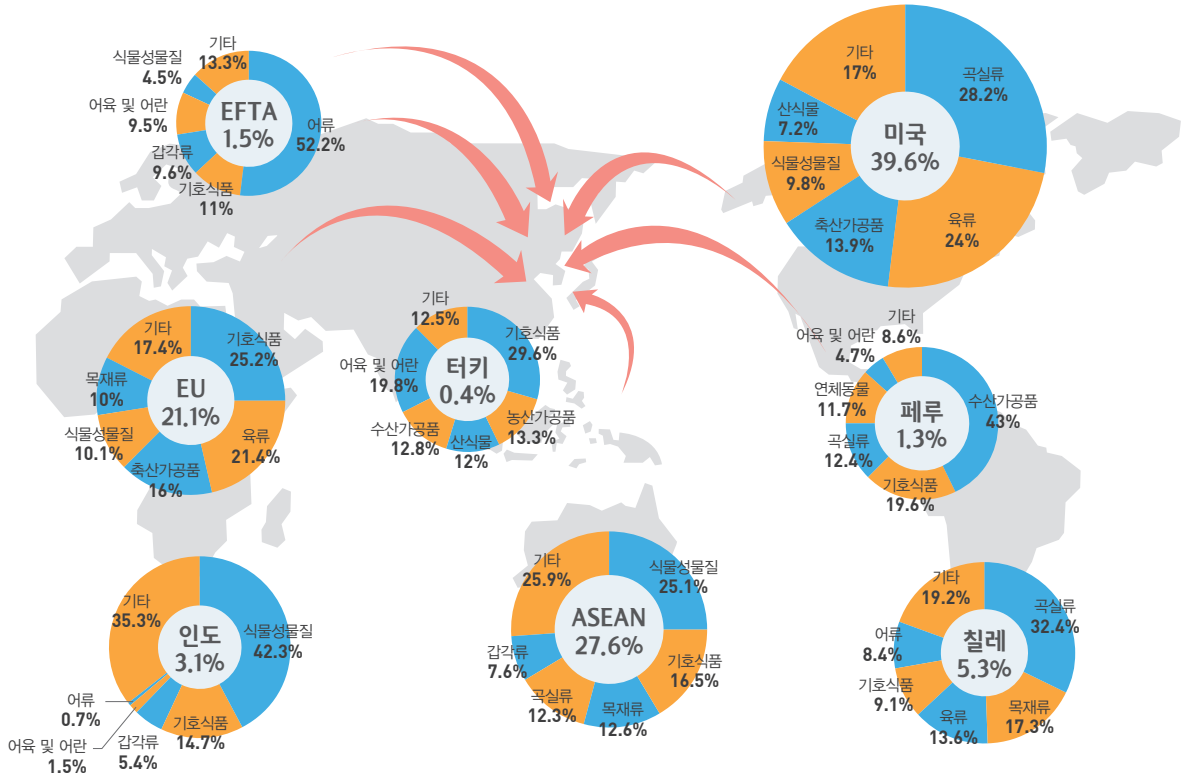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340,994	29.4
2	농산가공품	214,537	18.5
3	해조류	98,852	8.5
4	식물성 재료	66,861	5.8
5	축산가공품	52,459	4.5
6	곡실류	39,964	3.4
7	수산가공품	39,909	3.4
8	산식물	29,194	2.5
9	목재류	10,431	0.9
10	축산부산물	3,044	0.3
총계		1,160,023	100.0

# 수입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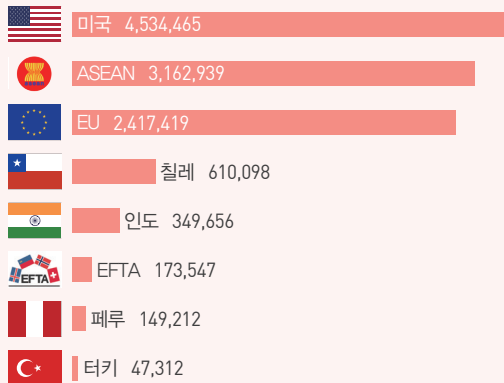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1,444,649 (73%)	4,189,257 (27%)	15,633,906 (100%)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수입금액

총액 11,444,649



## 농림수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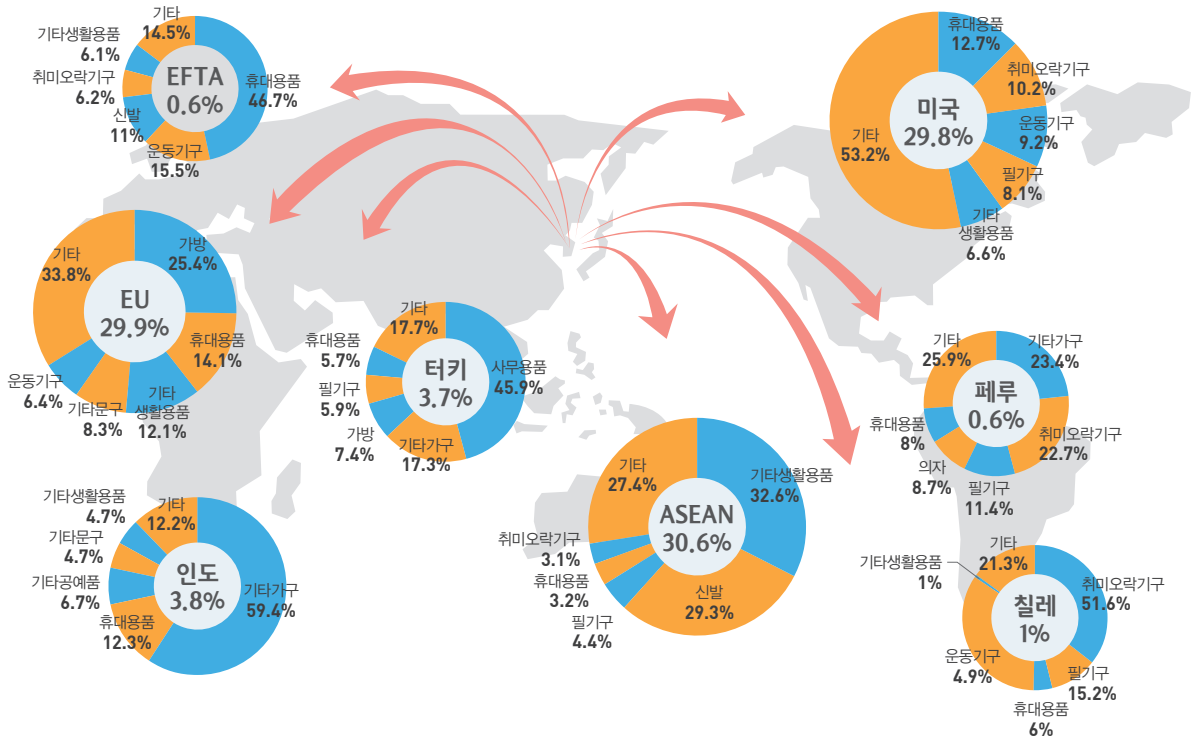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곡식류	2,002,742	17.5
2	육류	1,741,330	15.2
3	식물성물질	1,637,075	14.3
4	기호식품	1,611,654	14.1
5	축산가공품	1,072,859	9.4
6	목재류	804,194	7.0
7	농산가공품	524,544	4.6
8	산식물	454,490	4.0
9	수산가공품	368,988	3.2
10	식물성 재료	128,240	1.1
총계		11,444,649	100.0

# 수출 생활용품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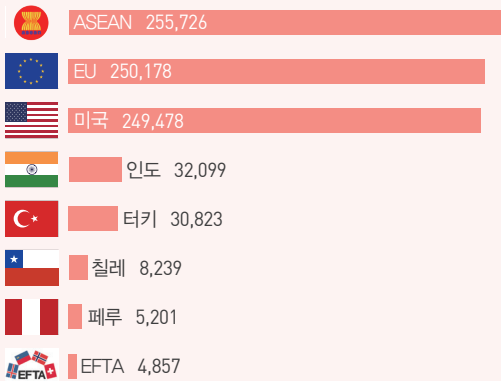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836,600 (63%)	487,765 (37%)	1,324,365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836,600



## 생활용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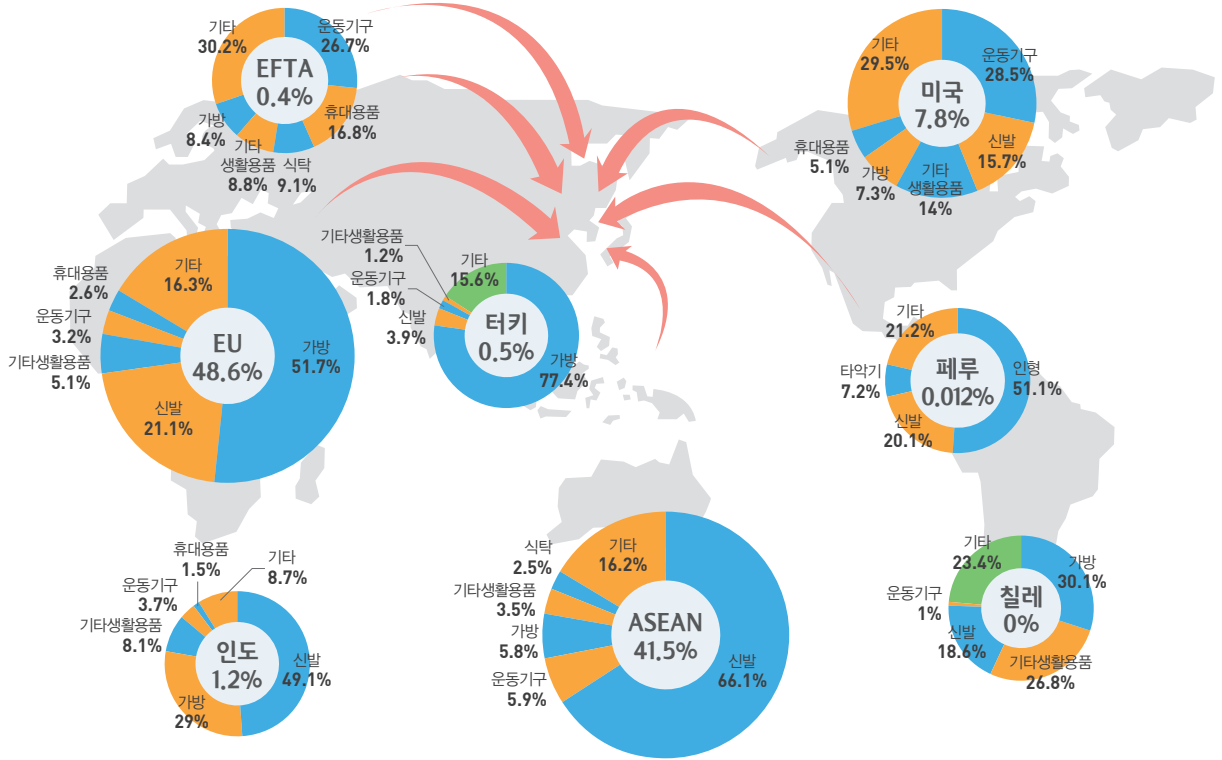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생활용품	133,582	16.0
2	가방	112,946	13.5
3	신발	101,425	12.1
4	휴대용품	83,852	10.0
5	취미 오락기구	56,149	6.7
6	운동기구	44,496	5.3
7	필기구	43,693	5.2
8	기타 악기	28,989	3.5
9	기타 완구	17,524	2.1
10	미술용품	13,236	1.6
총계		836,600	100.0

# 수입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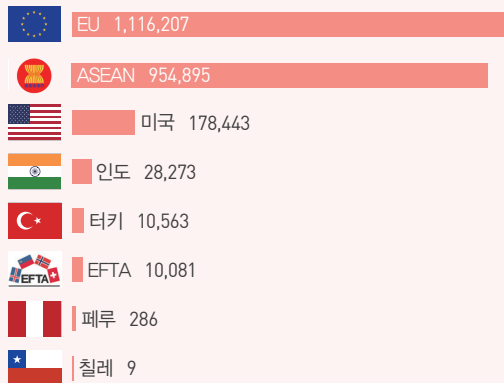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298,757 (85%)	420,781 (15%)	2,719,537 (100%)



##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2,298,757



## 생활용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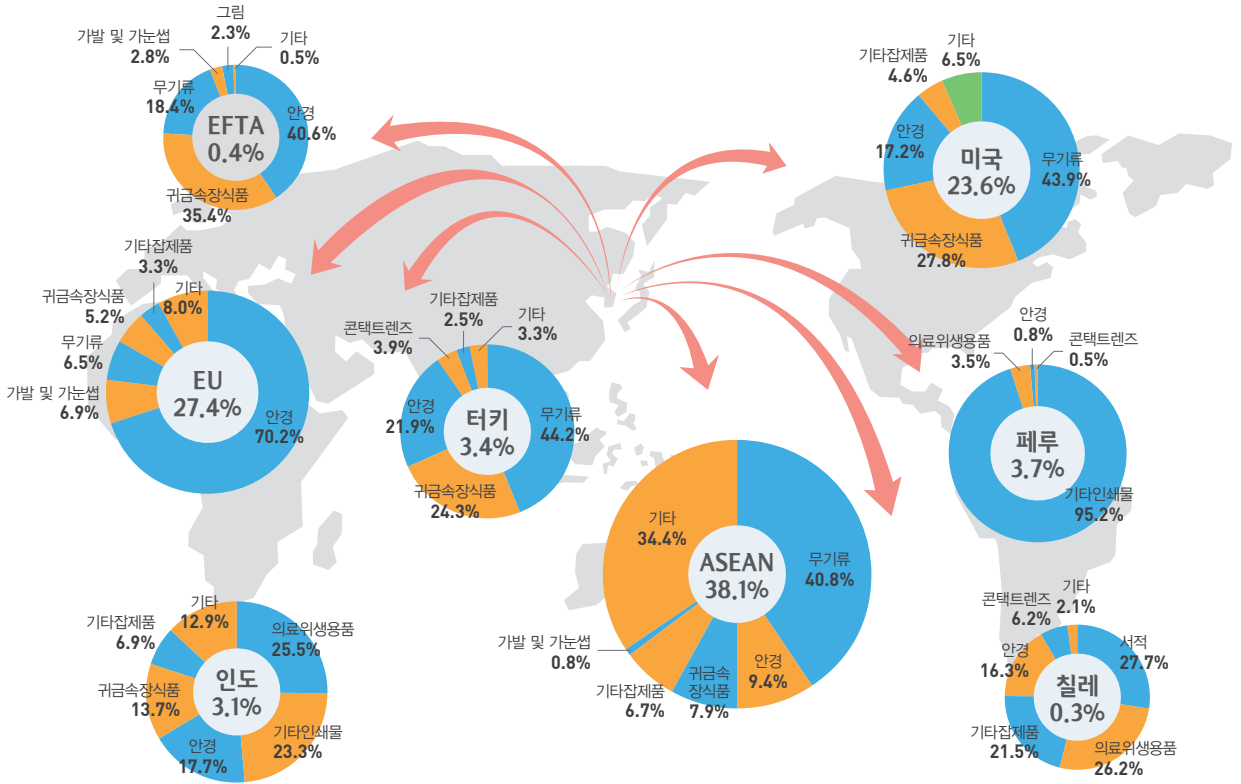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910,322	39.6
2	가방	663,166	28.8
3	운동기구	146,408	6.4
4	기타 생활용품	118,129	5.1
5	기타 가구	92,242	4.0
6	휴대용품	53,943	2.3
7	필기구	30,238	1.3
8	벨트	28,352	1.2
9	취미오락기구	25,042	1.1
10	유리공예품	22,493	1.0
총계		2,298,757	100.0

# 수출 잡제품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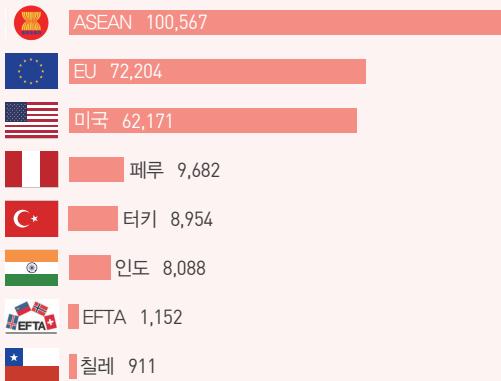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63,729 (48%)	280,582 (52%)	544,311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 협정별 잡제품 특혜 수출금액

총액 263,729



## 잡제품 특혜 수출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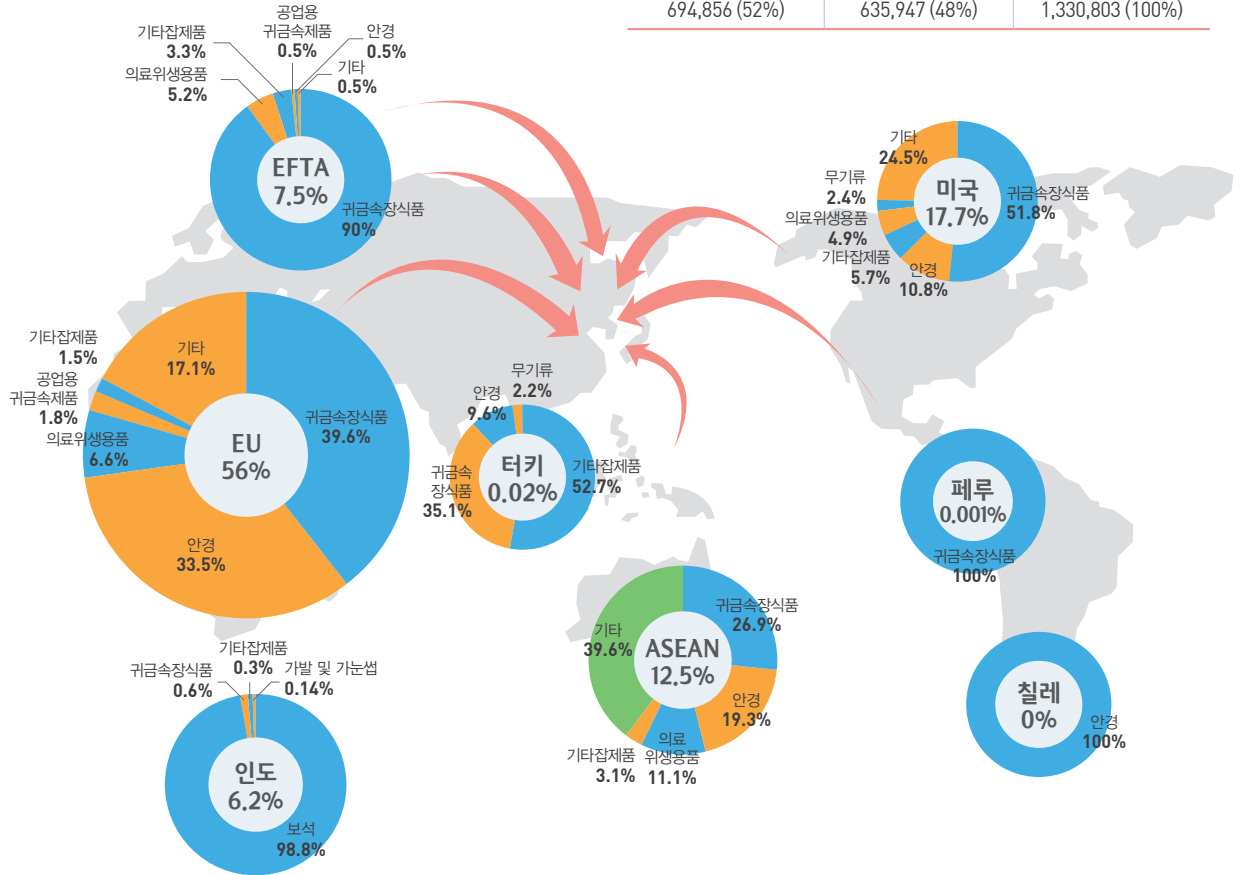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무기류	77,208	29.3
2	안경	74,933	28.4
3	귀금속장식품	32,656	12.4
4	의료위생용품	19,966	7.6
5	컨택트렌즈	16,207	6.1
6	기타 인쇄물	14,119	5.4
7	기타 잡제품	12,957	4.9
8	가발 및 가늌셋	5,885	2.2
9	공업용 귀금속제품	5,837	2.2
10	서적	3,110	1.2
총계		263,729	100.0

# 수입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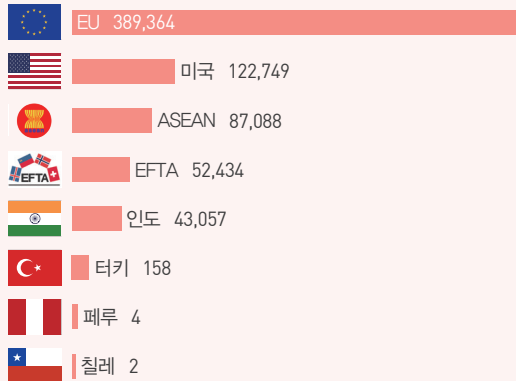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694,856 (52%)	635,947 (48%)	1,330,803 (100%)



## 협정별 잡제품 특혜 수입금액

총액 694,856



## 잡제품 특혜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귀금속 장식품	288,666	41.5
2	안경	160,702	23.1
3	콘택트렌즈	90,934	13.1
4	보석	62,014	8.9
5	의료 위생용품	44,062	6.3
6	기타 잡제품	17,254	2.5
7	가발 및 가늌셋	17,178	2.5
8	공업용 귀금속제품	7,767	1.1
9	무기류	4,971	0.7
10	기타 인쇄물	1,212	0.2
총계		694,856	100.0

# FTA 무역 리포트

Vol.10 December 2014

〈비매품〉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http://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14 인터넷 윤리대전\_16컷 웹툰 부문

제목 : 아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부터



#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 다이어트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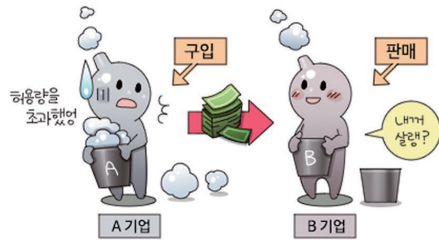
-홍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해주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의 기업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정해진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이 많을 땐,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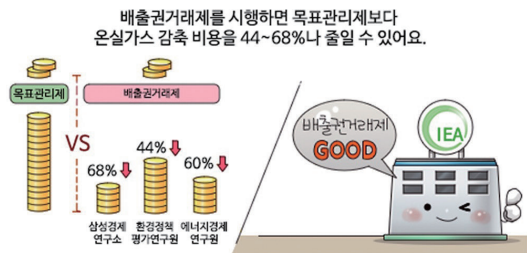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는 자기에게 남은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고 (이월), 모자란 배출권을 이듬해에서 빌려올 수도 (차입) 있어요.



외부사업 (상쇄)을 실시하는 등, 기업이 감축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제도죠!

즉, **No** 배출권거래제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에요.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제도랍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 직접규제에 비해 투입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다고 평가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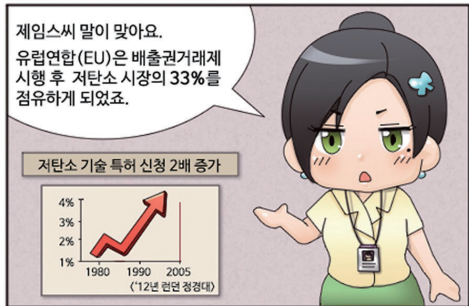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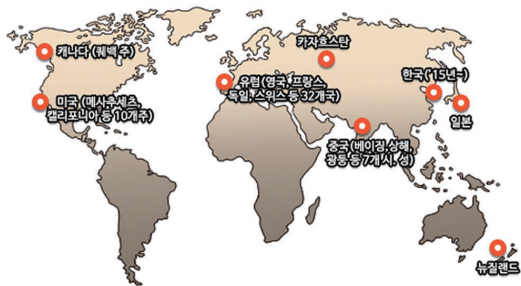






네. 이미 미국, 중국, 독일 등 벌써 38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시행현황



당장의 비용 증가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과제예요.



이미 몇몇 선도적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원가 절감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고 있죠.

일본 '토요타'



47% 감축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에너지절약 13억엔

영국 '막스앤스펜서'



23% 감축



에너지절약 2천만 파운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기업, 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장점들이 가득하거든요!

1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

EU 온실가스 감축 한계비용 감소



2 저탄소 산업의 성장



3 일자리 창출



더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까지 감소시켜주니 국민 건강 증대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절약되겠죠?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까지 완비되어 있으니 걱정은 NO!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까지!

- 1 국내 기업 경쟁력 고려 -> 배출권 비용 최소화
- 2 제1차 계획기간('15-'17년)에는 기업에 배출권 100% 무료
- 3 생산시설 신·증설 등에 나눠주기 위한 배출권 예비분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는 막고, 기업성장은 돕는 멋진 제도네요. 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래요!





####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